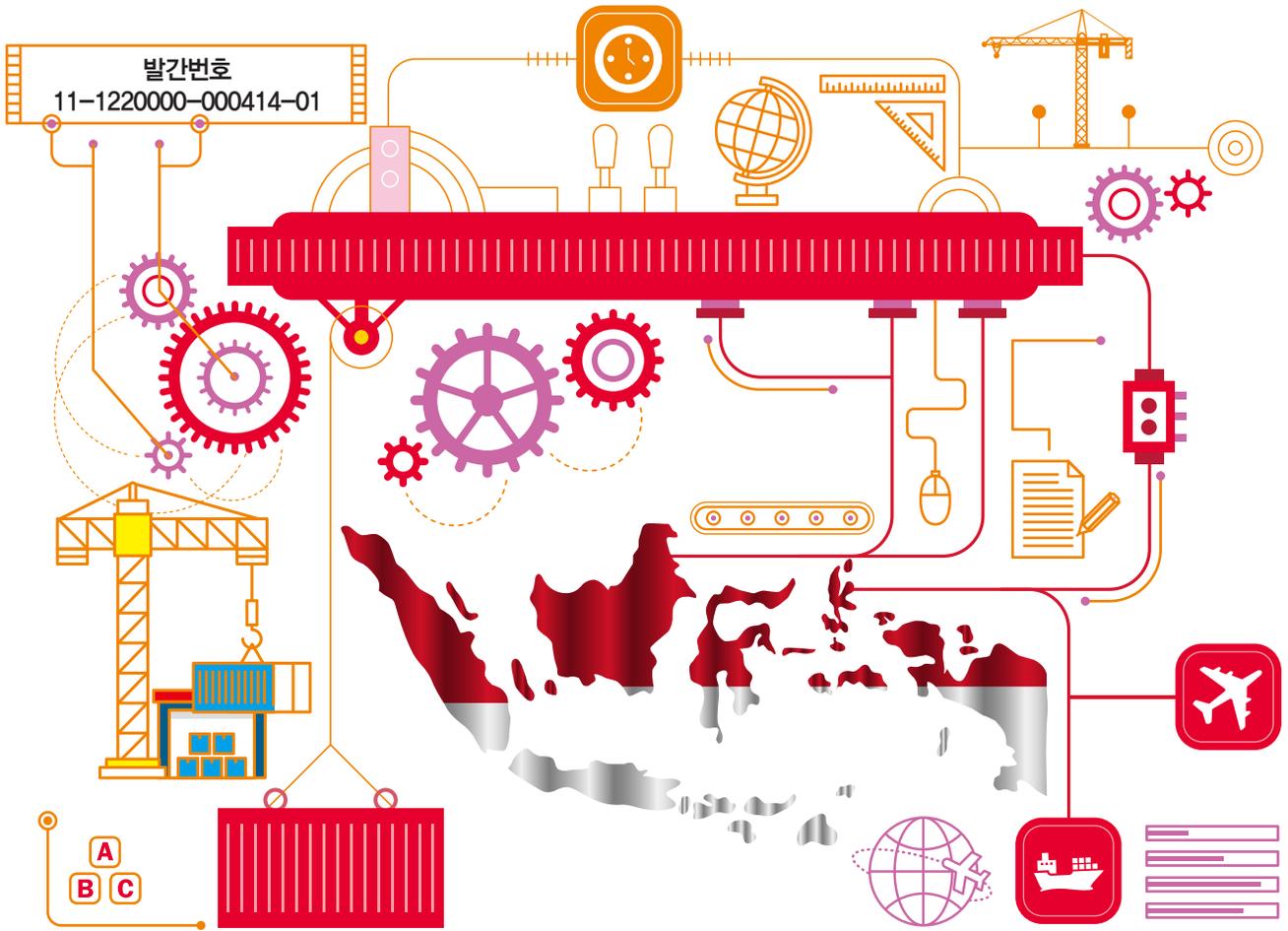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네시아 Indonesia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네시아 Indonesia



신남방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여건 하에서도 한국의 2018년 수출액은 6천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력시장인 對중국·미국으로의 수출과 신(新)남방지역인 인도·아세안·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이 함께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실현한 결과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수준을 높여 공조와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 영역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외교·경제 정책입니다.

이에 본 E-book은 2018년 既발행된 베트남을 제외한 신(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의 활용 및 인도네시아의 최신 통관통상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에서 최신 버전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록 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가운데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E-book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출처원문이나 관련법령,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 및 인도네시아 현지의 최신 통관통상 환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제 I 절 | 도입

1. 인도네시아 개황	8
2.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 사회지표	9
3. 인도네시아 시장환경 · 특성	13
4. 인도네시아 FTA 체결현황	21
5. 인도네시아 통관 · 통상환경	22

제 II 절 | 인도네시아 무역현황 및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1. 인도네시아의 무역현황	26
2.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개관	34
3.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적용 절차	37
4.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43
5.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47



제 Ⅲ 절 | 인도네시아의 통관제도

1. 통관 조직 및 관련법	72
2. 통관제도 관련 최근 개정사항	79
3. 통관 절차	88
4. 관세	123

제 Ⅳ 절 |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1. 최근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동향	142
2.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147
3. 인도네시아의 수출규제	178
4.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179

제 Ⅴ 절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애로 및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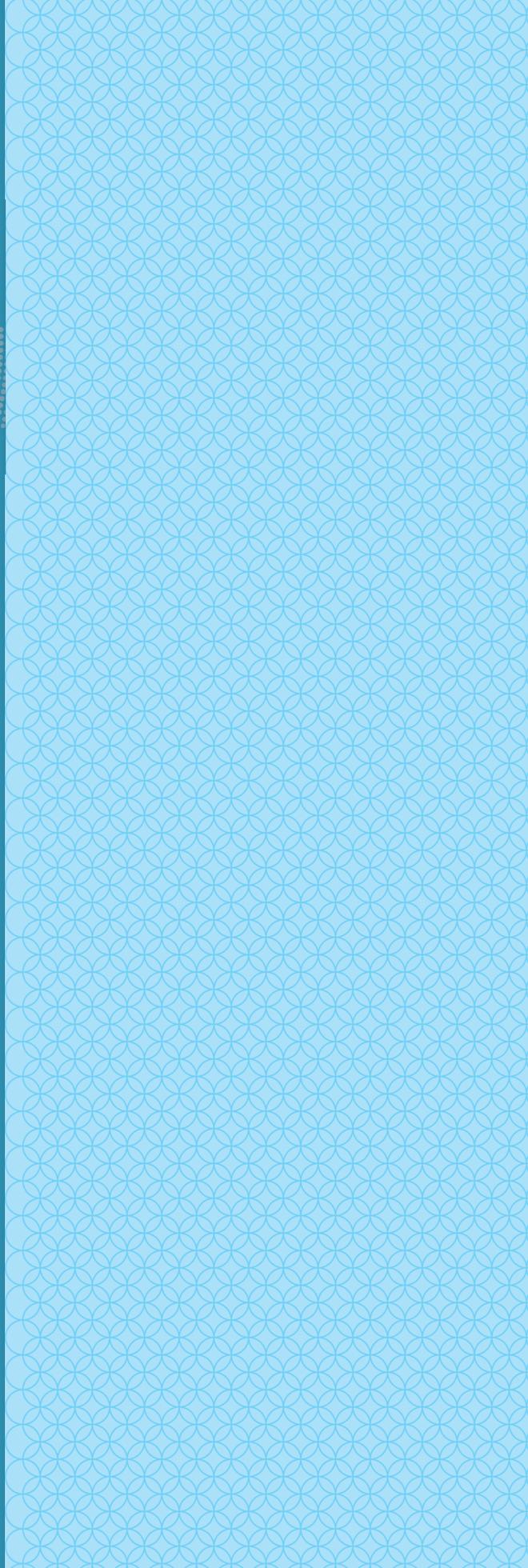
주요 애로유형	186
1.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오류	187
2. 원산지증명서 인쇄오류 및 흑백인쇄	189
3.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표장 불일치	192
4. 수입국 HS코드가 아닌 수출국 HS코드 기재	193



신남방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

도입

1. 인도네시아 개황

2.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 사회지표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 사회지표(전망치)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3. 인도네시아 시장환경 · 특성

- 세계 최대의 무슬림 소비시장
- 전체 인구의 3%인 화교 자본이 경제 장악
- 외국자본 유입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을 견인
- 자바섬(자카르타)에 편중된 인구 · 경제력, 이로 인한 수도 이전
-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층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중산층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 내수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 강화
- 인도네시아 시장 SWOT 분석

4. 인도네시아 FTA 체결현황

5. 인도네시아 통관 · 통상환경

-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수준
- 무역원활화 수준



1. 인도네시아 개황



국가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Sang Saka Merah Putih(빨갈고 하얀색의 보물) - 의미: 용기(붉은색), 정신성(흰색)
수도	자카르타(Jakarta)	
면적	190만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인구	약 2억 6,416만(IMF, 2019. 4월 기준)	
종교	이슬람교(87%), 기독교(7%),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민족	자바족(45%), 순다족(14%) 및 말레이족, бата족 등 약 350여 종족	
언어	표준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그 외 영어, 네덜란드어, 자바어 등 600여개의 지방어도 사용	
정부	대통령제, 공화제	
화폐단위	루피아(Rupiah: Rp: IDR) * 1 달러(USD) = 13,949 루피아(IDR)(2019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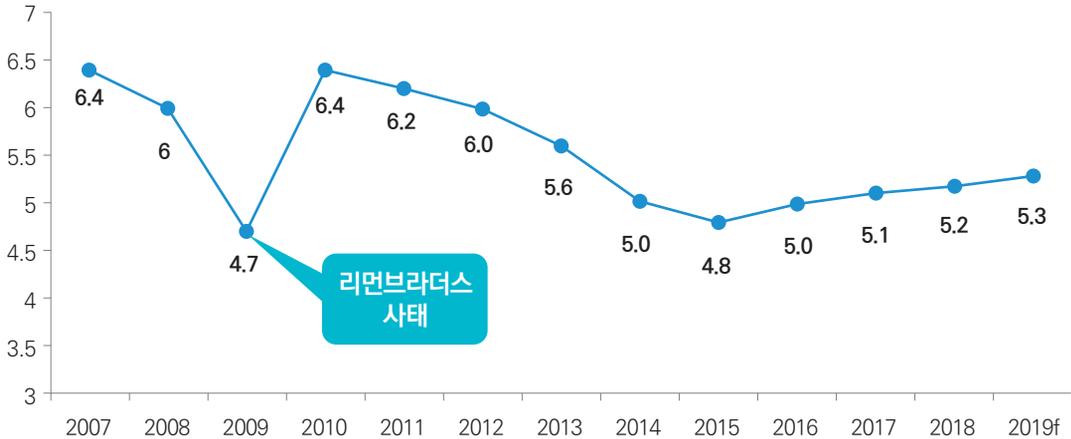
자료 : IMF(2019), CIA, World Bank, KOSIS, KOTRA, 외교부

2.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사회지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경제성장률 추이>

- 2010~2012년 : 자원개발, 내수시장 및 FDI 유입 확대로 연 6% 이상의 안정적 성장
- 2015년 : 원자재 가격하락, 수출 및 내수부진, 루피아 통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5% 하회
- 2016~2018년 :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총투자 확대에 힘입어 5%대로 반등
- 2019년 : 견고한 민간소비 유지, 인프라 투자확대 등으로 5.3% 성장 예상

자료: KOTRA 전문가 자료 참고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5%대 이상의 경제성장률 유지

인도네시아

아세안(6.4억명),
중국(13.8억명), 인도(13.1억명)를
연결하는 경제 요충지

▶ 연평균 5~7%대의 빠른 경제성장 & 지정학적 위치로 'Post China'로 급부상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 사회지표(전망치)

주요지표	단위	2018	2019(f)	2020(f)	2021(f)
인구	백만명	264.2	267.0	269.9	272.8
명목 GDP	십억달러	1,022.5	1,111.7	1,204.8	1,297.2
1인당 명목 GDP	달러	3,870.6	4,163.8	4,464.6	4,755.7
실질 GDP 성장률	%	5.2	5.0	5.1	5.2
GDP 대비 투자	%	34.5	34.5	34.5	34.7
GDP 대비 저축	%	31.4	31.7	31.9	32.0
GDP 디플레이터	2010년 = 100	142.2	146.8	151.6	156.1
물가상승률	%	3.1	3.4	3.1	3.1
실업률	%	5.3	5.2	5.0	5.0
상품 · 서비스 수출량증감률	%	3.5	0.8	3.3	5.7
상품 · 서비스 수입량증감률	%	12.8	1.3	3.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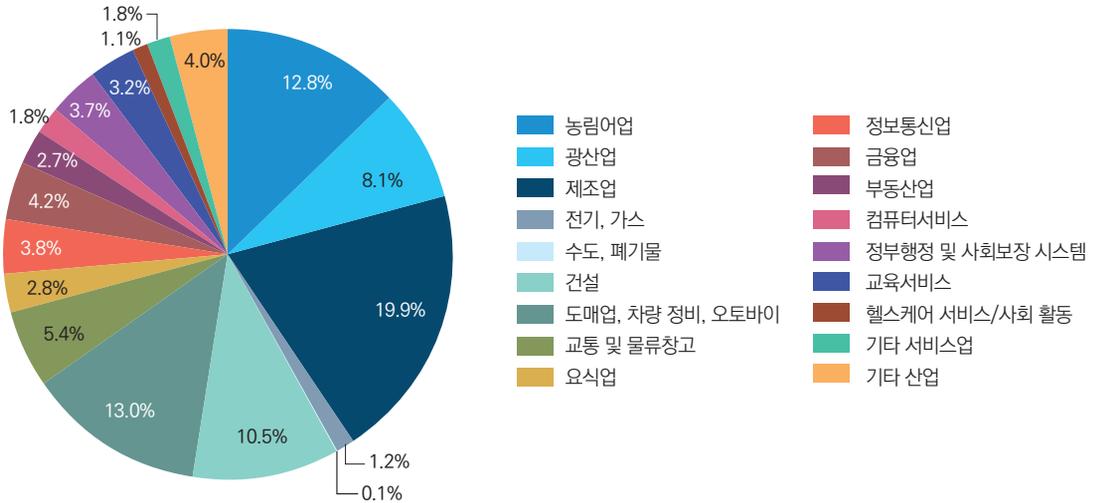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9.10)

2018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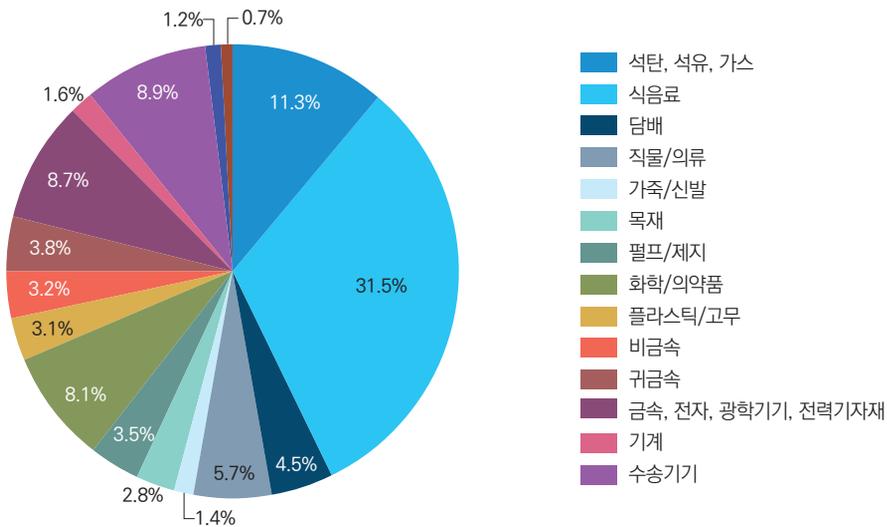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자료: KOTRA 전문가 자료 참고

■ 인도네시아 제조업 GDP 내 세부산업 비중



자료: KOTRA 전문가 자료 참고

인도네시아 제조업 GDP 내 세부산업 비중

- 2018년,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은 제조업(19.9%) > 도매업 · 차량 정비 · 오토바이(13%) > 농림어업(12.8%) > 건설업(10.5%) > 광산업(8.1%) 순으로 나타났으며,
- 제조업 중에서는 식음료(31.5%) > 석탄 · 석유 · 가스(11.3%) > 수송기기(8.9%) > 금속 · 전기전자(8.7%) > 화학(8.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산업별 GDP 비중



제조업
19.9%



**도매업 · 차량
정비 · 오토바이**
13%



농림어업
12.8%



건설업
10.5%



광산업
8.1%

제조업내 GDP 비중



식음료
31.5%



석탄 · 석유 · 가스
11.3



수송기기
8.9%



금속 · 전기전자
8.7%



화학
8.1%

3. 인도네시아 시장환경 · 특성



세계 최대의 무슬림 소비시장

-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7% 정도가 무슬림이며, 할랄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888억 달러로 추정
- 이슬람법에서는 음식부터 의약품, 화장품까지 일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것을 할랄(허락된 것)과 하랄(금지된 것)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니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에 굉장히 민감하며 이러한 특성이 제품 관련 인증 및 규제에도 반영됨
 - 인증(국가표준, 식품에 대한 인증, 할랄 인증 등)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제가 강함
 - 국가표준인증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강제대상 품목 및 할랄 인증 품목 증가

전체 인구의 3%인 화교 자본이 경제 장악

- 인도네시아 10대 그룹사 중 9개가 화교 그룹이며, 상장회사 총 시가총액의 약 80% 정도를 화교계 기업이 차지¹⁾
 - 화교란 중국을 의미하는 ‘화(華)’와 타국에서 거주를 의미하는 ‘교(僑)’가 합쳐진 말로, 중국 본토를 떠나 해외 각처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사회적·정치적으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뜻함
- 화교기업들은 지금까지 주로 금융, 부동산, 유통업 및 제조업(식음료 등)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나, 최근에는 IT 분야 등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모색 중
- 인도네시아의 주요 상권 및 유통망을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인니 화교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임²⁾

외국자본 유입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을 견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전세계 FDI 유입규모는 증감을 반복 하였으나,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말레이시아로의 FDI 유입은 증가세를 유지³⁾
 - 인도네시아는 2018년 약 290억 달러의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
 - FDI 유입은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금액(FDI)* 추이

					(억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85	293	290	322	293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기준

- 현 조코위 정부는 사회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중
 - 2019년까지 도로 2,650km, 철도 3,258km, 신공항 15개, 발전소 35GW 확충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서길이가 5,129km에 달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주요 인프라 수준의 발달은 다소 더딘 편임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140개국 중 71위를 기록
 - 도로(120위), 전화(98위), 철도(82위) 등⁴⁾

자바섬(자카르타)에 편중된 인구·경제력, 이로 인한 수도 이전

- (인도네시아 5개 주요 섬) 자바,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 이 중, 수도(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인구 및 경제력 집중 현상 심각
 - 인니 전체 인구의 57%가 자바섬에 위치(자바섬 약 1억 5천만명, 수도권 약 3천만명)
 - 자바섬이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60%를 차지, 수도권에 전체 제조업의 60%가 밀집⁵⁾
- 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코위 정부는 최근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 (2019. 8. 26)
 - 자바섬에의 지나친 인구 및 경제력 집중현상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지방 강화문제를 야기함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 (행정수도) 자바섬의 자카르타 → 보르네오섬의 발릭파판
-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에 초점



사진자료: 인도네시아의 속살을 엿보다'자바섬', 매일경제(2019.02)

- ▶ 이에 인니 정부는 쓰나미, 지진, 화산 등 재난 위험이 적고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 중심에 위치한 발릭파판으로의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함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층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세계 1위, 고무 세계 2위, 카카오 세계 3위, 커피 세계 4위 생산국 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4위의 자원부국임⁶⁾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발표한(18년 11월)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100%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천연자원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제16차 경제정책패키지 중 외국인투자 100% 개방 분야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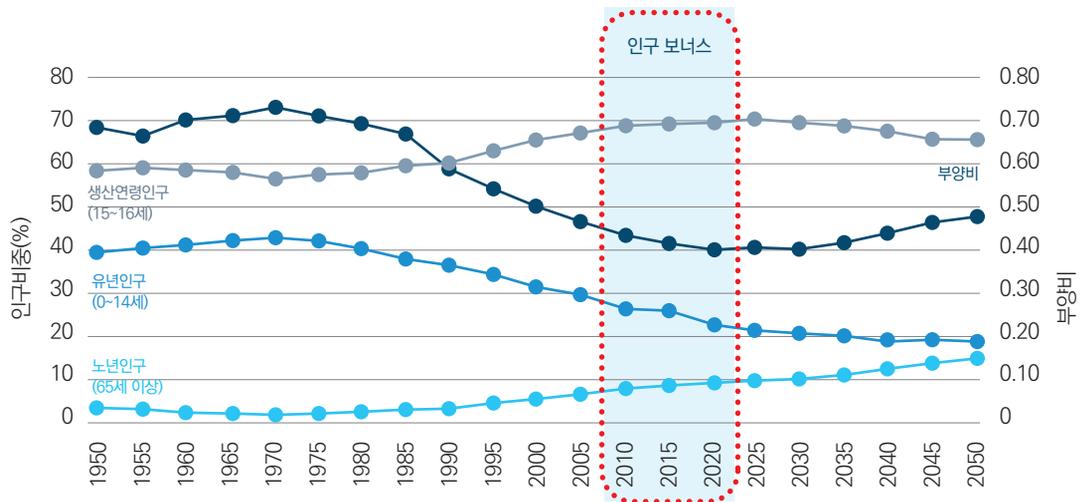
분야	업종	외국인투자 지분율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시스템, 고정통신망, 이동통신망 구축, 콘텐츠 통신 서비스, 콜센터 및 기타전화 서비스 등	100%
에너지 광물자원	석유가스 건설 서비스, 지열탐사 서비스, 석유가스 시추 서비스, 지열 라이팅 서비스, 지열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10MW 초과 발전소, 전기설비 설치 검사 또는 고전압 설비 가동	
보건의료	제약업종 완제품, 침술 서비스, 해충소독 서비스	
교통	비지정 육상구간 승객운송, 관광지 및 특정지역 운송, 해외 해상구간 승객운송(국내 구간 제외)	
고용	직업훈련	
관광	미술관, 공연장	
무역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임업	자연관광개발	

자료: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청, KOTRA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기 매우 유리한 조건임

인도네시아 인구비중

- 15~64세 노동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68.1%를 차지 (참고로, 한국은 46.4%)
- 2020~30년, 인구 보너스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경쟁력은 다소 하락세



* 부양비 = 비생산연령인구(0~14세, 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인구보너스 =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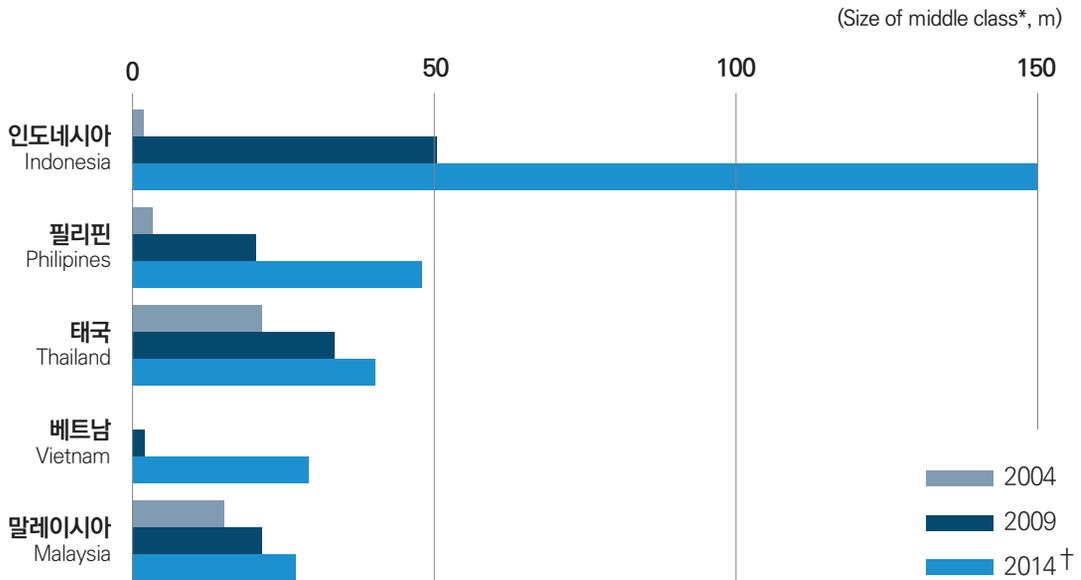
자료: KOTRA 전문가 자료 참고

중산층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 대형유통망,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 가속화로 소비패턴이 고급화됨
 - 인니 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는 약 3만명으로 아시아 지역 중 Super Rich 증가율이 가장 높음

동남아시아 중산층 규모 비교

- Economist지는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1억 5천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
- 이는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중산층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규모임



Sources: Nomura;
World Bank; CEIC

*\$3,000 annual household disposable income † 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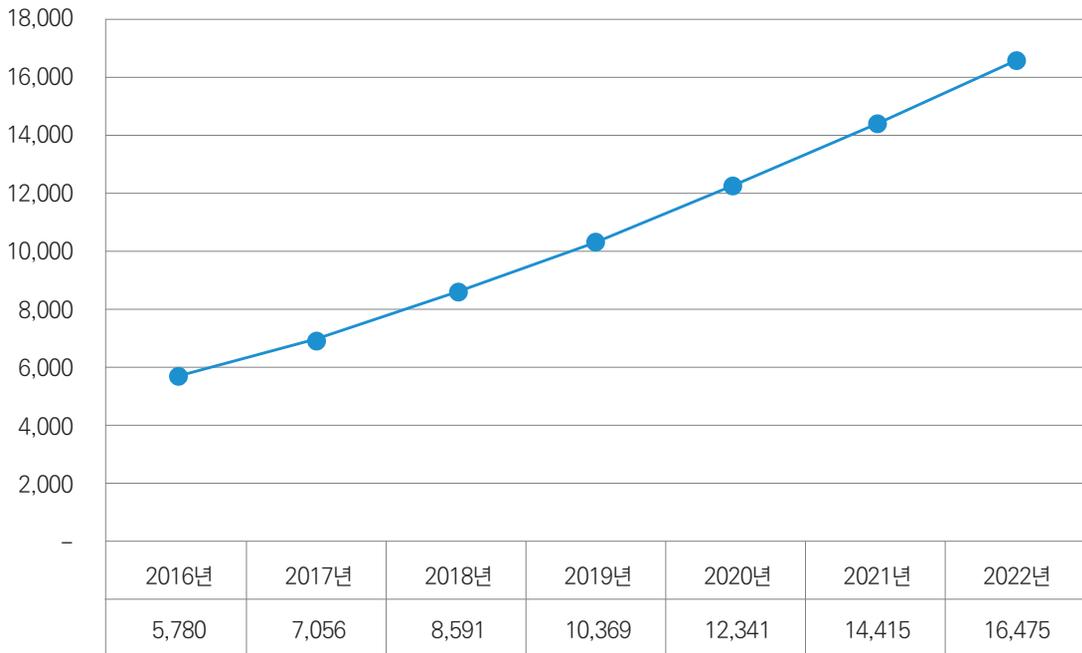
자료: KOTRA 전문가 자료 참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Making Indonesia 4.0 로드맵 이행과 함께 디지털 경제 육성에 큰 관심을 보임
 - 인니 정부와 기업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전자상거래”
- 4차산업 도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 및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 중에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인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도 급속히 증가하여 인니 소비자들의 구매채널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빠르게 변모 중
 - 실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자료: Statista(2018년부터는 예측치), KOTRA

내수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 강화

- 인도네시아 무역 적자의 지속과 함께 조코위 대통령의 재위로 수출증대와 내수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됨

Making Indonesia 4.0 로드맵 제시 (2018년 4월)

- 정부의 5대 주력산업은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 상품 유통의 개선, 지속가능표준 개선, 중소기업 역량강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인적자원의 질 향상, 생태계 혁신 발전 촉진, 기술투자를 위한 디자인 인센티브 제공, 규제와 정책의 조화를 추구

수입 규제 정책 강화

-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적용 강화(2018년 7월)
- 수입 제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Pph 22) 상향(2018년 9월)
- 전자상거래 면세한도 1회 100달러 → 75달러 하향 조정 법규 발표(2018년 9월)
- 수입대체제인 바이오디젤 사용 장려(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시장 SWOT 분석



4. 인도네시아 FTA 체결현황



2019.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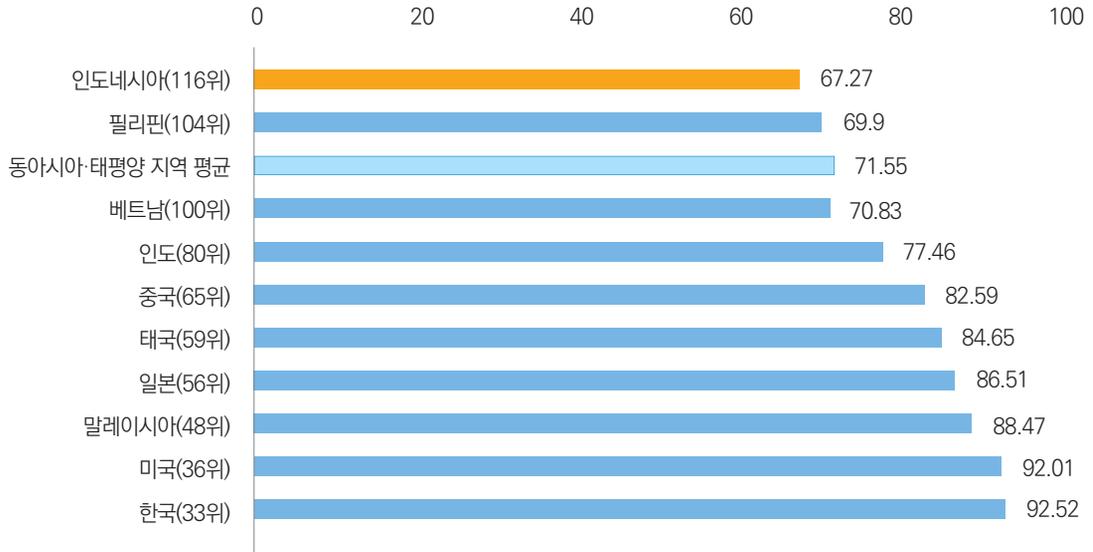
	체결 및 발효	협상중	검토중
아세안 공동추진	중국 FTA	RCEP ¹⁾	FTAAP ²⁾
	일본 FTA	EU FTA(협상중단)	
	한국 FTA		
	인도 FTA		
	호주 · 뉴질랜드 FTA		
인도네시아 단독추진	AFTA ³⁾	한국 CEPA	페루 FTA
	일본 EPA	인도 CEPA	GCC ⁴⁾
	파키스탄 PTA	EU CEPA	이집트
	이란 PTA	터키 FTA	파키스탄
	D-8 PTA ⁵⁾	모잠비크 PTA	미국
	EFTA CEPA	튀니지 PTA	튀니지
	칠레 FTA	방글라데시 PTA	
		모로코 PTA	
		호주 CEPA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간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 2)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한·중·일, 인니 등 세계 주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3)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
- 4)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5)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이슬람 개발도상국 간의 특혜무역협정.

5. 인도네시아 통관 · 통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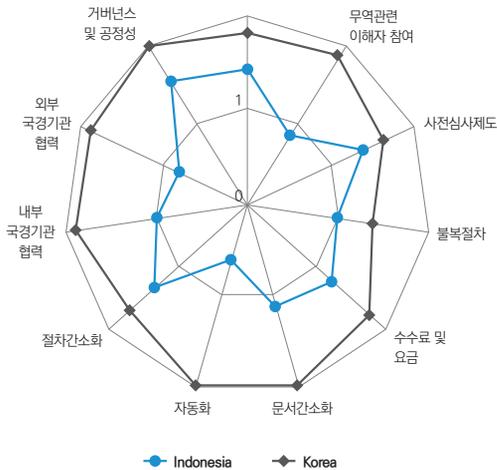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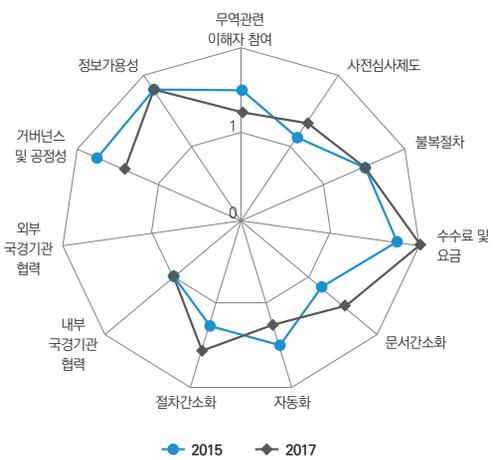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 Trading across Borders

무역원활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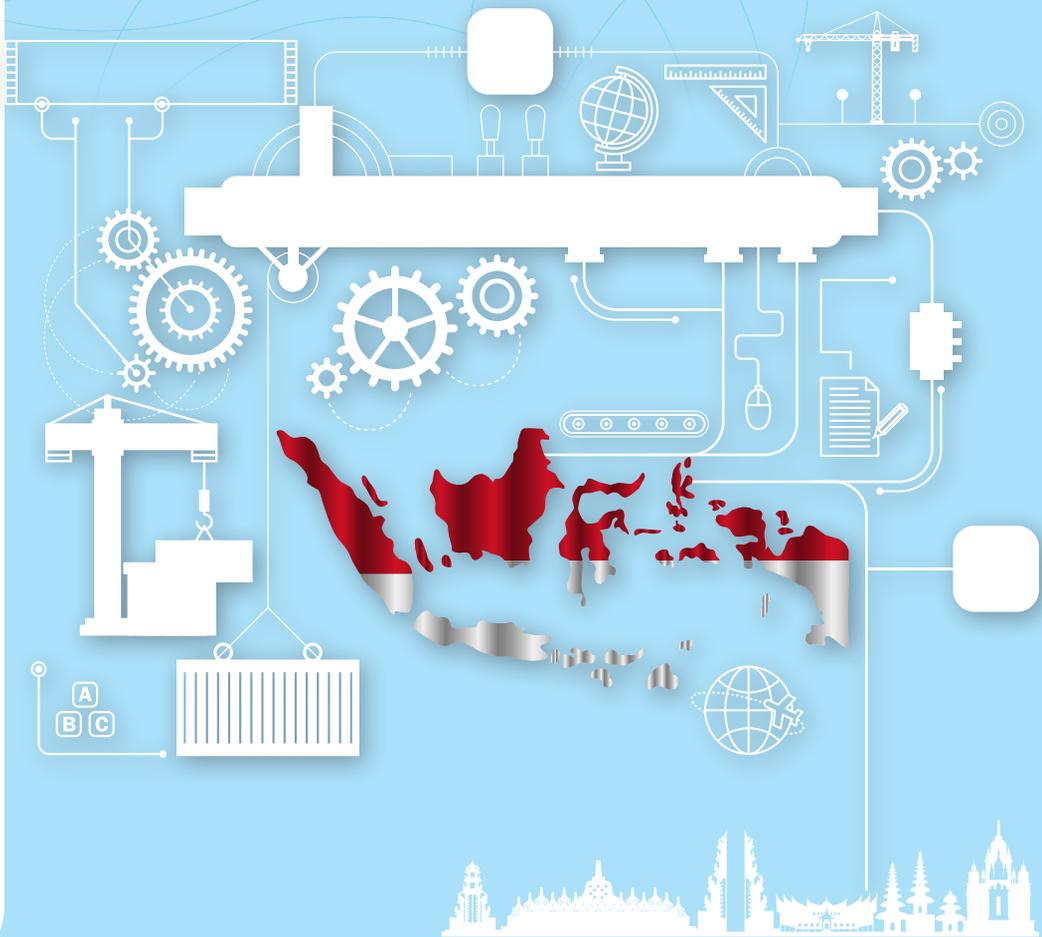
[한국-인도네시아 무역원활화 수준 비교]



[인도네시아 2015 대비 2017년 무역원활화 수준]



자료: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검색일자: '19년 10월)





신남방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I

인도네시아의 무역현황 및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1. 인도네시아의 무역현황

-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비중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동향

2.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개관

- 추진 경과
- 체결 의의
- 한-아세안 FTA 협정문 구성
- 주요 내용 및 특징

3.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적용 절차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시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특혜 원산지 제도

4.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2018)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산업별 FTA 활용 수출현황(2018)

5.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 對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추천 및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1. 인도네시아의 무역현황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2017년	2018년	합계				2017년	2018년	합계	
	전체	168,804	180,209	349,013	100%		전체	156,895	188,673	345,568	100%
1	중국	23,049	27,127	50,176	14%	1	중국	35,767	45,538	81,305	24%
2	일본	17,791	19,480	37,271	11%	2	싱가포르	16,888	21,439	38,327	11%
3	미국	17,810	18,471	36,281	10%	3	일본	15,241	17,976	33,217	10%
4	인도	14,083	13,726	27,809	8%	4	태국	9,279	10,952	20,231	6%
5	싱가포르	12,767	12,991	25,758	7%	5	미국	8,149	10,212	18,361	5%
6	한국	8,187	9,532	17,719	5%	6	한국	8,122	9,088	17,210	5%
7	말레이시아	8,467	9,436	17,903	5%	7	말레이시아	8,796	8,602	17,398	5%
8	필리핀	6,627	6,825	13,452	4%	8	호주	6,010	5,825	11,835	3%
9	태국	6,462	6,819	13,281	4%	9	인도	4,048	5,017	9,065	3%
10	대만	4,219	4,701	8,920	3%	10	사우디아라비아	3,167	4,911	8,078	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17~18년'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은 약 USD 3,490억불**
 - 이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501억불), 일본(372억불), 미국(362억불), 인도(278억불), 싱가포르(257억불), 한국(177억불) 등으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함
- (수입) '17~18년' 인도네시아 총 수입액은 약 USD 3,455억불**
 - 이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813억불), 싱가포르(383억불), 일본(332억불), 태국(202억불), 미국(183억불), 한국(172억불) 등으로 수입에서도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함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수출 품명	금액		'17-'18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체				168,804	180,209	6.8%
1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10,482	14,074	34.3%
2	목재류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3,815	12,951	-6.3%
3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6,185	6,959	12.5%
4	석탄	270112	유연탄	7,380	6,536	-11.4%
5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5,238	5,120	-2.2%
6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440	4,187	21.7%
7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960	3,837	-22.6%
8	천연가스	271121	천연가스(가스 상태)	2,600	3,633	39.7%
9	식물성물질	15111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4,698	3,577	-23.9%
10	석탄	270210	갈탄(응결상태 제외)	2,594	3,329	28.3%
11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펠프	2,286	2,516	10.1%
12	금·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1,839	2,032	10.5%
13	패션잡화	711319	귀금속(은 제외)으로 만든 신변장식 용품과 그 부분품	2,556	1,929	-24.5%
14	기타정밀화학 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1,760	1,673	-4.9%
15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108	1,548	39.7%
16	자동차	870322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의 차량(실린 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1,150	1,534	33.4%
17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1,571	1,524	-3.0%
18	기타금속광물	711299	기타 금속형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906	1,383	52.6%
19	식물성물질	151329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의 분획물 (조유 제외)	1,832	1,369	-25.3%
2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1,332	1,361	2.2%

주: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는 '18년 수출금액 기준 **석탄·천연가스·원유** 등의 광물성 연료와 **금속광물**을 포함한 **광산물·농림수산물**과 같은 1차 산업 생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도 '1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은 석탄(HS 270119, 270112), 팜유와 그 분획물(HS 151190), 천연가스(HS 271111, 271121), 석유와 역청유(HS 270900) 등임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수입 품명	금액		'17-'18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체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9,265	11,071	19.5%
2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7,064	9,161	29.7%
3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 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4,854	6,073	25.1%
4	유선통신기기	851770	전화기 부분품	3,512	4,169	18.7%
5	식물성물질	100199	밀과 메슬린(듀럼종 밀 제외)	2,637	2,571	-2.5%
6	금·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1,026	2,126	107.2%
7	식물성물질	230400	대두 착유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고체 형태의 유박	1,642	2,045	24.6%
8	기호식품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018	1,755	-13.0%
9	LPG	271112	프로판	1,275	1,531	20.1%
10	LPG	271113	부탄	1,431	1,504	5.1%
11	기타농산물	520100	면 [카드(card)나 코움(comb)하지 않은 것]	1,325	1,442	8.8%
12	영상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980	1,236	26.1%
13	곡실류	120190	대두(종자 제외)	1,151	1,103	-4.1%
14	컴퓨터	847130	휴대용 자료처리기계	957	1,052	9.9%
1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 용·굴착용·다지기용 기계	674	986	46.4%
16	칼륨비료	310420	염화칼륨	794	974	22.6%
17	자동차부품	870840	차량용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725	957	32.1%
18	자동차부품	870899	기타 차량용 부분품	867	925	6.6%
19	사무기기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	514	913	77.6%
2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449	철의 기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492	902	83.5%

주: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I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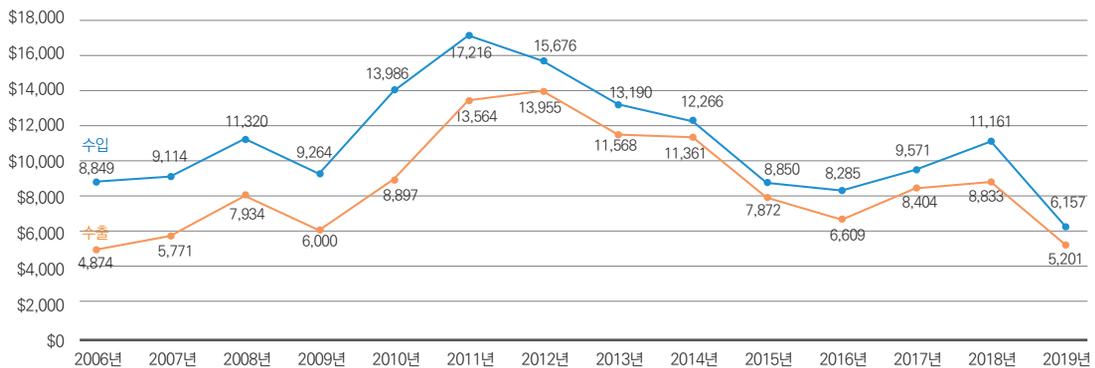
- (수입)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원은 풍부하지만 인프라 발달이 미약하고 더욱이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연료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8년 수입금액을 기준 주로 **제품 형태의 광물성 연료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기, 완제품** 등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도 '1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품목(HS 6단위 기준)은 원유를 제외한 경질유와 조제품(HS 2710121), 석유와 역청유(HS 270900, 271019), 전화기 부분품(HS 851770), 밀과 메슬린(HS 100199), 가공하지 않은 금(HS 710812) 등임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8월	5,201	-	6,157	-	11,358	-
2018년	8,833	5.10%	11,161	16.60%	19,994	11%
2017년	8,404	27.20%	9,571	15.50%	17,975	21%
2016년	6,609	-16.10%	8,285	-6.40%	14,894	-11%
2015년	7,872	-30.70%	8,850	-27.80%	16,722	-29%
2014년	11,361	-1.80%	12,266	-7.00%	23,627	-5%
2013년	11,568	-17.10%	13,190	-15.90%	24,758	-16%
2012년	13,955	2.90%	15,676	-8.90%	29,631	-4%
2011년	13,564	52.50%	17,216	23.10%	30,780	35%
2010년	8,897	48.30%	13,986	51.00%	22,883	50%
2009년	6,000	-24.40%	9,264	-18.20%	15,264	-21%
2008년	7,934	37.50%	11,320	24.20%	19,254	29%
2007년	5,771	18.40%	9,114	3.00%	14,885	8%
2006년	4,874	-3.40%	8,849	8.10%	13,723	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2007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이후 對인도네시아 교역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 최고 교역액(약 307억)을 달성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회복함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對세계	對인니	인니 비중	對세계	對인니	인니 비중	對세계	對인니	인니 비중
2019년 8월	361,465	6,041	2%	338,637	5,945	2%	700,102	11,986	2%
2018년	604,860	8,994	1%	535,202	10,206	2%	1,140,062	19,200	2%
2017년	573,694	8,045	1%	478,478	8,715	2%	1,052,172	16,760	2%
2016년	495,426	7,533	2%	406,193	7,508	2%	901,619	15,041	2%
2015년	526,757	7,735	1%	436,499	8,609	2%	963,256	16,344	2%
2014년	572,665	7,583	1%	525,515	11,098	2%	1,098,180	18,681	2%
2013년	559,632	8,588	2%	515,586	11,096	2%	1,075,218	19,684	2%
2012년	547,870	7,723	1%	519,584	9,796	2%	1,067,454	17,519	2%
2011년	555,214	6,275	1%	524,413	10,468	2%	1,079,627	16,743	2%
2010년	466,384	6,115	1%	425,212	9,531	2%	891,596	15,646	2%
2009년	363,534	4,325	1%	323,085	7,574	2%	686,619	11,899	2%
2008년	422,007	5,794	1%	435,275	9,909	2%	857,282	15,703	2%
2007년	371,489	5,704	2%	356,846	8,442	2%	728,335	14,146	2%
2006년	325,465	5,227	2%	309,383	7,242	2%	634,848	12,469	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 약 2%대로 매우 높지는 않지만, 양국은 꾸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지속성 있는 교역관계는 현재('19년 11월 기준) 실질 타결된 한-인니 양자 CEPA가 발효될 경우,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수출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7-'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8,404	8,833	5%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4	776	155%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원유 제외)	638	529	-17%
3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610	군함	727	342	-53%
4	반도체	854232	메모리	115	227	97%
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굴착용·다지기용 기계	89	143	61%
6	편직물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44	131	-9%
7	합성고무	400219	기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152	117	-23%
8	무선통신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118	117	-1%
9	합성수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89	110	24%
10	합성고무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135	106	-21%
1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5	104	131%
12	기타석유 화학제품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96	103	7%
13	아연제품	790111	합금하지 않은 아연(아연 99.99%이상)	95	92	-3%
14	철강판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168	91	-46%
15	편직물	600622	면으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100	87	-13%
16	합성수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7	85	27%
17	정밀화학원료	280300	탄소(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57	77	35%
18	편직물	600632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89	73	-18%
19	합성수지	39076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4	66	22%
20	철강판	72091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냉간압연, 두께 0.5~1mm)	101	66	-35%

주: 2018년 기준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화학공업제품과 기계 및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특히 반도체용 전자부품인 메모리(HS 854232),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이 각각 97%, 131%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1위 품목인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HS 271012)의 경우에도 수출 증감률이 155%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수입 품명	금액		'17-'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9,571	11,161	17%
1	석탄	270112	유연탄	2,116	2,254	7%
2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1,253	1,498	20%
3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56	699	96%
4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448	563	26%
5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444	332	-25%
6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44	285	-17%
7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72071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탄소 0.25/100 미만, 횡단면 직사각형인 것)	145	262	81%
8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10	241	15%
9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75	241	38%
10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펄프	204	228	12%
11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63	222	36%
12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144	177	23%
1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65	174	168%
14	기타금속광물	711299	금·백금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150	4900%
15	신변잡화	640399	기타 신발류	105	127	21%

수입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7-'18
				2017년	2018년	증감률
16	철강판	72191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두께 3~4.75mm)	0	115	-
17	기타정밀 화학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76	83	9%
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01380	그 밖의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49	78	59%
19	식물성물질	151319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81	73	-10%
20	의류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또는 소년용 방한용 외투	50	73	46%

주: 2018년 기준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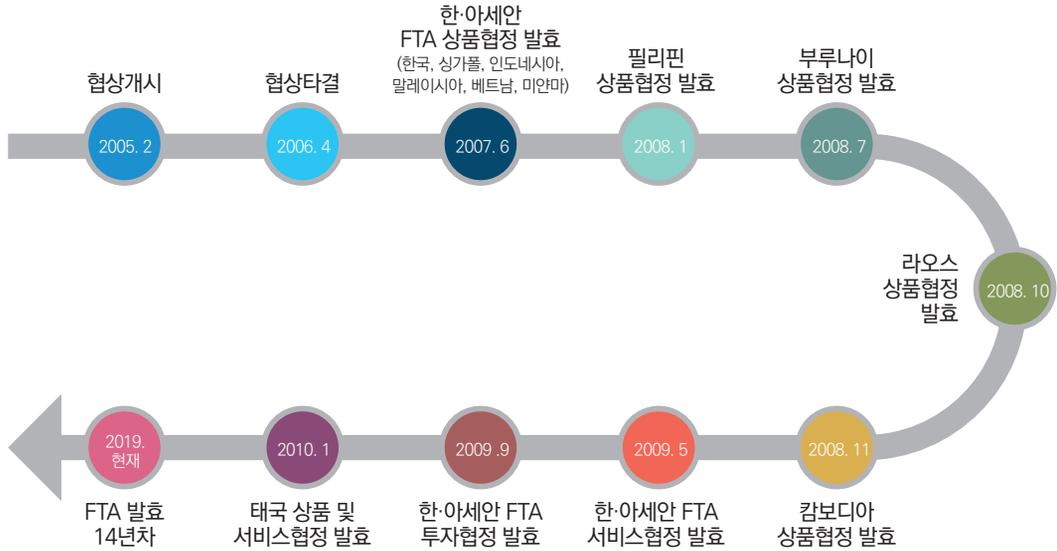
- (수입)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품목은 **유연탄·구리광·원유 등을 포함한 광산물과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특히 기타 금속광물과 합금철·선철 등 철강금속 반제품(HS 260300, 720712, 720260 등)의 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2.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개관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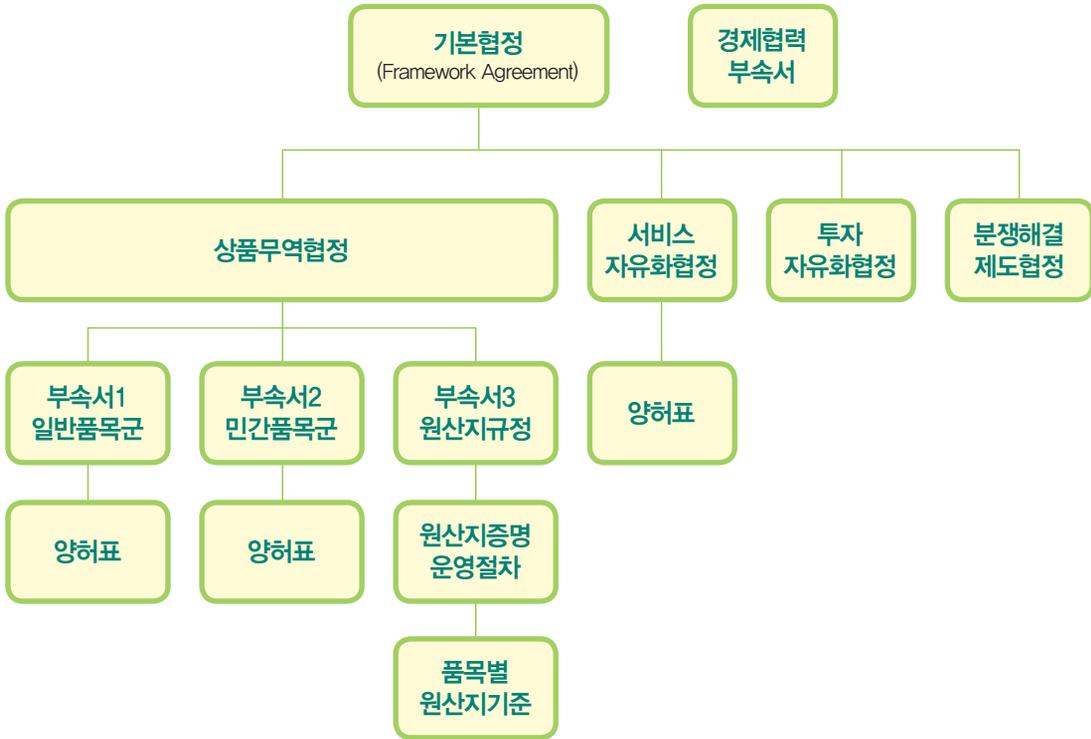
-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2020년 발효 14년차에 접어들



체결 의의⁷⁾

-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인 동시에, 우리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 주변국보다 아세안 시장접근에 우위확보 기회 제공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나 중국과 달리 아세안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과의 개별적인 FTA를 추진
 -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3년 일찍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한-아세안 FTA에서 2010년 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는 결과가 거의 동등
-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시장인 아세안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기회 제공

한-아세안 FTA 협정문 구성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및 특징

- **(협정문 구성)** 한-아세안 FTA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상인 관계로, 기존의 FTA에서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기본협정을 기틀로 하여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투자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등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음
 - **(기본협정)** 한-아세안 FTA 협정의 법적 적용범위로 시작하여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양측이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제시
 - **(상품무역협정)** 본문과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로 구성
 - **(분쟁해결제도협정)**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 구성

- **(개별 FTA)** 최근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양자 협상이 개시 및 재개됨
 -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베트남('15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현재 양자 FTA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이 있음

- **(한-인도네시아 CEPA)** 지난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재개됨
 - 양국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이고 교역 · 투자 · 경제협력을 모두 내포하는 포괄적인 한-인도네시아 CEPA를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인도네시아 양자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여 2019년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의 실질 타결을 이룸

일시	내용
2019. 10. 16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2019. 10	한-인도네시아 CEPA 제10차 협상 개최
2019. 8	한-인도네시아 CEPA 제9차 협상 개최
2019. 4	한-인도네시아 CEPA 제8차 협상 개최
2019. 2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 공식 선언
...잠정 중단...	
2012 ~ 2014	한-인도네시아 CEPA 제1차 ~ 제7차 협상 개최
2012. 3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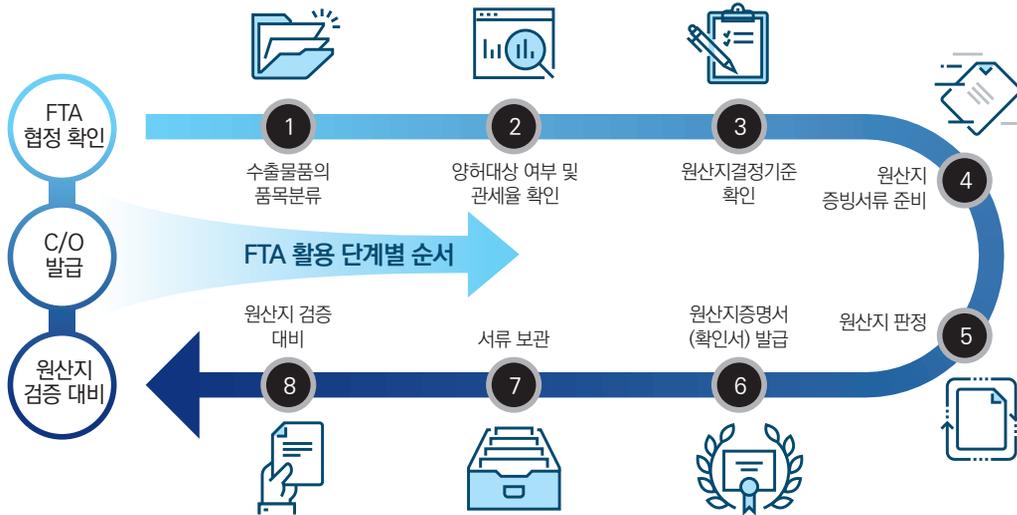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FTA 포털, 산업통상자원부

3.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적용 절차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단계별 순서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 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인도네시아)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감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 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시 유의사항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2017 개정)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 단,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허용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이행

- (국내절차 완료 국가) 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 (국내절차 미완료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 * 2019. 9월 기준

- 이에 따라 과도기간 중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사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기재방법이 변경됨에 유의

• (수입국이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인 경우)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단,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수입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인 경우)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2019년 9월 기준(관세청)

참고사항

- 통관 관련 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특성상 개정이 매우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임
- 따라서 각 기업의 통관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통관법령 및 규정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하여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통관 관련 규정 및 최신 소식은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윈도우(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사이트인 <http://eservice.insw.go.id/>에서 확인 가능

인도네시아 특혜 원산지 제도

- 물품이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임을 인정받고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함

- **(원산지결정기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아세안-일본 협정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인 PSR(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PSR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기준*이 적용됨

*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물품 중 개별 품목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2019. 9월 기준

구분	일반기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RC(BD/BU) 40% or CTH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RC(BU) 40% or MC 60%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RC(BD/BU) 40% or CTH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JEP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RC(BU) 35% + CTH or MC 65% + CTSH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RC(BD/BU) 40% or CTH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MC 60%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RC(BD) 40% or CTH

주) RC: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Contents), BD: 간접법(Build-Down), BU: 직접법(Build-Up), MC: 비원산지재료비율(iMprotected Contents),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자료: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추가 작성

- **(직접운송요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요건 또한 충족해야함
 - 직접운송이란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를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되더라도 비당사국 경유·환적요건*이 충족한 경우를 말함
 - * 지리·운송상 정당한 경우에 한함(경유국 거래 및 소비 불인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각 협정별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협정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AK 서식으로 작성됨

2019. 9월 기준

구분	양식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Form D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Form E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Form AK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JEPA)	Form JEPA/JIEPA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Form AI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Form AANZ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Form IP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Form AJ

자료: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추가 작성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인도네시아의 경우 C/O 발급기관은 통상부(Ministry of commerce)임

구분	발급기관
브루나이दार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증명서발급기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외), 개성공단 물품의 경우 세관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2018)

단위: 백만불, %

수출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용률 ¹⁾	전체수출금액
한-아세안 FTA ²⁾	6,795	13,036	52.1%	38,345
- 말레이시아	1,022	1,769	57.8%	8,989
- 태국	2,124	4,008	53.0%	8,503
- 인도네시아	2,431	4,739	51.3%	8,834
- 필리핀	1,218	2,520	48.3%	12,019

1)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2) 한-아세안 FTA는 베트남을 제외한 수치이며, 표기되지 않은 개별국가는 '18년 수출실적 없음

- '18년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약 51.3%로 전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52.1%)에 채 미치지 못해 '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가 4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함
- 그러나 '18년 수출금액 기준,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아세안 개별국가는 인도네시아 (약 47억불)
 - 따라서 다소 낮게 형성된 對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은 높은 특혜대상금액(약 47억불)에 비해 특혜적용금액(약 24억불)이 적었기 때문
 - 또한 최근('19.10.16)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양국 모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에 시장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한-인니 CEPA 발효 시, 인도네시아 특혜대상품목은 더욱 확대될 예정
 - 특혜대상품목이 확대될 경우 對인도네시아 수출 및 FTA 활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FTA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인도네시아 자유화 수준

국가명	기준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	한-인도네시아 CEPA
한국	수입액	93.6%	+3.7%	97.3%
	품목수	90.2%	+5.3%	95.5%
인도네시아	수입액	88.5%	+8.5%	97.0%
	품목수	80.1%	+12.9%	93.0%

한-인도네시아 CEPA 양국 시장개방 주요 내용

①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와 기계부품[베어링(5%) 등]과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② (우리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벙커C유(3-5%, 즉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폐),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자료 : 산통부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산업별 FTA 활용 수출현황(2018)

단위: 백만불, %

산업분류 ¹⁾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용률 ²⁾	전체미화금액
광산물	34	37	91.9%	1,361
화학공업제품	839	1,237	67.8%	1,853
철강금속제품	581	881	65.9%	1,275
생활용품	62	106	58.5%	173
전자전기제품	159	316	50.3%	1,08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1	120	42.5%	202
농림수산물	40	95	42.1%	184
기계류	409	1,097	37.3%	1,612
섬유류	255	848	30.1%	1,066
잡제품	0.4	2	20.0%	20
총합계	2,431	4,739	51.3%	8,834

1) 산업분류 MTI 1단위 기준

2)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 '18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한-아세안 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산업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MTI 1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주력 수출 산업

광산물	석유제품, 금은 및 백금, 기타 비금속광물 등
화학공업제품	합성고무,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
철강금속제품	철강판, 아연제품, 주단조품 등
생활용품	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악기, 가구, 주방용품 등
전자전기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기기, 전기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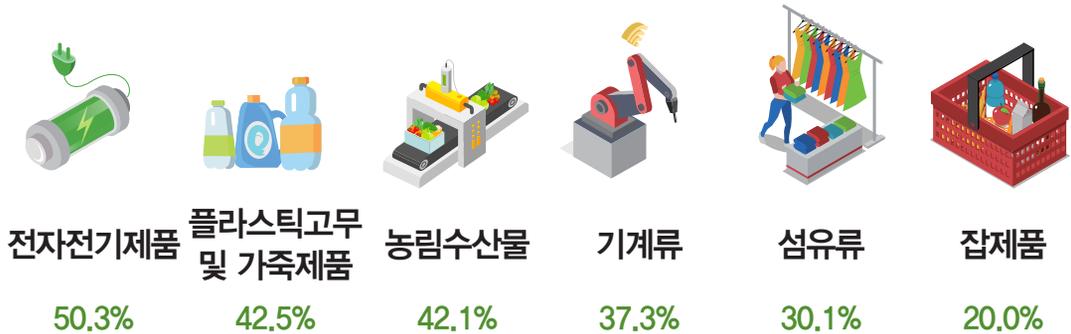
■ FTA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학공업제품**(약 12억불)

- 화학공업제품은 특혜대상금액뿐만 아니라 특혜적용금액(약 8억불)도 함께 높아 對인도네시아 산업별 FTA 활용률에서 2위를 차지함(67.8%)
- 한편, 기계류의 경우에는 특혜대상금액은 약 10억불로 화학공업제품과 비슷한데 비해 특혜적용금액(약 4억불)은 화학공업제품의 절반정도에 그쳐 FTA 활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37.3%)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산업은?



FTA 활용률이 인도네시아 평균(51.3%) 이하인 산업은?



5.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對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추천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對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수출 유망품목 선정과정

1. 2018년 인도네시아 100대 수입물품 추출(HS 6단위 기준)

2. 우리나라가 '18년 수출한 내역이 있는 품목 선정

3. 한-아세안 FTA 양허대상 품목(즉, FTA 활용가능 품목) 이면서, '18년 기준 특혜대상금액이 3백만불 이상인 품목 선별

4. 위 단계까지 거친 품목 중 특혜대상금액은 높으나, 특혜적용금액은 낮아 활용률이 인도네시아 평균(약 51.3%)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을 한-아세안 FTA 활용 對인도네시아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 위 선정절차에 따라 한-아세안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對인도네시아 수출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불, %)

순번 ¹⁾	HS코드	품명	2018년 인도네시아 수입 품목 순위	2018년 특혜대상금액	2018년 FTA활용률 ²⁾
1	280300	탄소(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90	76	11.9%
2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49	47	23.2%
3	854449	권선용 전선을 제외한 그 밖의 전기도체	97	30	41.5%
4	848180	파이프 · 보일로 동체 등에 사용하는 그 밖의 탭 · 코크 · 밸브	39	29	32.8%
5	7222830	냉간성형 및 냉간처리한 기타 스테인리스강 봉	100	22	38.1%
6	870899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18	15	36.7%
7	901890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	86	13	37.8%
8	392690	플라스틱제 기타 물품	48	13	32.9%
9	300490	기타 소매의약품	55	5	8.1%
10	840999	엔진 부분품	58	4	41.8%

1) '18년 특혜대상금액순

2)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1. 탄소 (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상품명	탄소		
	품명	2803	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2707	91	Creosote Oil
2707	99	FCC Oil
2706	00	Coal Tar
2710	19	PFO
2815	20	Potassium(수산화칼륨)
1703	10	Molasses(당밀)
2710	19	Kerosene(등유)
2804	30	N2(질소)
2804	40	O2(산소)

주요 제조과정

① 반응로

② 포집

③ 불순물제거

④ 과립

⑤ 건조

준비된 주원재료 및 부원재료를 고온의 반응로에 투입하여 산화·기화 반응을 거치게 되면 분말 상의 카본블랙이 생성 되고 분쇄기를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물, 당밀, 석유를 가지고 일정크기의 분말형태로 제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탄소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2803.0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요 원재료가 제27류에 분류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카본블랙의 경우 탄화수소의 불완전연소 또는 열분해를 통해 생성이 된 그을음 형태의 분말을 말하는 것으로 원재료는 탄소가 주성분인 석유 및 석탄계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석유 및 석탄계 물질은 관세율표상 제27류에 분류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제27류에 분류되는 역외산 석유 및 석탄계 물질을 원재료로 하여 제28류에 분류되는 카본을 제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활용 할 것이다.

2. 기타조제식료품

	상품명	조미김		
	품명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90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1212	21	마른김
1515	29	옥배유
1515	90	들기름
2501	00	천일염
2811	22	방습제
3923	10	트레이
2710	19	Kerosene(등유)
2804	30	N2(질소)
2804	40	O2(산소)

주요 제조과정

① 가열

② 조미

③ 검수

④ 포장

준비된 마른김을 가열기계에 투입하여 적정온도에서 구운 후 옥배유, 들기름 등의 기름을 김의 표면에 도포하고 천일염을 뿌려 제조하며, 이물질 검사를 마친 이후 트레이에 조미김과 방습제를 함께 넣고 포장하여 제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RVC 40%(단,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기타조제식료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원재료에 대해서는 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를 고려해 봤을 때 김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 기준 중 제1212.21호(김)의 역내산 사용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옥배유, 들기름 등 제15류 원재료와 천일염 등 제25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역내산 재료 사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역외산 재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인 마른 김의 경우 역내산 재료로 계상되어 부가가치기준 산정시 충족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조미김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할 것이다.

3. 권선용 전선을 제외한 그 밖의 전기도체

	상품명	전선		
	품명	8544		그 밖의 전기도체
			49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7408	19	도체
3904	22	PVC
3919	10	보강테이프

주요 제조과정

- ① 태선 · 신선 → ② 트위스트 → ③ 피복 → ④ 연합 → ⑤ 도금 → ⑥ 피복

원재료 전선을 다이를 통하여 가늘게 제조하거나 새롭게 전선을 제조하여 전선의 선재를 풀어 가닥을 분리하여 트위스트 공정을 수행한다. 이후 도체 위에 절연체를 피복하고 피복된 절연체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내열성을 높이고 사용용도에 따라 절연체를 꼬아 편조하고 피복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그 밖의 전기도체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8544.49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요 원재료가 제74류에 분류되는 구리제 선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제조된 역외산 전기도체 완제품(제8544.49호)을 원재료로 여러 가닥을 케이블로 제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될 수 없기에 보충기준인 미소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리선으로부터 전기도체를 제조하는 경우 역외산 구리선을 사용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무리없이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산 전기도체 완제품 여러가닥을 원재료로 하여 동일 세번에 분류되는 전기도체를 제조 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보충기준인 미소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거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 밸브

	상품명	PE 밸브 & BRONZE 밸브	
	품명	8481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유사한 장치
		80	그 밖의 기기

PE 밸브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3901	20	폴리에틸렌
3902	10	폴리프로필렌
4002	59	합성고무(NBR)
3907	10	폴리아세탈수지

PE 밸브 주요 제조과정

① 원료 투입

② 사출 · 성형

③ 조립 · 용착

④ 검품 · 포장

각 부품에 맞는 원료를 사출기에 투입하여 부품별 사이즈에 맞도록 사출 · 성형 한 후에 성형된 부품을 조립 후 열을 가해 용착 시켜 밸브를 제작하고 완성 된 밸브를 검품한 뒤 최종 포장한다.

BRONZE 밸브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7403	22	Body용 청동
7415	33	Brass bonnet
7415	39	Brass STEM
7415	33	Brass SET SCREW
7325	99	Hand wheel
7415	33	Brass hexagon nut(육각너트)
7415	10	Brass Splint pin
7419	99	Brass lock plate
7415	21	Brass Disc lock washer
3926	90	Teflon packing
7407	21	Brass Rod

BRONZE 밸브 주요 제조공정

①주조

②가공

③조립

④ 검품 · 포장

밸브 Body 제조를 위해 주조틀에 bronze 쇳물을 투입 한 후 주조된 Body에 각 규격에 맞도록 절단 및 드릴가공 한다. 이후 가공된 Body에 각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 밸브를 검품 뒤 포장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한-아세안 FTA는 밸브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8481.8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우선 플라스틱제 밸브(PE Valve)의 경우 제시된 주요 원재료들이 대부분 제39류에 분류됨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어렵지 않고 비금속제 밸브(Bronze Valve) 또한 대부분 제74류에 분류되는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품목분류상 해당 제8481.90호에는 밸브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최소허용기준 이상 사용되었다면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FTA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밸브를 생산할 때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번 변경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허용기준 범위 내의 비중만큼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넘는다면 부가가치기준 40%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제8481호의 구성체계와 부분품의 품목분류]

HS code		세부 품명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10	감압밸브
	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30	체크(논리턴)밸브
	40	안전밸브
	80	그 밖의 기기
	90	부분품

자료: 관세율표

5. 그 밖의 봉 [열간압연·열간인발·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상품명	BAR		
	품명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7206	10	무쇠 반제품
7206	10	철 반제품
7218	99	중량 스텐레스강 반제품

주요 제조공정

① 가열공정

② 압연공정

③ 절단

④ 완제품 출하

원재료인 빌릿(반제품)을 투입하여 가열하여 봉 형상으로 압연을 거친 후 적당한 길이로 절단,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고 출하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한-아세안 FTA는 그 밖의 봉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7228.3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요 원재료가 다양한 형태에 따라 제72류의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다.

합금강의 봉을 제조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인 철, 스텐레스강, 그밖의 합금강의 웨이스트, 반제품, 잉곳은 제72류 각각의 해당 호로 분류되고 완제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기초 원재료인 철광석(제26류)을 가지고 합금을 만들어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완제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용이하다.

따라서 구리선으로부터 전기도체를 제조하는 경우 역외산 구리선을 사용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산 전기도체 완제품 여러 가닥을 원재료로 하여 동일 세번에 분류되는 전기도체를 제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보충기준인 미소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거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제7228.30호의 합금강의 봉 주요 원재료 품목분류

철광석(제26류)	철 스크랩(제7204호)	철 잉곳(제7204호)
		

6.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상품명	AIR INTAKE HOSE(엔진흡기부분품)		
	품명	8708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99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4002	59	DNB67(NBR)
9027	90	센서
7326	90	클램프
8708	99	레조네이터
3917	40	니뿔

주요 제조공정

① 성형

② 사상

③ 조립

④ 검사

플라스틱 원재료를 주형틀에 넣어 성형을 하고 흡사상을 통하여 에어 호스를 제조하고 클램프 레조네이터 등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RVC 45%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시된 주요 부분품의 HS code가 완제품과 동일한 제8708.9호에 분류된다. 제8708호는 관세율표 상 각종 자동차 부분품이 분류되는 집단 분류호이다.

만약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번에 분류되는 각종 부분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미 소기준 충족 여부 검토가 필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업체의 원산지판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

	상품명	MEDICAL BEAM (레이저치료기기)		
	품명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90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9018	90	비강레이저 조절기 상
9018	90	비강레이저 조절기 하
9018	90	비강레이저 조절기 버튼
9018	90	비강레이저 상
8534	00	champ beam pcb
8544	42	champ beam LD Cable
3926	90	귀 실리콘

주요 제조공정

① 원재료 입고

② 조절기 조립

③ 레이저 조립

④ 검수

레이저 발생기, 조절장치, 귀실리콘(작용부) 등의 원재료를 입고 받아 조립하여 제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기타 의료기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 충족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주요 부분품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품목분류 구조상 의료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경우 제9018.90-9090 호에 분류되며 제시된 품목은 레이저 의료용 기기로서 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801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보충기준인 미소기준 충족여부 검토가 필수이다.

단 투입되는 부분품이 의료용기기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형태인 경우 제9018.90-9090호에 분류되지 않고 재질 · 특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용이할 것이다.

[제9018.90호의 구성체계와 부분품의 품목분류]

HS code		세부 품명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		그밖의 기기
		1000	임신진단기
		20	외과수술용 기기
		2010	레이저작동식 기기
- 요약 -			
		8010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8090	기타
		90	기타
		9080	기타
		9090	부분품과 부속품

자료: 관세율표.

의료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사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의 보충기준인 최소허용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4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분품의 가격 및 완제품의 가격 산정을 꼼꼼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정밀 기기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 충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8. 플라스틱제 기타 물품

	상품명	KEYBOARD KEYSKIN		
	품명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90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3910	00	실리콘 수지
3215	11	실리콘 잉크
3208	90	스프레이 도료(주제)
3208	90	스프레이 도료(보조제)
3923	10	PET 겹박스
3920	62	PER 간지
3919	90	모델명 스티커

주요 제조공정

① 원재료 주입

② 도색

③ 포장

합성수지 원료에 잉크를 배합하여 몰딩에 주입하여 키스킨을 1차 제조하고 2차로 스프레이를 도포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9류 플라스틱제품의 품목분류 구조를 감안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가능성을 고려해보면 플라스틱 제품의 원재료인 1차제품(액체, 페이스트, 알갱이 등)의 경우 제39류 제1부 제3901호부터 제3914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1차제품 형상으로 최종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단, 완제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레이블과 태그 등이 부착이 되더라도 레이블과 태그는 가격 구성비가 작기 때문에 미소기준 충족 또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인 플라스틱 1차제품에 대한 역외산 재료 투입비율을 잘 관리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 기타 소매의약품

	상품명	MEDICAMENT		
	품명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0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2941	90	블레오마이신황산염
7010	90	vial
4911	10	label
4819	50	case

주요 제조공정

① 조제

② 여과

③ 충전

④ 동결전조

⑤ 검사 및 포장

원재료인 블레오마이신황산염을 준비하고 이를 여과하여 일정비율로 틀에 충전한 후 동결 건조를 시켜 제조를 하고 이물검사와 포장공정을 거쳐 제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기타 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일정투여량 또는 소매용으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제3003호에 분류되며 이것을 기재로 하여 일정투여량 또는 소매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3004호에 분류하게 된다. 예시 품목의 경우 정제된 유기물질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제3003호의 벌크상의 의약품을 일정투여량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3003호에서 제3004호로 세번이 변경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되지만 단순 구분·포장여부에 따라 불인정 공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의약품을 구분·포장 하는 경우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의약품의 변질 여부와, 정밀한 투여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수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은 단순한 구분·포장 공정이 아니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 경우 불인정공정으로 인정되는 구분·포장공정이 아니라는 증빙을 수출업체는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 공정의 경우 의약품 제조산업의 특성상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역외산 원재료에 대한 원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원산지 판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엔진 부분품

	상품명	밸브 스피들(valve spindle)		
	품명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99		기타

주요 원재료

HS code		세부 품명
7214	99	비합금강 봉
7228	60	그 밖의 봉, 형강
8484	10	철강제 개스킷
7222	11	원형의 스테인리스강
4016	99	기계용 고무 마개

주요 제조공정

① 황삭

② 가공

원재료(Steel bar) 입고 후 열처리 및 황삭을 진행하여 가공한 후 최종제품을 생산한다.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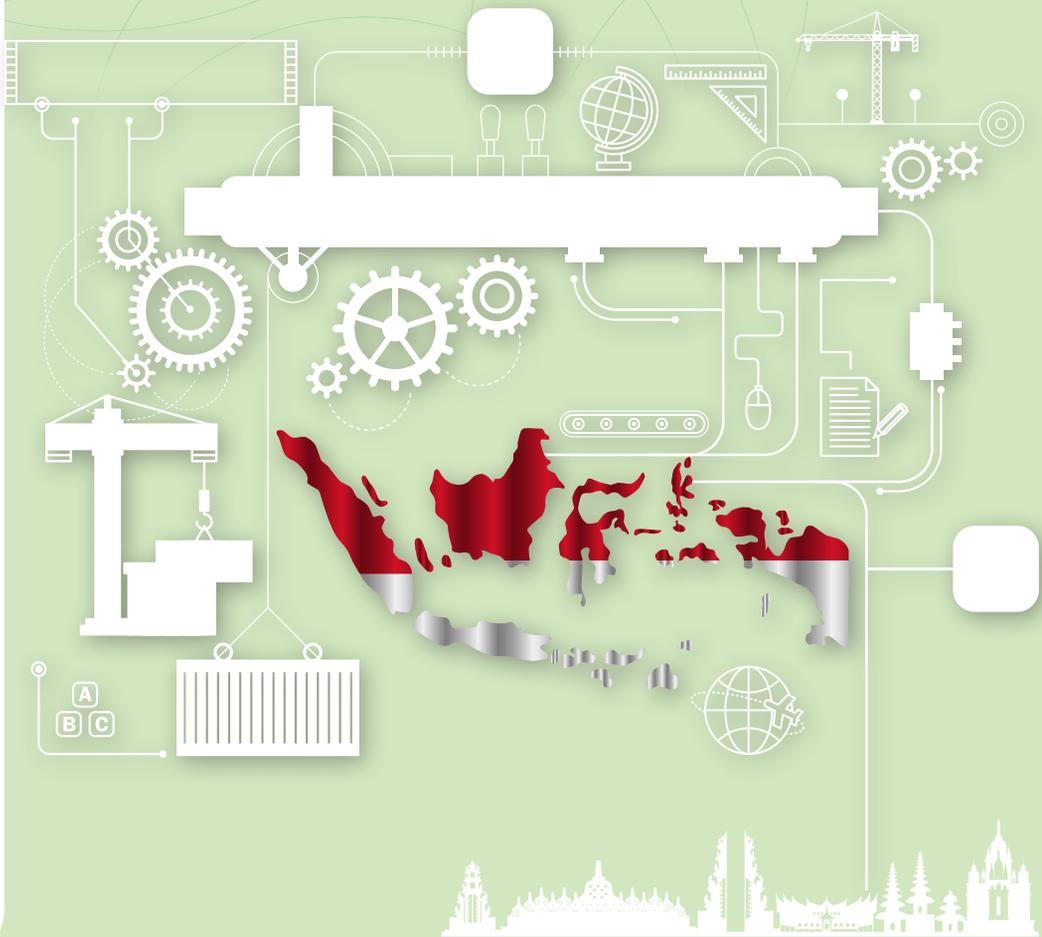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아세안 FTA는 엔진 부분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엔진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호에 분류하지 않고 엔진과 그 부분품은 제8407호 내지 제8409호에 특계가 되어 있다.

엔진 부분품의 원재료의 경우 대부분 완제품인 제8407호와 제8408호 등에 분류되어 세번변경 기준충족이 용이할 것이다. 단, 엔진의 부분품을 가지고 또 다른 엔진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분품 A를 가지고 부분품 B를 조립하여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 AB(어셈블리)를 제조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미소기준 충족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검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역내산 원재료의 증빙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신남방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II

인도네시아의 통관제도

1. 통관 조직 및 관련법

- 인도네시아 무역 관련 정부기관
- 관세소비세총국(DGCE)
- 인도네시아 필수 인허가 서류
-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련 법률
-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LARTAS)

2. 통관제도 관련 최근 개정사항

- HS코드 개정(10자리 → 8자리)
- 관세 미납에 따른 벌금 규정 개정
- 원산지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 철강 및 타이어 제품 수입 규제 강화
-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절차 변경
- 인증관련 변경내용

3. 통관 절차

- 인도네시아 기본 수출입 통관
- 인도네시아 통관의 특수성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
- AEO 제도
- 사후국경감시제도(Post-Border Policy)
- 인도네시아 수출통관 절차

4. 관세

- 관세 일반
- 수입관세의 결정 및 납부
- 수출관세의 적용
- 관세 이외의 제세
- 관세평가
- 인도네시아의 품목분류 체계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PKS)의 활용
- 관세의 감면 및 환급 제도
- 우리 기업 현지 통관 대행업자 활용 시 유의사항

1. 통관 조직 및 관련법



인도네시아 무역 관련 정부기관



자료: 인도네시아 수입절차, 농림축산식품부 · KFRI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정부기관은 크게 산업자원부, 무역부, 국제무역협력국, 관세소비세총국으로 나뉘어져 있음⁸⁾
 - (산업자원부) 주로 정부의 산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면허(SIUP) 발급을 담당
 - (무역부) 인도네시아 무역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각종 수입 인증 및 라벨링과 원산지 관련 규정 등의 발표를 관할
 - (국제무역협력국) 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소규모 산업과 무역을 관리
 - (관세소비세총국) 전반적인 통관 업무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의 시행 및 관세 등 수입 물품에 대한 기타 세금을 징수

관세소비세총국(DGCE)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및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통관 및 관세행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에서 담당함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은 재무부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16개의 본부세관을 비롯, 총 140여개의 세관을 두고 있음⁹⁾

■ (주요기능) 관세소비세총국(DGCE)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시행
 - 물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실물에 대한 검사 등 확인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 관세청 등록번호(NIK) 발급

인도네시아 필수 인허가 서류

-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입업체는 상업허가증(SIUP), 관세청등록번호(NIK), 수입자등록번호(API), 사업자고유번호(NIB)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함¹⁰⁾
 - 상업허가증(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회사의 활동범위, 대표자 등이 기재됨
 - (신청서류)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 사본, 기업 주소 및 위치 확인서, 기업 대표 또는 이사의 신분증 사본, 공증 문서 등
 - 관세청등록증(NIK: Nomor Induk Kependudukan)
 - 수입업체나 수출업체와 같은 법인이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식별번호로, 인도네시아 모든 수출입업자 및 관세청이용자는 '관세청 등록관련'규정(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에 따라 NIK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에서 발급함
 - (신청서류) 발급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신분증, 금융자료 등
 - 수입자등록번호(API: Angka Pengenal Impor)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에서 API를 소지한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API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발급함
 - 단, 일시적으로 판촉이나 연구개발, 자가이용 등의 목적으로 빈도가 적은 특정제품을 수입 하는 경우에는 API 취득 필수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류)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설립취지서) 사본, 기업본사 소재지 증명서, 투자등록서, 투자 Approval in Principle(기본승인서), BKPM 발급 사업면허, 납세자 번호(NPWP), 사업자등록증(TDP), 외국인취업허가증(IMTA), 이사회 전원의 사진(붉은색 배경, 3x4 사이즈) 등
 - (유형) API는 API-U와 API-P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동일한 업체는 두 가지 유형의 API를 중복하여 소지할 수 없음

구분		요건
API (수입자 등록 번호)	API-U (무역/유통업체용 수입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는 수입허가서 ☞ 주로 무역·유통·건설 업종에 발급 ☞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함
	API-P (제조업체용 수입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부재료 또는 가공공정을 위한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는 수입허가서 ☞ 생산설비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주: API-U(Angka Pengenal Impotir-Umum), API-P(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

자료: Indonesia Import Procedure(<http://import-procedure.blogspot.com/>)

• 사업자고유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

- 인도네시아 온라인 통합 인허가(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시작(2018. 7. 9) 및 노동부 장관 규정의 발효(2018. 7. 11)에 따라 법인 인허가 및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허가 제도가 일부 변경됨¹¹⁾
- **(사업자고유번호)** 기존사업자등록증(TDP), 수입자등록번호(API), 관세청등록번호(NIK) 등 각 부처와 기관에서 발급받던 인허가들을 OSS(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으로 통합·간소화한 인허가 제도
- 따라서 신규 및 기존 법인은 모두 사업자고유번호(NIB)를 보유하여야 함

사업자고유번호(NIB) 취득 절차



자료: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 (인허가 취득절차 개정 전·후 비교) 업종에 따른 필수 인허가 종류와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외자법인(PMA) 무역업을 기준으로 인허가 취득절차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일부 인허가 제도가 통합 및 간소화 됨

개정 전		개정 후	
1	정관(Akte pendirian)	1	정관(Akte pendirian)
2	사업장소재지 허가서(Domisili)	2	사업장소재지 허가서(Domisili)
3	법무성 등기(SK Pengesahan)	3	법무성 등기(SK Pengesahan)
4	법인납세자등록증(NPWP)	4	법인납세자등록증(NPWP)
5	무역면허(SIUP)	5	사업자고유번호(NIB)
6	사업자등록증(TDP)	6	부과세신고번호(PKP)
7	부과세신고번호(PKP)	7	사업허가서(Izin Usaha)
8	수입자등록번호(APIU)	8	사업운영허가서(lain Komersial/ Operation)
9	관세청등록번호(NIK)		

OSS시스템을 통한
인허가제도 일부
통합

자료: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련 법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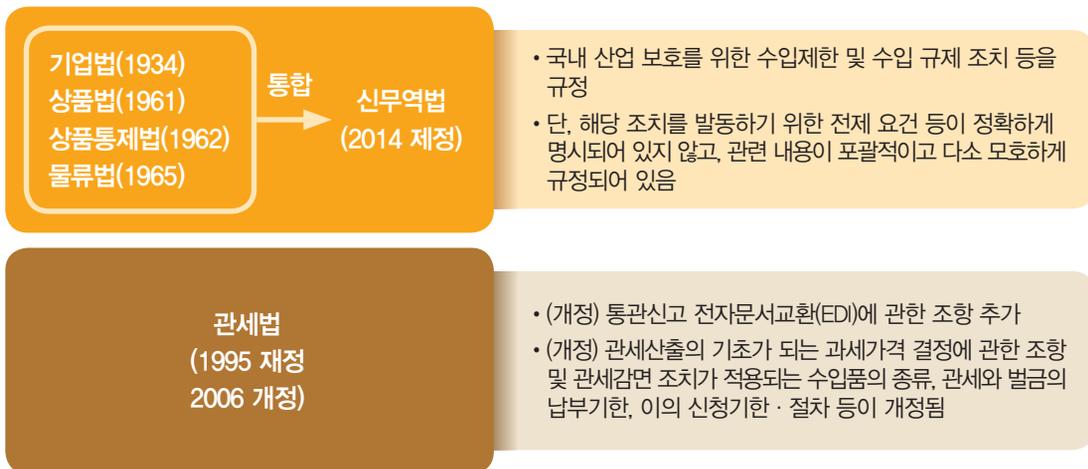
■ 신무역법(2014)

- 총 19장, 122조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신무역법은 1934년 제정된 기업법 등 4개 법을 통합·대체하여 2014년 제정됨
 - 국제 무역조치 등 무역관련 조항과 국내거래, 상품·서비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법

■ 관세법(1995 제정, 2006 개정)

- 관세법은 수출입 관세의 징수부터 상품 이동 감독 등 자국내 관세와 관련한 모든 영역을 규정하고 있음
- 1995년 제정 이후,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이후 EDI 관련 조항 등이 추가됨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련 법률



자료: JETRO, 2019.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LARTAS)

- 인도네시아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화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금지·제한 규정을 LARTAS(Larangan dan Pembatasan) 규정이라 함
 - 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은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보건부, 상업부 등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2019년 기준 LARTAS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관련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은 총 5,229개 품목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됨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규정 및 LARTAS(수출입 금지 및 규제) 규정 관련 정보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싱글윈도우 사이트 : <http://eservice.insw.go.id>

다음과 같은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함

담당정부기관	수입화물의 종류	필요서류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 (BP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원재료 • 식품 및 보조식품 • 화장품 및 원재료 • 전통의약품 및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명서 • 비식품의약품증명서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 마약 • 항정신성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의 등록수 • 검사관의 보고서 • 마약수입승인증서 • 항정신성물질수입인증서 • 의약기구 및 가정용건강용품의 등록수 				
상업부	구분	SNI	LS	IP	IT	SPI
	• 타이어	0				
	• 철강			0	0	
	• 강판 및 합금 롤	0				
	• 식품 및 음료제품		0			
	• 식물 및 식물제품		0	0	0	0
	• 의류		0			
	• 전자기기		0			

용어 설명

-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인증
- LS(Laporan surveyor): 선적전 검사로 수입전 상업부의 요청에 따라 선적지에서 공신력 있는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선적전 검사증서를 발부하며, 수입 신고시 BL등 무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IP(Importir Produsen): 제조수입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조수입업신청은 상업부에 신청(제조수입업자는 LARTAS품목 수입허가권을 가짐)
- IT(Importir Terdaftar): 등록수입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역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수입업자 신청은 상업부에 함(등록수입업자는 LARTAS 품목 수입허가권을 가짐)
- SPI(Surat Persetujuan importir): 수입승인서

자료: INSW(<http://eservice.insw.go.id>)

2. 통관제도 관련 최근 개정사항

HS코드 개정(10자리 → 8자리)¹³⁾

- 최근 인도네시아 HS코드가 기존 10자리에서 8자리로 개정됨(2017. 3월)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공용 8자리 품목분류체계인 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코드가 아닌, 별도의 인도네시아 10자리 HS코드를 사용하였음
 -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통합 표준에 맞추기 위해 세법분류체계를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함
 - 이로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관세율표상 HS코드(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총 10,826개(2단위 98개, 4단위 1,222개)
- HS 개정은 각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 FTA 협정세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관세 및 무역·통상 분야 종사자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함
 - 특히 수입화물의 관세는 수입국내 HS코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HS코드 변경 관련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HS 분류기준은 인도네시아 국가전산망통합사이트(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나 우리나라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HS에서 확인 가능함
 - INSW 사이트 주소 : <http://eservice.insw.go.id/>
 -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 미납에 따른 벌금 규정 개정

-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세 부족액에 따른 벌금 규정이 변경(2019. 5월)
 - 통관 분야의 벌금 적용에 관한 법령 '2008년 28호'→ 개정령 '2019년 39호'(2019. 5. 15 공포, 2019. 7. 15 시행)
- 인도네시아에는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세액 보정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¹⁴⁾
 - 따라서 통관이 완료된 신고서는 지역별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신고가격 및 품목분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수입관세나 수출관세 부족 등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족한 세액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징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이 추정과정에 있어 규정이 불분명하고 수출입업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아 미납 비율의 산출 방법과 미납률에 따른 벌금액의 계산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함

GR-28 (개정 전)		GR-39 (개정 후)	
미납률	벌금	미납률	벌금
25% 이하	100%	50% 이하	100%
> 25% ~ 50%	200%		
> 50% ~ 75%	400%	> 50% ~ 100%	125%
> 75% ~ 100%	700%		
> 100%	1000%		
		> 150% ~ 200%	175%
		> 200% ~ 250%	200%
		> 250% ~ 300%	225%
		> 300% ~ 350%	250%
		> 350% ~ 400%	300%
		> 400% ~ 450%	600%
		> 450% ~ 500%	1000%

주: 만약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신고건당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
 자료: KOTRA

- (개정전) 지불 관세액의 부족 비율에 따라 100~1,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 (개정후) 산출 기준이 되는 미납율을 가산된 벌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원산지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 기존 인도네시아 세관은 법령상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들을 원산지 상품으로 100% 불인정하였으나, 장관령 개정을 통해 제3국을 단순 경유 또는 환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 법령상 '직접운송'이란 원산지로부터 인도네시아로 다른 중간 경유지나 환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오는 경우를 뜻함
 -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자카르타)로 곧바로 이동하는 수입화물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최소 1~2개의 항구를 환적·경유하여 이동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 다음과 같이 원산지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이 개정됨

원산지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 ◆ 수입관세 부가 관련 장관령으로, 주요 골자는 관세율이 최혜국대우조항(MFN)과 다를 수 있으며, 관세율은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따라 결정됨
- ◆ 수입 관세 부과 전에 수입될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 ◆ 원산지 검증 절차에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 표에 나와 있는 7개 협정*임
- ◆ 장관령에서 정하는 선적 및 하역 원리
 - 상품은 C/O(원산지 증명)를 발행하는 국가로부터 직접 발송되어야 함(SKA, Surat Keterangan Asal)
 -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경우 대상 상품은 제3국에서의 가공행위를 거쳐서는 안 되며, 물류창고 등에 저장되어서도 안 되고, 품질이나 보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됨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상업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환적은 단순히 지리적·경제적·물류 여건 상 불가피한 조건의 이유로만 행해져야 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5/PMK. 04/2015 KOTRA

*원산지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발효 협정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협력협정(JEPA)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인도네시아-파키스탄 특혜무역협정(IPPTA)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

■ 따라서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한국발 화물(FORM AK)로 인정받을 수 있음

- (1) 한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중간 경유지나 환적을 거치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곧바로 도착하여 법령상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제3국을 단순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제출하는 경우
 - 한국 수출항부터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가 명시된 통과 B/L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서류상 Transit(경유) 또는 Transshipment(환적)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
 - Transit port(경유지) 또는 Transshipment port(환적지)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을 제외한 일체의 상업적 또는 추가적인 생산 가공 행위가 없음을 증명하는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제출
 - Shipping Line(선사)의 항로 명시 Certificate(증명서) 또는 항로 증빙 서류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의 통관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함
- 또한 통관제도의 근거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법제화부터 발효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새 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법령 및 규정 업데이트 소식은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공식 웹사이트 법령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beacukai.go.id/>)

인도네시아 철강 및 타이어 제품 수입 규제 강화¹⁵⁾

1. 철강 및 철강제품 수입 규제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산업 확장의 영향으로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철강 및 철강제품 관련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및 철강제품의 수입 규제 개정안을 발표함(2018. 12월)

-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 2018 12월 개정, 2019. 1. 20 시행
- 개정된 장관령에 나열된 제품으로는 철·강철, 합금강 및 철강파생제품들로 총 449개 품목이며 이들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됨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 적용 품목(HS 4단위)

A. 철 또는 강철 (Besi atau Baja)	B. 합금강 (Baja Paduan)	C. 철강파생제품 (Produk Turunan)
341개 품목	65개 품목	47개 품목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301, 7304, 7305, 7306, 7307, 7308, 7310, 7312, 7316, 7317, 7318.	7219, 7220, 7225, 7226, 7227, 7228, 7229.	7309, 7313, 7314, 7315, 7320, 7321, 7325, 7326.

철강 및 철강제품 관련 수입요건

- 해당 법령 부록에 수록된 철, 강철, 합금강 등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춘 수입업자의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음
 - ①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와 제조수입자인증번호(API-P)로 분류되는 수입자인증번호(API)의 기능 또한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
 - ② 세관 서류의 기능을 가지는 무역부 산하 대외무역국(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
- 철강 및 철강제품 관련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와 제조수입자인증번호(API-P)
 - *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 수입업자는 보세물류센터(PLB, Pusat Logistik Berikat)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하고, 판매 계약서 또는 구입 주문서에 근거해 수입된 철, 강철, 합금강 제품을 교역 및/또는 운송만 가능
 - * 제조수입자인증번호(API-P) 수입업자는 해당 원산지로부터 직접 또는 보세물류센터를 거쳐서 수입이 가능하고, 제삼자에게 수입제품을 교역 또는 운송할 수 없음

주: HS 전체(8자리) 조회 및 자세한 수입규제 품목은 eservice.insw.go.id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사전수입허가 신청은 무역부 산하 INATRADE 포털(<http://inatrade.kemendag.go.id>)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Permendag No. 110 Thn 2018)

2. 타이어 제품 수입 규제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시장의 성장, 농업용 차량 수요의 증가 등으로 타이어 수입이 증가하면서 타이어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개정안을 발표함(2019)

- ‘MOT No 5 Year 2019’ 2018 중간 개정, 2019. 2. 1 시행
- 해당 법령은 타이어 관련 수입 방법 및 수입 승인, 수입 절차,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의 타이어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함

MOT No 5 Year 2019 적용 품목(HS 8단위)

HS 4011	HS 4013	HS 8708.70
고무로 만든 타이어(신품)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제8705호의 차량용)
15개 품목	13개 품목	4개 품목
4011.10.00, 4011.20.10, 4011.20.90, 4011.30.00, 4011.40.00, 4011.50.00, 4011.70.00, 4011.80.11, 4011.80.19, 4011.80.21, 4011.80.29, 4011.90.10, 4011.90.20, 4011.90.30, 4011.90.90.	4013.10.11, 4013.10.19, 4013.10.21, 4013.10.29, 4013.20.00, 4013.90.11, 4013.90.19, 4013.90.20, 4013.90.31, 4013.90.39, 4013.90.40, 4013.90.91, 4013.90.99.	8708.70.21, 8708.70.22, 8708.70.23, 8708.70.29.

타이어 관련 수입요건

- 타이어 제품의 수입은 수입면허(API, Angka Pengenal Impor)의 기능을 내포한 사업자등록번호 NIB(Nomor Induk Berusaha)을 보유한 수입업자가 수입할 수 있음
- 제조수입면허(API-P)의 기능이 내포된 NIB을 보유한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영토 및 보세물류센터(PLB, Pusat Logistik Berikat)에서 타이어를 수입할 수 있음
- 반면 수입 후 유통이 주 목적인 일반수입면허(API-U)의 기능이 내포된 NIB을 보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보세물류센터를 통해서만 수입을 해야 함
- 위 조항은 2019년 3월 1일 이전에 인도네시아 항구로 도착한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된 타이어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주: 자세한 수입규제 품목은 eservice.insw.go.id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사전수입허가 신청은 무역부 산하 INATRADE 포털(<http://inatrade.kemendag.go.id>)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MOT No 5 Year 2019, KOTRA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절차 변경¹⁶⁾

■ 최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투자확충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인니 정부는 외국 인력 채용허가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함(2018년)

- 2018 제20호 대통령령 제정 (2018. 3. 29 제정, 2018. 6. 29 시행)
- 2018 제10호 노동부장관령 제정 (2018. 7. 11 제정, 2018. 11. 1 시행)

■ 외국인력 사용과 관련한 신규정(2018 제10호)* 주요 내용

* 외국인력 사용관련 개정 규정 중, 대통령령은 기존 2014 제72호에 대체적 효과가 있는 개정안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노동부장관령(2018 제10호)에 의함

외국인력 사용과 관련한 신규정(2018 제10호) 주요 내용

- 겸직 허용 : 같은 직책으로 두 회사에서 근무 가능
- IMTA 발급 요건 삭제 및 채용 승인 절차의 변경 : 기존에는 채용 허가를 위하여 RPTKA(외국인력채용 계획)와 IMTA(외국인력고용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새로운 장관령에 따르면 IMTA는 불필요하며 RPTKA와 ITAS(제한체류허가) 발급의 기초가 되는 인력배치개발 및 고용확대 총국장의 통보 (Notifikasi)가 있으면 채용이 승인됨
- 허가 발급기간의 단축 : (기존) IMTA, RPTKA 3일 (변경) RPTKA 2일, 통보 2일로 단축
- 주주인 이사 또는 감사는 RPTKA(외국인력 사용계획 허가) 승인 불요
- RPTKA 유효기간 유연화 : (기존) RPTKA 유효기간 1년에 연장 가능 (변경) 상황에 따라
- NOTIFIKASI(근로허가등록증) 신설
- RPTKA 발급 전 근로 가능 규정 마련 : 위급한 경우 외국인력은 RPTKA 수속 전부터 업무가 가능, 위급한 성격의 업무를 위한 RPTKA는 자연재해나 기계 고장,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에 승인되며,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늦어도 2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VITAS(제한적 체류비자) 신청시 외국인력사용보상금 납부 절차 변경
- 인력사용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의 절차 수정
- 인도네시아어 교육 규정 마련 : 인도네시아어 교육의무 등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사용 절차 간소화'_2018.08

인증관련 변경내용¹⁷⁾

■ 식약청(BPOM) 인증 취득 제품 수입 규정 변경(BPOM 2017 제4호, 제30호)

- (주요내용) 인니 식약청 BPOM은 식약청용 수입증명서인 SKI(Surat Keterangan Impor)에 대한 세부내용을 변경함
 - SKI를 SKI Border와 SKI Non-Border 2가지로 분류
 - 수입대상품목을 네거티브방식인 수입제한리스트 수록으로 변경
 - 기존 신청절차와 달리 SKI 신청자는 PNB(세외수입내역)를 등록하지 않아도 됨

변경된 SKI 등록절차



SKI 신청자는 BPOM의 웹사이트나 INSW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온라인 서류 제출



세외수입 납부



서류제출이 완벽하게 제출된 후 SKI 승인서는 온라인으로 발부되며, 이는 신청자 또는 관계자가 INSW 시스템을 통해 인쇄할 수 있음

자료: BPOM, KOTRA

■ SNI 인증 취득 제품 수입 관련 규정 변경(2018 제15호 무역부장관령)

- (주요내용) SNI 인증이 적용되는 제품은 수입전 반드시 무역부 표준 품질 통제 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은 제품등록번호(Nomor Pendaftaran Barang, NPB) 발급을 통해 이루어짐
 - SNI 인증 취득 제품 수입신고 시, 반드시 수입신고번호(PIB)와 제품등록번호(NPB)를 제출해야 함

3. 통관 절차



인도네시아 기본 수출입 통관

수입



수출



↑ 통관 라인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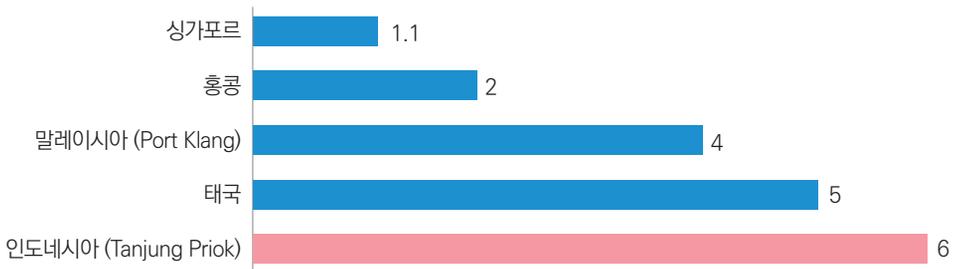
자료: Penascop Logistik Transniaga 전문가 자료

인도네시아 통관의 특수성

■ 화물 항구 체류기간

- 2013년 인도네시아의 화물 항구체류기간(Dwelling Time, 화물이 배에서 하역된 후 항구를 벗어나기까지 기간)은 약 6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 비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됨¹⁸⁾
- 이에 인니 정부는 2013년 이후 연달아 발표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열악한 물류환경의 개선과 화물의 항구 체류기간 단축을 계속적으로 시도함
- 이로 2016년, 인도네시아 항구의 평균 체류기간은 4.6일로 단축되어 이전보다 물류사정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아세안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평균 체류시간을 기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및 주변국의 화물 항구체류기간(2013)



자료: World Bank

■ 양하 능력(LPI)

- **(물류성과지수)** 각국의 양하 능력은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가늠할 수 있는데, LPI는 전 세계 물류종사자들이 각국의 통관·기반시설·국제수송·물류품질 및 역량·화물추적·적시성 등 6가지 부분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지표임
- 인도네시아 물류성과지수(LPI)는 2016년 2.98점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약 0.2점 가량 상승하여 3.15점을 기록함
 - 이는 최근 인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물류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수송 장비나 물류 시스템 부문에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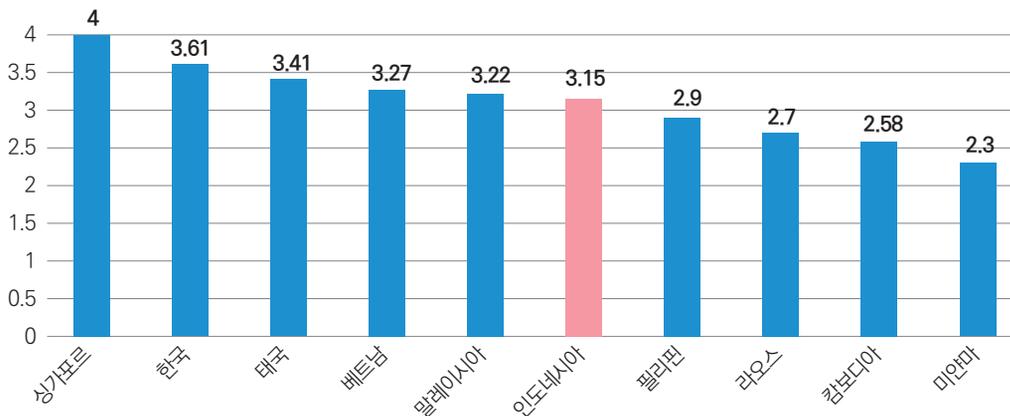
연도별 인도네시아 물류성과지수(LPI) (2016-2018)

연도	LPI 순위	LPI 점수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 수송	물류 역량	물류 추적	적시성
2018	46	3.15	2.67	2.89	3.23	3.10	3.30	3.67
2016	63	2.98	2.69	2.65	2.90	3.00	3.19	3.46

자료: World Bank

- 2018년 인도네시아 물류성과지수(LPI)는 3.15점이며 이는 세계 46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는 물류성과지수(LPI)가 다소 높은 싱가포르(4점)나 우리나라(3.61점)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이며 아세안국 가운데에서는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임

인도네시아 및 주변국 물류성과지수(LPI) 비교(2018)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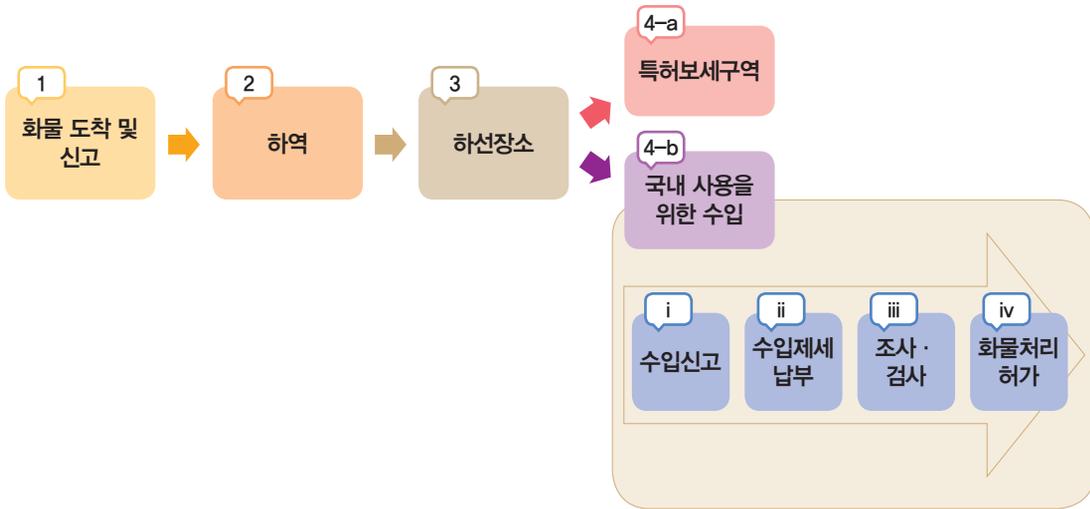
■ 선통관 후검사 제도¹⁹⁾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제도는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진행됨
 - 1994년 말 이전까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출발지에서 선적전 검사를 시행한 후 수입을 하였고, 화물 도착 후 선적전 화물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통관 진행을 하였으나, 1994년 말부터 선적전 검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입통관제도는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변경

- 따라서 항만 혹은 공항세관에서 수입화물통관이 완료되어 수입화물이 인수되었다 하더라도 수입통관 관련 제반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 수입통관이 완료된 수입신고서의 검증(VERIFICATION)기간은 수입통관 시작일로부터 약 2년²⁰⁾
 -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검증을 통해 수입가액 불성실신고 또는 관세율 적용 부적절로 판정되는 경우, 조정관세 및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검증결과에 준해 수입자의 수입실적 감사(AUDITING)가 실시되기도 함
 - 수입가액 불성실 신고 적발시 세관의 집중관리 대상이 되므로 향후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때 통관일수 과다소요·지연으로 인한 각종 부대비용 상승, 생산일정 차질 등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니 정부에서 수입가액 불성실 신고에 대한 벌금을 기존 최고 5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수입가액 불성실 신고는 지양하여야 함

- 수입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일체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매(발주) 관련자료를 완벽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수입가액 입증서류)**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 E-mail 교신내용, 수입화물 대금 송금내역, 제품 카탈로그 등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21]



자료: JETRO, 2019

(1) 화물의 도착 및 신고

- 인도네시아 각지의 세관사무소가 전자데이터 교환(EDI)을 도입하거나 전자데이터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운송 업체는 화물 도착에 앞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입항예정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참고사항

- 전자데이터 교환(EDI)이나 전자데이터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항예정신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입항예정신고서는 운송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입항 전, 2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참고사항

- 운송업자는 입항예정신고의 등록번호를 받은 후 적하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운송 업체에 적용됨

(2) 하역(荷卸)

-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입항예정신고서 및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세관장의 허가에 따라 항구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된 세관영역에 수입화물을 하역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세관영역이란 항구, 공항 및 관세·소비세총국의 감독 하의 화물 통행을 위해 지정된 기타 장소로 특정 경계를 지닌 지역을 뜻함

* 인도네시아 관세법 2006년 제17호(Indonesian Customs Law No. 17 of 2006)

- 하역시 운송업자에 대한 제재금은 화물이 적하목록 기재분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¹⁾ 또는 적하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²⁾에 부과됨

참고사항

- 1) 화물이 적하목록 기재분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금은 최저 2,500만 루피아, 최고 2억 5,000만 루피아가 부과됨
- 2) 적하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재금은 최저 5,000만 루피아, 최고 2억 5,000만 루피아 부과

(1) 한화로는 최저 213만원/최고 2130만원('19.09기준)

(2) 한화로는 최저 426만원/최고 2130만원('19.09.기준)

* 잡자재의 선적

- 수입화물 선적시, 선적서류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수량의 과소여부에 상관없이 불성실 신고로 처리
- 이 경우, 행정벌금 혹은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화물 또는 공장비품(ex. 목장갑, 안전화, 기타 소모품) 등은 선적하지 않아야 함

(3) 하선장소(Transportation Protective Service, TPS)

- 수입된 화물이 통관 될 때까지 항구에 있는 하선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며, 최대 보관 기간은 30일까지임

참고사항

- 위 기술된 소정의 기간 내에 수입화물이 하선장소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 당해 화물은 국고에 귀속됨
 - * 관세영역 및 하선 장소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5년제23호(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23/PMK.04/2015 on Customs Areas and temporary stockpiles)
 - * 관세영역 및 하선 장소에 관한 재무장관령 2007년제70호(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70/PMK.04/2007 on Customs Areas and temporary stockpiles)

- 또한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함

보세구역이란?

- 수입신고 수리 미완료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 즉 보세화물을 세관의 관리 하에 장치·검사·전시·제조 및 가공·건설·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자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확보, 반입 목적에 맞는 합당한 관리,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서 정한 적절한 구역을 말함²²⁾
- 보통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정보세구역)** 인도네시아는 Kawasan Berikat(Bonded Zone, KB)라는 지정보세구역이 존재함
 - 인도네시아 지정보세구역은 수입화물을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한 보관구역으로 보세지정 지역에서의 생산품은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세 · 소비세총국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함²³⁾

지정보세구역(KB)에서의 혜택

-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면제
- 제품 가공을 위한 보세 구역 외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면제
 - 상한 범위 (완제품 50%, 비완성 제품 60%)에서 국내 유통 가능
-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눌 수 있음

가. 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
-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세관장이 정할 수 있으며,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 ※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지정장치장에서의 물품 보관을 허용하고 있음

나. 세관검사장

-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함

- 또한 보세지역에는 그 지역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보세지역사업자: PKB(Pengusaha Kawasan Berikat)]가 존재함
- 보세지역사업자에 대한 특별 우대 혹은 편의는 수입세 연기, 물품세 면제, 부가가치세 또는 사치품 판매세에 대해 면제 등이 있음

(4-a) 특허보세구역(Bonded Stockpiling Site)

- 일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음²⁴⁾

❖ 보세창고

-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함

❖ 보세공장

-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세관장의 허가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

❖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공사용 장비 등을 장치 및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인이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후 세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보세전시장

- 박람회, 전람회의 운영 혹은 견품(SAMPLE)을 수입하여 이를 장치 또는 전시하는 장소

❖ 보세판매장

-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함

- 인도네시아의 특허보세구역은 크게 보세창고, 보세물류창고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음
- **(보세창고)** 보세창고(BW: Bonded Warehouse)는 통관 전 재수출이나 보관, 자사사용을 위한 수입목적일 경우 관세나 추가적인 세금의 부과 없이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함
 - 보세창고 장치화물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 이들에 대하여 포장, 선별, 세팅, 절단 등의 활동에 한정하여 수행이 가능함²⁵⁾
 - 보세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보세창고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 I. 간선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할 것
- II. 바깥과 안을 구분할 수 있는 담장이 있는 등, 다른 장소나 건물에서 분리가 분명한 경계가 있을 것
- III. 다른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
- IV. 운송 시에 통과 가능한 화물 출입용 주(主) 게이트가 한 장소에 있을 것
- V. 다음 목적만으로 화물 보관에 사용할 것
 - 관세영역 및 보세지역내 기타 다른 장소에서의 생산 활동을 지원
 - 면세점에 유통
 - 수출

- **(보세물류창고)** 보세물류창고(PLB: Pusat Logisiks Berikat)는 역외기업이 수입관세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수입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보세창고보다 확장된 개념임
 - 2015년 정부령 제85호에 의해 보세물류창고(PLB)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

보세창고와 보세물류창고의 차이점²⁶⁾

- 보세물류창고는 보세창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허가를 받고 세금 등록을 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역외 기업에게도 사용이 허가됨
 - 단, 이 경우 해외공급자들의 상품명 유지가 요구됨
- 보세창고에 비해 안에서 허용되는 활동범위(통합 · 수리 · 혼합 · 재조립 · 재포장 등)가 넓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성상 비계획적인 주문에도 대비가 가능

- 보세물류창고(PLB) 이용의 주요 장점은 물류 비용 및 기간의 절감, 재고 비용 및 기술 비용의 감소, 이로 인한 관련 업계의 현금 흐름 증가 등이 있음

보세물류창고(PLB)의 특징

- 장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
- 1:1 거래 관계 외에도 일방 또는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의 거래관계에 대응가능
- 1장의 원산지증명서로 반입된 화물을 여러 번에 걸쳐 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분할 사용 가능

- 최근 인니 정부는 보세물류창고 제도 시행 후, 물류 비용이 감소하였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보세물류창고의 확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에 대한 관심이 큰 바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보세물류창고 제도 개정안*을 발표함

*인도네시아 재무부령(PMK) No.28/2018)

인도네시아 재무부령(PMK) No. 28/2018의 주요 내용

- 인니정부는 보세물류창고(PLB)와 관련하여, 그동안 재무부령 No 272/PMK.04/ 2015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로 내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자본재 수입에 집중해왔으나, 개정 법안인 재무부령(PMK) No.28/2018을 발표함으로써 보세 물류 창고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구분	1기(재무부령(PMK) No.272/015)	2기(재무부령(PMK) No.28/2018)
주안점	원부자재, 자본재, 물류활성화	디지털경제, 국가차원의 유통 및 물류 허브, 대규모 및 중소 산업체 지원

- 2기의 보세물류 창고 분류는 대규모 산업체 PLB*, 중소기업체 PLB, e-commerce(전자상거래) PLB*, 기본 상품 PLB, 항공 수화물 허브 PLB*, 부유식 저장 PLB*, 완성품 PLB* 등으로 분류됨
- 또한 새로 발표된 법령의 제 4A조에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는 오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만 활용 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세물류창고 운영업자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명시됨.

- ☞ 인니 정부는 이를 통해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제품을 보세물류창고(PLB)로 통합하여 세수 및 기타 무역 외 수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며,
- ☞ 전자상거래 운영 기업은 제품들에 대한 재고(stock)를 보세물류창고(PLB)에 보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음

* 단, 보세물류창고(PLB)에서는 최소금액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제품은 오히려 일반 수입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으며, 만약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물류·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는 PLB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참고사항²⁷⁾

-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야 하나(보세구역 장치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 하에 보세구역 외에도 장치가 가능함

☞ 보세구역장치 외 장치가 허용되는 물품

- ① 거대 중량, 크기 과다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 ②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③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4-b) 국내사용을 위한 수입

- 국내사용을 위한 수입 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기 위해 화물을 인도네시아 관세법 상의 적용 범위가 미치는 관세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

(i) 1단계 : 수입신고서 및 서류 제출²⁸⁾

- 서면, 전자데이터교환(EDI)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윈도우(INSW) 사이트를 통해 수입신고서 및 통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국가 싱글윈도우 : <http://eservice.insw.go.id>

• 수입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목록²⁹⁾

필수 서류

- ORIGINAL BILL OF LADING(선하증권 원본)
- DELIVERY ORDER(화물인도 지시서)
- INVOICE & PACKING LIST(송장 및 물품명세서)
- INSURANCE POLICY(적하보험)

기타 서류

- FTA 원산지 증명서
- SALES CONTRACT
- PURCHASE ORDER
- REMITTANCE SLIP(물품 대금 송금증)

❖ 선하증권 원본

-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통관시, 수입자가 제출하는 선적서류 일체의 사본을 인정하지 않음(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신한 서류도 인정 불가)
- 따라서 수입자는 B/L 원본은 물론, 수출업자가 직인 및 날인한 invoice, packing list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만약 선적지에서 B/L 원본을 양도(surrender)한 경우라도, 반드시 surrender B/L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 ☞ 수입통관시 원본 선적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빈번 발생. 따라서 수입시, 수출업자에게 반드시 원본 선적서류를 송부하도록 요청해야 함
- ☞ 도착지에서 임의로 작성하거나 서류를 날조하여 통관을 진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중한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수입제품별 인허가 구비

- 수입자가 수입자격에 대한 필수 구비 인허가 사항을 완비했음지라도, 수입제품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입자 필수 구비 인허가 사항 외에 개별 수입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되거나 화물을 반송해야 하는 일 발생

❖ 선적서류 기재사항

- 수입 선적서류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특히 수입자명은 세관에 등록된 API & NIK 상의 등록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수입가격은 정상가를 명시해야 함)
- 선적서류에는 실제 선적된 화물의 품명 및 수량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입업체 상호간에 통용되는 브랜드명이나 코드명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 FTA 원산지 증명서³⁰⁾

-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각 FTA 협정별 세부사항에 따라 수입관세의 면제 또는 감세 혜택이 가능하며,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약에 준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인도네시아 기체결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협정명	체결국	양식
AFTA	아세안 회원국	FORM D
AKFTA	아세안 - 한국	FORM AK
ACFTA	아세안 - 중국	FORM E
JIEPA	인도네시아 - 일본	FORM JIEPA
AI-FTA	아세안 - 인도	FORM AI
ANZA-FTA	아세안 - 뉴질랜드 & 호주	FROM AANZ

자료: Freight Cargo Logistics 전문가 자료

한-인도네시아 EODES 구축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 2019년 12월 기준, 현재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양국간 EODES 구축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의 서면 제출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됨
(단,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한-인도네시아 EODES 구축은 양국간 FTA 활용률 제고와 관세 및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최신 개정 사항은 우리나라 관세청 및 인도네시아 싱글윈도우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 (한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인도네시아 INSW) <http://service.insw.go.id>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일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hr/>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hr/>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OO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³¹⁾

- (발급방법) Form AK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각 국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물품이 원산지물품 인지 심사한 후 발급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 ASEAN : 인도네시아(통상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라오스(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세관), 베트남(통상부), 태국(상무부)

- (발급절차) 한국에서 Form AK를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수출물품 HS code 확인
- ② 수입국 FTA 세율 확인
- ③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확인
- ④ 원산지 입증자료 작성 및 원산지 판정
- ⑤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심사
-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쇄) 및 원본 송부

각 단계별 주의 사항

- ① 수출물품의 HS code(6단위)는 바이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일치시켜야 함
- ② 아세안 10개국이 협정문에서 각각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함
- ③ AKFTA 협정문상 HS 6단위 별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함(한국산 판단기준)
- ④ 수출물품의 거래현황 및 생산현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invoice,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원산지소명서, FTA BOM,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⑤ 동일 수입자에게 동일 물품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경우라도, Form AK는 수출건별로 신청, 발급 및 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발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 이후부터 선적일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선적일 또는 선적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함
 - 원칙: 선적일(포함)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
 - 예외: 선적일(포함)로부터 3영업일 이후 발급 ⇨ 이 경우, Form AK에 반드시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⑥ 원산지증명서를 실수로 잘 못 발급했을 경우, 원본을 다시 세관에 제출하고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을 해야 하며(최초 1회만 ORIGINAL(원본) 인쇄 가능. 2번째 인쇄부터는 ORIGINAL이 아닌 TRIPLICATE가 발행), 반드시 칼라로 인쇄해야 하며, 양면 출력시 옆으로 넘겼을 때 뒷장이 바로 나오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사본)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원본이 아닌 서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서류 구비시 반드시 원본서류인지를 확인해야 함
 - Form AK의 경우에는 총 2부의 원본과 부분 발급이 가능하며, 효력은 원본에만 발생

*ORIGINAL : 원본 / DUPLICATE : 부분(세관보관용) / TRIPLICATE : 부분(수출자보관용)

-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관세사 등)
- (기타 주의사항) 상호대응세율 및 FTA 사후적용 규정 수시 확인 필요

상호대응세율

-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양허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FTA 혜택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규정
- 협정문상에는 양허대상품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대응세율 규정을 근거로 FTA 관세혜택을 거부할 수 있으니, 수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 필요

FTA 사후적용

- 수입신고 시점에 미처 FTA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FTA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차후에 FTA 적용을 통해 관세를 일부 또는 전부 환급 받을 수 있는 규정
- 사후적용에 관련한 법은 수입국의 국내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FTA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사후적용 가능여부 및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한-아세안 주요 국가별 FTA 사후적용 기한 참고〉

- 한국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본, 사본 모두 가능)
- 태국 : 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본만 가능)
- 베트남 : (Form AK)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Form KV) 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모두 원본만 가능)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사후적용 규정 없음 (수입신고시, 원본 제출에 한하여 FTA 적용가능)

*2019. 12월 기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기에 따라 관련법 재확인 필요)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수입서류의 명칭

수입서류 명칭	내용
BC 1.0 (Shipping Line for Planning Arrival Cargo)	화물 도착 계획(선사발행)
BC 1.1 (Shipping Line for Information Arrival Departure Cargo)	화물 입/출항 여부(선사발행)
BC 1.2 (Transshipment Cargo - Angkut Lanjut)	화물 환적 서류
BC 1.3 (Transshipment Cargo in Bonded Zone to Out of Bonded Zone)	화물 환적 서류(보세공단 발행)
BC 2.0 (Create for Import Cargo PIB)	비보세지역 화물 통관 서류
BC 2.1 (Create for Import Cargo PIBT: Personal Effect)	이사화물 수입 서류
BC 2.3 (Export/Import under Controlling Pabean/Beacukai)	보세 지역 화물 통관 서류
BC 3.0 (Information for Export Cargo)	화물 수출 정보

자료: Freight Cargo Logistics 전문가 자료

(ii) 2단계 : 수입제세 납부

-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세 및 물품세 납부를 위한 청구번호(Billing Code)를 수령해야 함
 - 청구번호(Billing Code)에 따라 수입자는 지정된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납부는 현금 또는 정기지불이 가능하나, 정기지불은 통관우선파트너(MITA) 또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로 인정된 생산자·수입자만 가능

수입제세 납부 기한

- (현금 납부시) 수입신고서 등록번호 취득 전까지
- (정기 지불시) 수입신고서가 등록된 당월 말일까지

• 수입제세 목록 및 계산방식³²⁾

수입 시 납부하는 수입제세

- 수입관세(Import Duty) : BEA MASUK
- 부가가치세(VAT) : PPN(PAJAK PERTAMBAHAN NILAI)
- 선납법인소득세(INCOME TAX) : PPPH22(PAJAK PENGHASILAN PASAL 22)
- 특별소비세(LUXURY TAX) :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 소비세(EXCISE) : CUKAI

수입제세 계산방식

- 수입관세 = 과세가격(FOB 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10%
- 법인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2.5%(or 7.5%)
- 특소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특소세율

참고사항

- 수입제세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율은 재무부가 매주 발표하는 환율에 따름
- 과세가격이란 비용,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말함
- 관세율은 인도네시아 관세율표에 기재된 수입세율이 적용
- 수입세는 수입신고서 등록번호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하나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관세면제 혹은 경감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이자, 면제 또는 경감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자O
- 수입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입관세의 **10%가 가산됨**
 - ※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매월 2%의 이자가 부과
 - 수입세의 부족한 금액이나 체납된 벌금액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37조, 제10B조 6, 제37A조(Law No. 17 of 2006 on Customs)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 2018.

- 수입제세의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제세 일부가 면제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서류를 구비해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공장 설립관련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공장을 설립하여 이와 관련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가 면제됨
-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서류를 구비해야함
- 관련 서류 발급처 :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 위원회

전략적 물품 수입 관련

- 전략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가 면제됨
- 관련 서류 발급처 : 인니 재무부 및 관할 세관

자료: PT. PENASCOPI LOGISTIK TRANSNIAGA 전문가 자료

(iii) 3단계 : 세관 조사 · 검사 (서류심사/화물검사)

- 세관영역에서 화물을 인수 받기 전, 세관 직원은 수입화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함
- 조사 · 검사에는 서류 심사 및 화물검사가 있음
 - (서류심사) 수입화물이 수입금지 · 제한품목(LARTAS)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 수입금지 · 제한품목(LARTAS)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허가를 위한 필요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상태 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이 반려

- (화물검사) 화물검사 후 통관을 통보받은 경우, 수입업체는 화물검사 순번표를 받은 뒤, 해당 순번에 따라 화물 검사를 실시하게 됨

화물검사 종류 및 검사 비율

- VERY HIGH RISK : 100%
- HIGH RISK : 30%
- MIDDLE RISK : 10%
- VERY LOW RISK : 수입업체에서 실시

- 수입자 및 화주는 검사대상 화물에 대한 개봉의무가 있으며,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직원이 직접 개봉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수입자의 위험과 비용이 동반됨
- 화물검사 시에는, 내품을 100% 확인 검사 하므로, 선적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나 샘플, 개인용품, 기타 소모품 등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적발 시 행정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

HI-CO SCAN X-RAY

- 내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화물검사로, 컨테이너를 HI-CO SCAN X-RAY로 투과하여 내품을 검사하는 방식

- 세관직원은 이하의 수입 경로(channel)에 따라 심사 및 검사를 시행함

수입경로

경로	서류 심사	물품 검사	지정 기준
 Red Channel (고위험)	√	√	- 신규 수입 및 고위험 품목 수입 - 고위험 신용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수입세 납부와 전자데이터 교환(EDI)이 이루어지고 나서 물품검사한 후 통관 가능) • 통관은 통상 4~7일정도 소요 			
 Yellow Channel (위험)	√	X	- Red 지정 후 1년간 우수 기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전 서류 정밀심사, 물품검사는 면제(서류심사 및 전자데이터 교환(EDI) 후 수입세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통관 가능) • 통관은 통상 3~4일정도 소요 			
 Green Channel (우수)	√	X	- Yellow 지정 후 3개월간 우수 기록 보유 - 통상 제조업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전 서류심사, 물품검사는 면제(무작위 검사대상 선별시에는 물품검사도 해당) • 통관은 통상 1일정도 소요 			
 MITA Channel (최우수)	X	X	- 신용도 · 재정력 우수 - 평판 우수 - 수입실적 등 *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업에 한하여 해당 등급 부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수입관세 매월 일관정산 납부) • 위험품이나 정부관리품목 수입시에는 수입서류 심사 후 통관 완료 • 이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즉시 통관 			

자료: JETRO, 2019, KATI, 농식품수출정보 및 KOTRA 전문가 자료

수입경로의 결정 요인



〈수입경로의 결정 요인〉

- 사업자의 신용도 : 수입자, 통관업자, 운송업자, 일시장치장(TPS)업자 등의 신용도
- 물품 특성 : 고위험군물품, 정부관리품목, 재수입 · 일시적 수입 화물 등
- 무작위 추출
- 정보

자료: JETRO, 2019

- 최종심사

- 화물에 대한 심사·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이 항만세관본부로 검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사관은 검사보고서와 수입가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수입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함

인도네시아 세관원 현장 감시 모습



자료: kemenkeu, harianinhuaonline; KOTRA

(iv) 4단계 : 화물 처리 허가

- 수입화물은 출고승인서(SPPB) 발행에 따라 관세 영역으로부터 관세 승인 및 화물에 대한 인수가 가능해짐
 -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통관승인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수입자는 출고승인서(SPPB)*를 수령하고, LIFT ON 및 STORAGE를 납부한 이후 화물출고증(SP2)을 발급받아 화물을 출고할 수 있음

* SPPB(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화물출고승인서, 수입허가서)

- 지정항구 통관 규정

- 인도네시아로 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해 지정된 항구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³³⁾
- 일반 수입업자 인증번호(API-U)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특정 수입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수입품목을 반입할 수 있음

• API란, 상업을 위한 일반 수입업자 인증번호를 뜻함

〈API의 효력〉

- API는 수입업자가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한에서는 유효
- 반대로 정부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API는 무효 또는 유보

API 무효	API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I에 준한 사업인증번호(NIB)를 따르지 않은 사업을 실시한 경우 - 영구적인 법적효력을 가진 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총국장에게 3개월마다 수입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API요청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적시 혹은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 - 수입화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수입에 관한 법령규제를 위반한 경우 - 수입서류 및 수입에 관한 서장(書狀)을 악용한 경우

〈API의 유형〉

1) API-U (일반 수입업자 · 유통업자 인증번호)

: 거래(유통) 목적으로만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부여

2) API-P (제조업체 인증번호)

: 생산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와 같이 자체 사용 용도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부여

- ※ 무역부(또는 관련 주정부 서비스 책임자)가 발행
- ※ API가 없는 경우, 무역부의 승인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
- ※ API-U와 API-P는 동시에 취득할 수 없음

자료: JETRO, 2019.

- 수입 통관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연안항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Jayapura, Tarakan, Krueng Geukuh (North Aceh), Bitung
내륙 항만	Cikarang dry port (Bekasi)
공항	Kualanamu (Deli Serdang), Soekarno Hatta (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자료: 무역부법령 NOMOR 81 TABUN 2017(Ministry of Trade Regulations No 81 of 2017)

- 단, 아래 표의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만 수입이 가능함

항구명	특정 제품
Dumai, Jayapura, Tarakan	식품, 음료
Krueng Geukuh	식품, 음료, 의류, 전자 제품, 신발

자료: 무역부법령 NOMOR 81 TABUN 2017(Ministry of Trade Regulations No 81 of 2017)

- 다음은 인도네시아 주요 항만의 위치 및 모습이며, 이중 자카르타에 위치한 탄중 프리옥항 (Port Tanjung Priok)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주요항만



자료 : google 지도 및 Fright Cargo Logistics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EO 제도³⁴⁾

- 인도네시아는 2014년, 관세당국이 수출입업체 · 운송인 · 창고업자 ·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이러한 공인업체들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신속통관 등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함
 -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즉, AEO 업체는 수출입 화물검사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음

AEO 공인 업체의 주요 혜택(재무부 장관령 2014년 제227호)

- 수출입 서류 및 화물검사 간소화
- 통관절차의 간소화, 우선검사
- 심사 및 납세 혜택

자료: 재무부 장관령 2014년 제227호 제3조2항(Finance Minister Regulation (PMK) No. 227/PMK.04/2014 o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rticle 3 (2))

- 또한 AEO를 취득한 업체는 수입통관시 최우수 성실업체에게만 주어지는 MITA 채널(priority)에 해당하는 통관상의 지위가 주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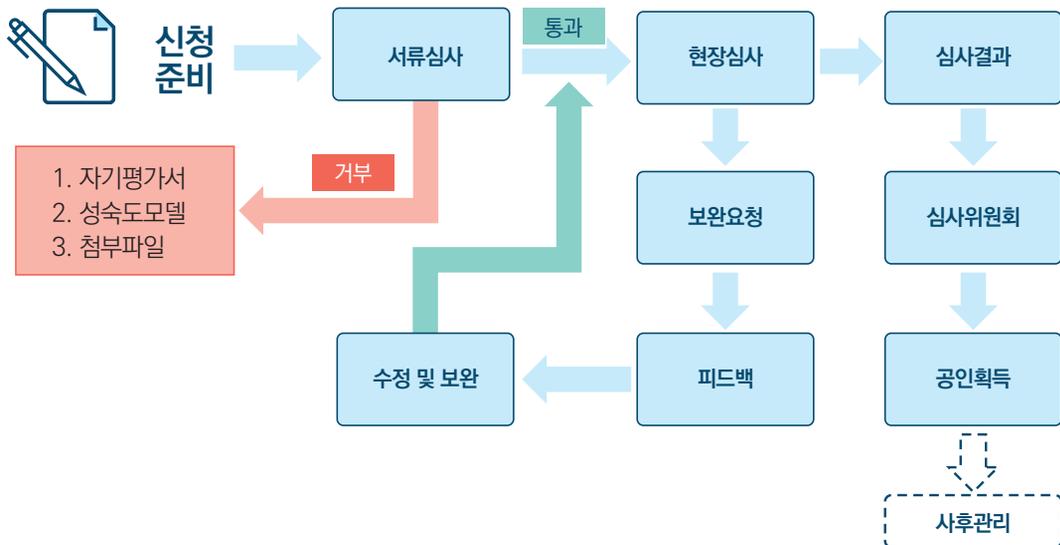
참고사항

- 평균적으로 일반 수입자는 통관 소요일이 4.03일인데 반해, AEO 공인 업체는 2.93일이 걸려 약 1.1일 시간 절감 가능

- **(AEO 공인기준)** 인도네시아 AEO 공인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 (법규준수도)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재정상황을 갖추고 있을 것
(조세 체납, 신용등급 문제 등)
 - (내부통제)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시스템 구비
 - (안전관리)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시설, 장비, 정보기술 등 데이터 관리시스템 보유 및 안전성 충족

- **(AEO 신청절차)** 인도네시아 AEO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 필수 서류 구비 · 자기평가서(Self-Assessment) 작성 및 제출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AEO 공인 획득

인도네시아 AEO 신청절차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공식 홈페이지(<http://www.beacukai.go.id/>)

-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 합의함(2019. 4월)
 - (AEO MRA) AEO제도 시행국가들 간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하여 상대국 수입통관시에도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함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에 AEO MRA 체결에 관한 협의가 최근 이루어진 바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 AEO MRA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AEO MRA 체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UAE,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카자흐스탄으로 총 20개국임 [2019. 6월 기준. 한국AEO진흥협회(2019. 11월 검색)]

사후국경감시제도(Post-Border Policy)³⁵⁾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사후국경감시(Post-Border)제도’를 발표함(2018년 제정, 2019. 2. 1 발효)
 - 이는 원재료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인도네시아 내 제조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출과 제조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 원부자재를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전체 제품군의 약 50%에 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존재하여 수입통관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2018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0,826개의 HS 코드가 있으며 이 중, 5,229개에 해당하는 HS 코드 품목군에 대해 수입규제가 존재함

▶ 이는 전체 품목의 약 48.3% 정도에 해당

- 이에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감독을 기존 사전국경검사(Border Inspection)에서 2018년 2월부터 사후국경검사(Post-Border Inspection)로 전환함³⁶⁾
 - (사전국경검사) 세관에서 통관 예정 물품에 관한 수입제세 납부 여부 및 인증·허가 여부, 서류 구비여부 등 수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사전에 통관여부를 결정함
 - (사후국경심사) 통관 예정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는 관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해당 HS 코드에 대한 수입제세 등 기본적인 부분의 확인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인증·수입규제 등과 같은 자격여부확인 및 제품검사는 추후 각 인증 및 규제 소관부처에서 표본조사방식을 통한 직접검사로 실시됨

사후국경검사 실시 방법

- 1) 데이터 분석 또는 서류 검사
- 2)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수입화물이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무작위로 제품검사 대상 추출
- 3) 회계감사(서류검사/회계장부) 및 실제 제품에 대한 검사

자료: ibid

- 단, 이러한 사후국경검사가 적용되는 물품은 반드시 수입하는 당사자가 자진 수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자진신고란?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사후국경검사 정책의 목적에 맞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상의 자진 수입 신고 · 허가제도
- 즉,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화물의 반입요건으로 보완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 하는 것임
 - ※ 수입자는 재무제표, 업무공정표, 인보이스, 사업 활동에 관한 서신을 전자데이터 등에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기록은 10년간 보존됨
- 이로 자진신고는 소비자보호 · 무역법령총국의 관리수단으로써 가능함

※ 인도네시아 수입시 자진신고 방법

- INATRADE(인도네시아 상업부 전자통합시스템) : <http://inatrade.kemendag.go.id> 를 통해 자진 수입신고서 작성
- 자진수입신고서는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수입신고번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화물이 수입 후 48시간 이내로 작성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수입통관시 사후국경검사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효과 기대 가능
- 특히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철강 ·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섬유봉제 · 일반기계 등)이 대부분 사후국경검사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물류 리드타임 및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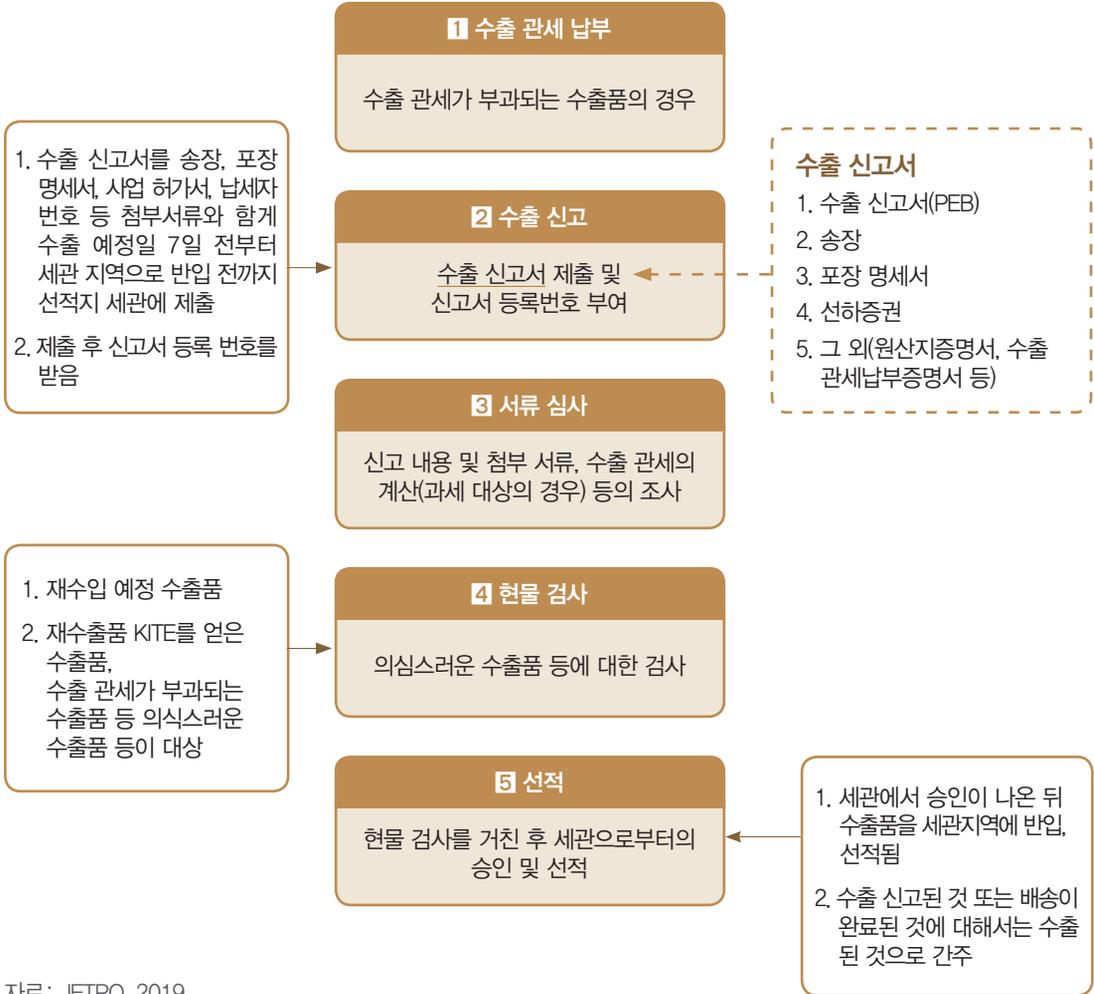
사후국경감시 대상 품목 리스트(일부)

- 2018년, 신설된 사후국경감시 정책을 반영하여 인니 무역부 · 보건부 · 산업부 · 식약청(BPOM) 등 7개 정부기관 및 부처의 20여개 관련 법령이 개정 및 신규 제정됨
- 사후국경감시 대상 품목 : 총 2,859개

품목군	주요 HS code (8단위)	관할법령
진주	7101.10.00 / 7101.21.00 / 7101.22.00 / 7116.10.00	무역부 장관령 MOT No.3 2018
타이어	4011.10.00 / 4011.20.10 / 4011.20.90 / 4011.70.00 / 4011.80.11 / 4011.80.19 / 4011.80.21 / 4011.80.29 / 4011.90.10 / 4011.90.20 / 4011.90.30 / 4011.90.90 / 4013.10.11 / 4013.10.19 / 4013.10.21 / 4013.10.29 / 4013.20.00 / 4013.90.11 / 4013.90.19 / 4013.90.20 / 4013.90.31 / 4013.90.39 / 4013.90.91 / 4013.90.99 / 8708.70.21 / 8708.70.22 / 8708.70.23 / 8708.70.29	무역부 장관령 MOT No.6 2018
시멘트	2523.10.10 / 2523.10.90 / 2523.21.00 / 2523.29.10 / 2523.29.90 / 2523.90.00	무역부 장관령 MOT No.7 2018
플라스틱	2711.14.10 / 2901.21.00 / 3902.30.90	무역부 장관령 MOT No.8 2018
유리판	7003.12.10 / 7003.12.20 / 7003.12.90 / 7003.19.10 / 7003.19.90 / 7003.20.10 / 7003.20.90 / 7003.30.10 / 7003.30.90 / 7004.20.10 / 7004.20.90 / 7004.90.90 / 7005.10.10 / 7005.10.90 / 7005.21.10 / 7005.21.90 / 7005.29.10 / 7005.29.90 / 7005.30.00 / 7006.00.10 / 7006.00.90 / 7007.11.10 / 7007.11.20 / 7007.11.30 / 7007.11.40 / 7007.19.10 / 7007.19.90 / 7007.21.10 / 7007.21.20 / 7007.21.30 / 7007.21.40 / 7007.29.10 / 7007.29.90	무역부 장관령 MOT No.9 2018
세라믹스 (도자기류)	6901.00.00 / 6904.10.00 / 6904.90.00 / 6905.10.00 / 6905.90.00 / 6906.00.00 / 6907.21.21 / 6907.21.22 / 6907.21.23 / 6907.21.24 / 6907.21.91 / 6907.21.92 / 6907.21.93 / 6907.21.94 / 6907.22.11 / 6907.22.12 / 6907.22.13 / 6907.22.14 / 6907.22.91 / 6907.22.92 / 6907.22.93 / 6907.22.94 / 6907.23.11 / 6907.23.12 / 6907.23.13 / 6907.23.14 / 6907.23.91 / 6907.23.92 / 6907.23.93 / 6907.23.94 / 6907.30.11 / 6907.30.19 / 6907.30.91 / 6907.30.99 / 6907.40.21 / 6907.40.22 / 6907.40.91 / 6907.40.92 / 6909.11.00 / 6909.19.00 / 6909.90.00 / 6910.10.00 / 6910.90.00 / 6911.10.00 / 6911.90.00 / 6912.00.00 / 6913.10.10 / 6913.10.90 / 6913.90.10 / 6913.90.90	무역부 장관령 MOT No.10 2018
다이아몬드	7102.10.00 / 7102.21.00 / 7102.31.00	무역부 장관령 MOT No.11 2018

인도네시아 수출통관 절차

· 수출통관 절차



자료: JETRO, 2019.

근거규정

* 재무부규정 No. 18/PMK.04.2011에 규정(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Finance No.18/PMK.04.2011)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납세자식별번호 NPWP(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

1. 수출 관세 납부

- 수출관세는 수출신고서(PEB: Pemberitahuan Ekspor Barang/ Export Declaration Form)제출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연자원 보호 및 국내 가격 안정과 수요 충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³⁷⁾
 - 가죽, 목재, 코코아 두, 팜 오일, 팜 원유 그리고 금속광물 상품(metal mineral products)
- 수출관세는 과세가격(종가세)의 특정비율에 따라 또는 특정 통화의 세율 또는 수량에 기초하여 계산됨³⁸⁾

2. 수출 신고³⁹⁾

- 수출신고서(PEB)를 세관원에 제출

- 수출신고서와 함께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및 그 외 서류를(원산지증명서, 수출관세납부증명서 등) 제출
- 수출신고서는 수출 일정 전 7일 이내에 또는 물품이 세관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야 함

– 수출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NPWP)와 다음 면허증들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무역부로부터 받은 무역면허(SIUP)
- 산업부로부터 받은 제조면허
- 투자 조정위원회(BKPM)가 발급한 PMA 면허
- 수출업자식별번호(APE: Angka Pengenal EKspor)

- 제출방식은 수기작성(PEB Manual), 전자신고방식 PDE(Pertukaran Data Elektronik), 전자데이터 저장매체를 이용

주의사항

-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업자는 500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됨(한화로 약 40만원 정도에 해당)
- 단 승객, 승무원, 개인 비상업물품은 PEB 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3. 서류 심사

- 수출자가 제출한 신고서류를 심사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수출승인(NPE: Nota Persetujuan EKspor)을 수출자에게 통보
- Tanjung Priok, Tanjung Perak, Soekarno, Tanjung Emas, Belawan in Medan 세관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의 80%를 처리

4. 현물 검사

- 일반 수출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은 10% 정도에 해당함
 - 현물검사는 주로 재수입예정 수출품, 재수출품(KITE)을 얻은 수출품,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수출품 등 의심스러운 수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수출규제품목 목록

금지 품목	제한 또는 승인이 필요한 물품
고무, 고철 및 골동품의 일부 카테고리	섬유, 합판 및 커피, 밀가루, 팜유, 설탕 및 석유 등은 국내 수요가 충족된 경우에만 특정 기본 상품을 수출할 수 있음

자료: HKTDC, 2018

수출목적 수입우대 제도,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란?

- 완제품 수출조건으로 자본재 · 원재료 수입 시, 수입관세/부가세/사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수출에 사용되지 않는 부작용으로 2012년에 폐지된 바 있음)
- 수출목적 수입우대제도를 재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음
- 한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출목적 수입우대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2.08)

5. 선적

- 통관의 마무리
 - 현물 검사를 거치고 세관에서 승인이 나오면, 수출품을 세관지역에 반입, 선적

4. 관세



관세 일반

-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 과세환율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과세물건

-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부과, 수출물품에도 수출관세 부과가능

❖ 납세의무자

-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관세 납부에 책임이 있고 이를 통관대행업자에 위임가능
- 하선장소 사업자 및 보세구역 사업자는 장치 내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책임이 있음

❖ 과세표준

- (수입관세 부과시) 보통 거래가격으로 수입 신고일 당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산정
- (수출관세 부과시) 수출가격을 의미

❖ 관세율

- 수출입시 물품의 품목분류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HS코드에 의해 수출입관세율이 결정
- 수출관세 대상품목은 재무부장관령에 부록으로 제시

❖ 과세환율

- 과세환율은 재무부장관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결정
- 세관이 전자적 세입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시의 과세환율이, 세관이 전자적 세입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세 납부가 이루어진 때의 과세환율이 적용
- 단,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이 반출되거나 포괄담보 제공 후 물품반출시 수입신고 등록시의 과세환율이, 단일담보 제공의 경우는 담보 제출시의 과세환율이 적용됨
- 인도네시아 관세 환율 확인 사이트 : <http://www.beacukai.go.id/kirs/html>(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 근거 규정: 인도네시아 관세법,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자료: JETRO, 「인도네시아의 통관제도」,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편, 한국조세 재정연구원(2018)

수입관세의 결정 및 납부

- 수입에 대한 세관신고 후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수입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수입관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수입관세에 더하여 행정벌금으로 수입관세의 10%가 이행부과금으로 부여됨
- 수입관세 결정시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 제출 전*~세관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과세가격을 결정 또는 정정할 수 있음
 - * 단, 일시수입물품 · 여행자휴대품 · 위탁물품은 제외됨
 - 세관심사에 따라 수입세율 및 과세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이를 수입업자에게 통보
 - 세관신고 후 30일내 수입관세 조정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 수입세율 및 과세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단, 관세청장은 과세가격 신고오류발견 시 세관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세율 및 과세가격에 대한 재결정 가능
 - 신고오류에 따른 수입관세납부액의 부족분은 부족액의 100%~1,000%의 행정벌금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함

구간	(관세부족금액/수입관세납부액) × 100%	제제금
1	25%미만	100%
2	25%이상~50%미만	200%
3	50%이상~75%미만	400%
4	75%이상~100%미만	700%
5	100%이상~	1,000%

자료: JETRO, 2019

수출관세의 적용⁴⁰⁾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일부 수출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적용됨
 - 인도네시아는 수출관세 부과에 있어 수출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 재무장관이 표준가격을 지정하여 평가함

인도네시아 수출 표준가격 관련 법령

- NO.54/M-DAG/PER/9/2013, No.55/M-DAG/PER/9/2013

- 수출가격은 CIF, FOB, CFR 가격을 이용함
 - 국내에서 원자재 및 연료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수출 억제 및 가격 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⁴¹⁾
 - 과세대상은 주로 천연자원과 팜 제품, 가죽, 목재, 카카오 콩 및 광물 제품임⁴²⁾
 - 주요 수출 품목 및 관세율은 아래와 같음

수출 품목 및 관세율				
1	2	3	4	5
팜제품	가죽	나무	카카오 콩	광물 제품
가격과 품목에 따라 0-262달러/중량톤(MT)	품목에 따라 15%, 25%	품목에 따라 2%, 5%, 10%, 15%	가격에 따라 0%, 5%, 10%, 15%	정제 시설의 개발 단계에 따라 5%, 2.5%, 0%.

주1. 팜제품의 경우 24개 품목, 광물제품은 금속광물 컨센트레이트 6품목에 해당

2. 니켈과 보크사이트는 2022년 1월 11일까지 10%

자료: 재무부 장관 규정 No.164/PMK.010/2018

대상 품목 확인 사이트

-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법령 페이지(Jaringan Dokumentasi dan Informasi Hukum)
- 관세 · 소비세총국 법령 페이지(Direktori Peraturan)
- 상업부 법령 페이지(Jaringan Dokumentasi dan Informasi Hukum)

관세율 참고 사이트

- <http://eservice.insw.go.id/>

관세 이외의 제세(諸稅)⁴³⁾

■ 부가가치세

-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예외사항도 있음

부가가치세 제외 품목

- 외국 대표부와 그 직원의 물품
- 국제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 종교 · 기부 · 사회 · 문화 분야에서 필요한 증여품
- 박물관 · 동물원등에서 필요한 물품
-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
- 신체장애자를 위해 필요한 물품
- 최소 1년간 해외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이삿짐
- 승객 ·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
-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국방에 필요한 군사 장비 및 부품
-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에 필요한 물품
- 재수입되는 수출품
- 수리 · 수선을 위해 수출되었다 수입된 물품
- 국민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 중소기업이 수입한 물품 · 원재료 · 기계

※ 근거 규정 : 재무부 장관 규정 NO.196/PMK.010/2016

■ 소비세

- 소비수요나 유통을 관리 · 감시할 필요가 있는 알코올이나 담배 및 담배 조제품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제세

■ 사치품 판매세(PPnBM)

- 사치품 판매세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PPN*에 더하여 부과됨

- 사치품 판매세의 일반적인 적용 범위는 10~50%이며 몇몇 아이템에 대해서는 75%이상의 PPhBM을 부과중임
-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광범위한 사치품 판매세 부과(10~125%)가 특징

PPN (Pertambahan Pajak Nilai)

- PPN은 부가가치세(VAT)와 상품서비스 판매세(Goods and Service Tax, GST)로 구성되며 규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보통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부과한도는 35%임

■ 소득세(PPh22)

-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보통 수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수입 시 원천 징수되는 법인소득세(선납법인세)임
 - ※ 수입 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관세와 함께 납부함(수입관세가 없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서류 제출 시 납부)

소득세율

- 수입자식별번호(API) 소지자는 과세가격의 2.5%, API 미소지자는 과세가격의 7.5%를 납부
- 단, 수입증가에 따라 특정 최종소비재에 대해서는 API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의 세율을 부과함
 - ▶ 10% 부과 672품목, 7.5% 1,077품목 등 대상품목은 재무부 웹사이트 법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13204/pmk-no-110pmk0102018>)

관세평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절차 및 방법

- 인도네시아는 관세법 제 15조에 명시된 WTO 국제규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 수입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수입세율

- 과세가격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하나 거래가격 파악이 어려울 경우 동일 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 등을 활용

❖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며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시험비용, 시장조사 비용 등)이나 수입 후 발생한 비용은 제외
-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운임(선적, 하역, 화물취급 수수료), 보험료 등을 포함
- 거래가격 인정 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과세가격 산정에 특히 유의

* 특수관계 : 본지사간, 법률적 동업자, 주식소유 등으로 상호 통제가 가능한 경우, 친족관계 등

❖ 동일물품 거래가격

- 물리적 특성, 품질 등에서 동일하고 동일 국가에서 동일 생산자가 또는 동일 국가의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품
- 거래가격은 선하증권 날짜와 동일하거나 30일 이내로 거래단계, 수량이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것

❖ 유사물품 거래가격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 있는 유사물품으로 특성,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물품, 동일 국가에서 동일 생산자 또는 동일 국가의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품
- 거래가격은 선하증권 날짜와 동일하거나 30일 이내로 거래 단계, 수량이 평가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

■ 가격심사

-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 및 첨부 서류를 확인
- 수입업자가 AEO, 시설인증업체, 관세소비세총국으로부터 가격심사를 면제 승인 받은 업체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의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가격심사 생략 가능
- 거래가격의 공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수입신고의 진실성·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CIF가격 및 과세가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과세가격 데이터베이스

- 과세가격 데이터베이스는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사례의 수입신고서, 수입물품의 가격심사 또는 이의신청 자료 등임
 - 데이터베이스 상 동일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신고가격이 5%를 초과하여 낮게 신고될 경우(under value) 공정한 가격으로 보지 않고 심층 가격심사를 실시
 - 심사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게 수입물품과 관련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요청 받은 수입업자는 3일 이내에 진술서와 과세가격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인도네시아의 품목분류 체계

- 기본적으로 국제거래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HS 품목분류표'의 6자리 HS코드가 국제 공용으로 사용됨
 - HS코드 6단위 이후는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 인도네시아는 8자리를 사용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HS 6단위 이하(8단위)는 아세안 품목분류표(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를 기초로 하거나 일부(제98류)를 인도네시아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

인도네시아 HS코드 속견표(2019)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 조란·천연	기타 동물성 생산물	산수목·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 향신료
10	곡물	밀가루· 전분	채유용종자· 인삼	식물성엑스	기타식물성 생산물	동식물유지	육·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 과자	코코아 초코렛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0	채소·과실의 제조품	기타의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 식초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 소금	광· 슬랙·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안료, 페이트· 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 계면 활성제, 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 전분 효소	화약류· 성냥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각종 화학 공업생산물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고무와 그제품	원피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조물재료의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신문 인쇄물
50	견·견사 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필라 멘트 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우당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침투·도포한 직물
60	편물	의류 (편물제)	의류 및 부속품 (편물제외)	기타 섬유 제품, 냅마	신발류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 우모 인조제품	석·시멘트 석면제품	도자 제품 직물
70	유리	귀석·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과 그제품	니켈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유보)	납과 그 제품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제 공구·스펀· 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시계	약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완구· 운동용품	잡품	예술품 골동품	특별분류 규정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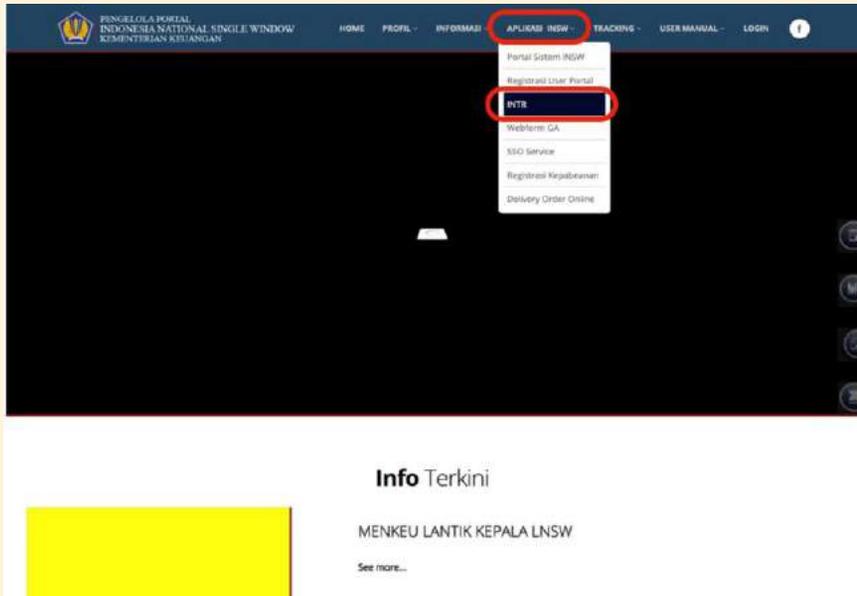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법령 확인 사이트: <http://peraturan.beacukai.go.id/>
<http://dpr.go.id/jdih/index/id/73>

• 인도네시아 관세율 조회 사이트: <http://eservice.insw.g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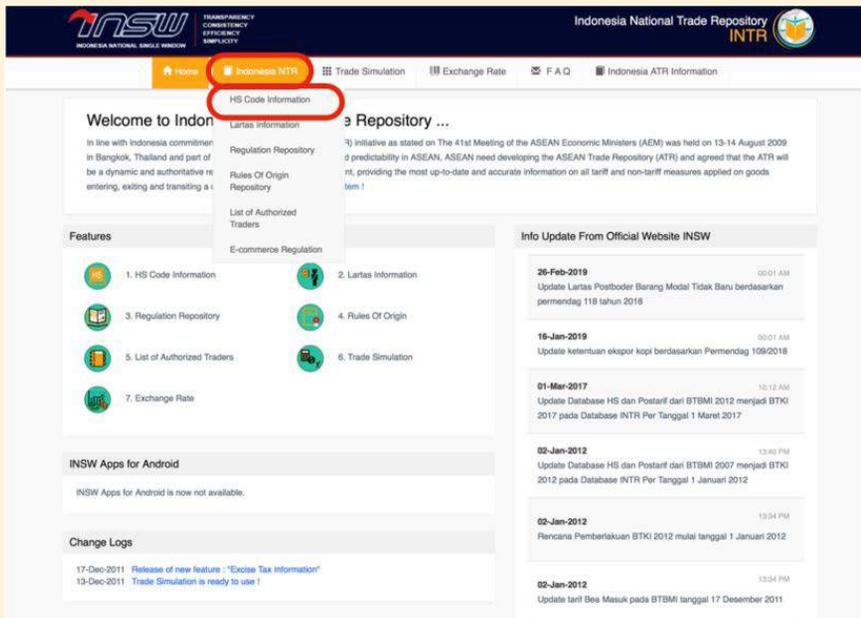
※ 소관 기관은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인도네시아 HS code 정보 확인 방법³⁹⁾

1. 인도네시아 싱글윈도우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사이트 접속, 상단 탭에서 APLIKASI INSW → INTR 클릭(INSW 사이트 주소 : <http://eservice.insw.go.id/>)



2. 아래 화면과 같이 Indonesia NTR → HS Code Infomation 클릭



3. 확인하고자 하는 HS 코드를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입력하여 해당 정보 확인(인도네시아어 및 영어 설명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INTR website interface for searching HS codes. The search bar is set to 'PARAMETER: HS Code' and 'KEY WORDS: 4802'. The results table is as follows:

No.	HS CODE	PRODUCT DESCRIPTION (INDONESIAN)	PRODUCT DESCRIPTION	영문 설명
1	48.02	Kertas dan kertas karton tidak dilipat, dari jenis yang digunakan untuk penulisan, pencetakan atau keperluan grafik lainnya, serta kertas untuk punch card serta punch tape tidak dilubangi, dalam gulungan atau lembaran empat persegi panjang (termasuk bujur sangkar) dari berbagai ukuran, selain dari pos 48.01 atau 48.03; kertas dan kertas karton buatan tangan.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and non perforated punch-cards and punch tape paper,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paper of heading 48.01 or 48.03;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2	4802.10.00	- Kertas dan kertas karton buatan tangan	-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3	4802.20	- Kertas dan kertas karton dari jenis yang digunakan sebagai dasar untuk kertas atau kertas karton peka cahaya, peka panas atau peka listrik ;	-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as a base for photo-sensitive, heat-sensitive or electro-sensitive paper or paperboard ;	
4	4802.20.10	- - Dalam bentuk gulungan dengan lebar tidak lebih dari 15 cm atau lembaran persegi panjang (termasuk bujur sangkar) yang sisinya tidak ada yang melebihi 36 cm dalam keadaan tidak dilipat	- - In rolls of not more than 15 cm in width or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5	4802.20.90	- - Lain-lain	- - Other	
6	4802.40	- Wallpaper base :	- Wallpaper base :	
7	4802.40.10	- - Dalam gulungan dengan lebar tidak lebih dari 15 cm atau dalam lembaran empat persegi panjang (termasuk bujur sangkar) yang sisinya tidak ada yang melebihi 36 cm dalam keadaan tidak dilipat	- - In rolls of not more than 15 cm in width or in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which no side exceeds 36 cm in the unfolded state	
8	4802.40.90	- - Lain-lain	- - Other	
9		- Kertas dan kertas karton bilaminar tidak memisahkan serat uasir	- Other paper and paperboard not containing fibres obtained by a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PKSI)의 활용⁴⁴⁾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HS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이전에 결정하여 알려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PSKI: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를 운영 중임
 - HS코드는 수입물품의 관세율 결정 및 수출입제한대상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법적근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다음 법에 근거하여 시행됨(2017. 1. 18)
 - 관세법 제17A조
 -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 품목분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재무부령(194/PMK/04/2016)
- **(신청요건 및 절차)**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 관세청등록번호(NIB)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물품의 수입신고서 제출 이전에 신청되어야 함
 - 단, 조세법원에 불복 제기된 물품은 신청 불가



자료: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① **(신청서 제출)** 수입자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물품의 품목분류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재무부령 서식 신청서, 물품 설명자료, 샘플 물품, 물품 상세 설명, 브로셔, 생산공정 흐름도, 분석 자료 등
- ② **(추가자료 요청·제출)** 관세청은 품목분류 심사에 있어 신청서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수입자에게 Mill Sheet(검사증명서) 등의 추가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을 받은 수입자는 요청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서는 반려됨
- ③ **(신청서 반려)** 관세청은 신청 요건 등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려 사유가 명시된 반려 통지서를 함께 발급하여 발송함
- ④ **(결정서 발급)** 모든 신청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관세청은 신청서의 접수 또는 추가자료 접수일

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PKS)에 관한 관세청령'을 발급함

- ⑤ **(재심 청구)** 수입자는 발급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관세청은 재심청구를 받은 30근무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서를 발급해야 함
 - 단, 재심에 의하여 다시 발급된 PKS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
- **(활용방법)** PKS가 발급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자는 수입 신고서에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PKS)에 관한 관세청령' 발급 번호 및 날짜를 수입 신고서에 기재하고 동 결정서 사본을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함
- 수입물품과 품목분류 결정서 상의 물품이 동일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결정서 상의 품목분류를 반드시 따라야 함*
 - * 인도네시아는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가격 평가 등을 세관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사례들과 상이하게 품목이 분류 되거나 추가과세징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 품목분류 사전심사(PKS)제도 활용시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세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품목분류 결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
- **(적용배제)**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품목분류 결정(PKS)의 적용이 배제됨
- 수입물품이 품목분류 결정서 상의 물품과 상이한 경우
 - 재심 등에 의해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령이 철회되거나 대체된 경우
 -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가 관련 법령에서 개정된 경우
 - 수입자가 품목분류 사전결정을 신청한 수입자와 상이한 경우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PSKI) 신청서 양식

FORMAT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u.p. Direktur(1).....
 Kantor Pusat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Jalan Jend. A. Yani - Jakarta 13230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SEBELUM IMPOR		
Nomor Aju :(2).....	Nama Perusahaan :(4)..... Alamat Perusahaan :(5).....	Nomor Polkok Wajib Pajak:(7).....
Tanggal :(3).....	Telp/Fax/Email yang dapat dihubungi :(6).....	Nomor Identitas:(8).....
dengan ini mengajukan permohonan penetapan klasifikasi atas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terhadap barang yang akan kami impor berupa:		
Uraian Barang :(9).....		
Merek dan tipe/model :(10).....		
Data pendukung (brosur/leaflet/certificate of analysis/foto/contoh/lain-lain) :(11).....		
Contoh Barang : • Ada/Tidak Ada*)(12)..... • Diminta kembali/Tidak diminta kembali*) <i>(DJBC tidak bertanggung jawab terhadap barang contoh yang tidak diambil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KSI ini diterbitkan).</i>		
Rencana pelabuhan pemasukan :(13).....		
Penjelasan mengenai barang yang diajukan (proses pembuatan, cara kerja, komposisi bahan, fungsi/kegunaan, spesifikasi, kapasitas/ukuran, kemasan, dsb) :(14).....		
Pendapat Pos Tarif :(15).....		
Saat ini barang sedang diajukan pemberitahuan pabean : <input type="checkbox"/> YA <input type="checkbox"/> TIDAK(16).....		
Saat ini barang sedang dalam proses keberatan/atau banding : <input type="checkbox"/> YA <input type="checkbox"/> TIDAK(17).....		
Dengan ini saya menyatakan bahwa seluruh informasi dan dokumen yang dilampirkan adalah bena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Cap </div>(18).....		
Catatan : 1 (satu) formulir permohonan untuk 1 (satu) item barang		

*) Coret yang tidak perlu

관세의 감면 및 환급 제도

■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07년 9월, 관세법개정과 함께 수입관세 면제 대상에 대한 재무부 장관규정을 발표(發布)하여 각종 면제 조치를 취함

면제 대상 관련 내용(6개 대상)

대상 번호	수입관세 면제 대상 및 내용
1	<p>【환경오염방지 장비 및 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장비 및 원료에 대한 면제 수익자는 제조사 또는 폐기물처리회사가 됨 - 수입신고의 등록부터 2년간 목적대로 사용된 장비는 관세소비세총국의 허가를 얻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p>〈근거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101/PMK.04/2007</p>
2	<p>【공공목적의 의약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예산 또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소비되는 공공목적의 의약품으로, 보건 프로그램에 관련한 부처 각지의 보건기관, 병원 또는 부처/기관 등과 계약을 맺은 제3자가 수입하는 의약품이 대상임 <p>〈근거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102/PMK.04/2007</p>
3	<p>【과학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수입 대상은 과학기술서적, 교양서적, 성격, 코란 등 종교 서적(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 책은 제외) <p>〈근거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103/PMK.04/2007</p>
4	<p>【스포츠 용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전국 스포츠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스포츠 단체 본부가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는 면제 <p>〈근거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104/PMK.04/2007</p>
5	<p>【식물의 씨 및 동물의 품종, 치어(稚魚)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식물의 씨와 동물의 품종, 그리고 치어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p>〈근거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105/PMK.04/2007</p>
6	<p>【수출시와 동일한 품질을 가진 재수입의 수입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시와 동일한 품질 그대로 재수입된 수입품의 경우에 최초의 수입시에 관세 면제 편의를 받아, 수출시에 관세/물품세 환급 또는 보증금의 환불받는 재수입품의 경우는 편의액 상당의 관세/물품세가 과세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수리 작업을 위해 수출된 후 재수입된 수입품의 경우, 교환·추가된 부분 및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관세/물품세가 과세됨 <p>※ 관세면제편의를 받으려면, 관세소비세총국장에 신청하고 재무장관의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irektori Peraturan DJBC http://peraturan.beacukai.go.id/)</p> <p>〈근거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106/PMK.04/2007</p>

■ 관세 환급

- 인도네시아는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가 과다 납부 또는 과오 납부된 경우 관세를 환급 해주고 있음

수입관세 환급

- 관세과다납부로 세관이 결정한 경우
- 관세과다납부로 관세청장이 재결정한 경우
- 행정오류로 인한 과다납부
- 정부정책 상, 재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
- 품질저하, 주문오류 등의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물량이 더 적은 경우
- 관세과다납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수출관세 환급

- 행정오류 상, 과다 납부한 경우
- 관세과다납부로 세관이 결정한 경우
- 관세과다납부로 관세청장이 재결정한 경우
- 수출관세에 이의제기 결정이 난 경우
- 취소되거나 수출되지 않은 경우
- 관세과다납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자료: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 환급 절차



- 1) 신청서 제출 :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서류 형태로 제출
- 2) 실질 검사 : 세관장 또는 세관원의 실질 검사
- 3) 승인 또는 거절 : 환급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 및 통보 (승인시 환급, 거절시 환급 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목록

- 세관신고서
- 위촉장
- 이의제기 결정문
- 법원 결정문
- 관세면제 · 경감결정문
- 물품취소 관련 서류 사본

• 수출용 원재료 환급

- 수입 원재료 수출을 위한 물품으로 가공 · 조립 ·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 가능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업체등록번호가 필요함
 - 환급용 업체등록번호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공장이 있는 지역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우리 기업 현지 통관 대행업자 활용 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현지 통관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CASE 1) 제품이 관례에 따라 압수된 경우

- ① 운송 대행사에 재확인하고, 관례에 따라 제품이 압수된 경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함
- ②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한 경우, 해당 세관 부서에 항소하고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음

(CASE 2) 상품을 부분적으로 수령한 경우

- ① 얼마 동안 세관에 상품이 보관되어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배송 대행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음
- ② 만일 상품에 관해 세관으로부터 피드백이 있거나 세관직원이 세관에 보관해둬야 할 이유에 대해 대행업체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한 상황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음
- ③ 또한 제품 전부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혹은 운송 도중 화물누락의 가능성에 대해 대행업체에 즉시 항의를 하고 제품을 받을 때까지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자료: <https://sindoshipping.com/2019/02/05/question-around-custom-clearance-indonesia/>

■ 레드 라이트(Red Light)용어에 대한 이해 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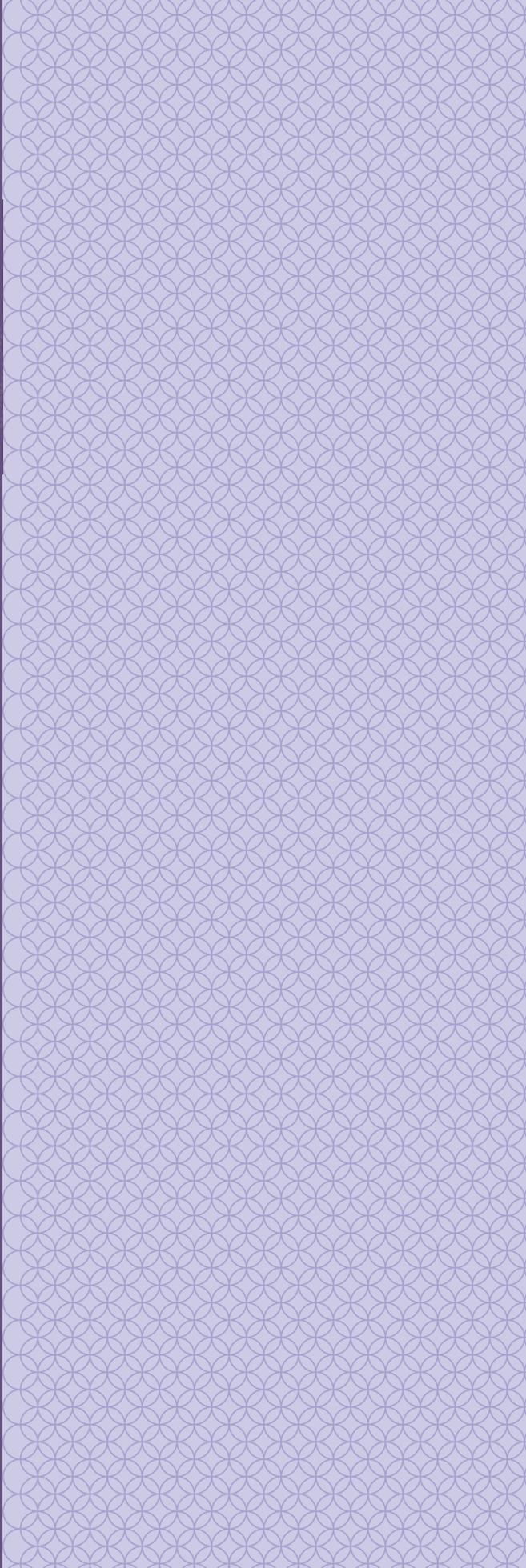
- 레드라이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송산업과 관련한 운송대행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임
 - 레드 라이트 기간은 운송 중 점검할 사항이 더 있어 운송이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신남방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IV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1. 최근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동향

-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동향
 -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성장 준비
 - OSS 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심화
-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이슈 사항
 - 협상 시작 7년 만에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통합정책협의
 -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

2.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
- 인도네시아의 무역규제
- 한국 관련된 무역규제 현황
- 수입허가 및 인증(SNI, BPOM, 할랄인증)
- 인도네시아 기타 표시제도
- 선적 전 검사

3. 인도네시아의 수출규제

- 수출규제

4.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및 특성
- 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
- 시사점

1. 최근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동향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동향

■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성장 준비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2회 스마트홈, 건축물, 도시 기술 전시회(The 2nd Indonesia International Smart Home, Building and City Technology Exhibitio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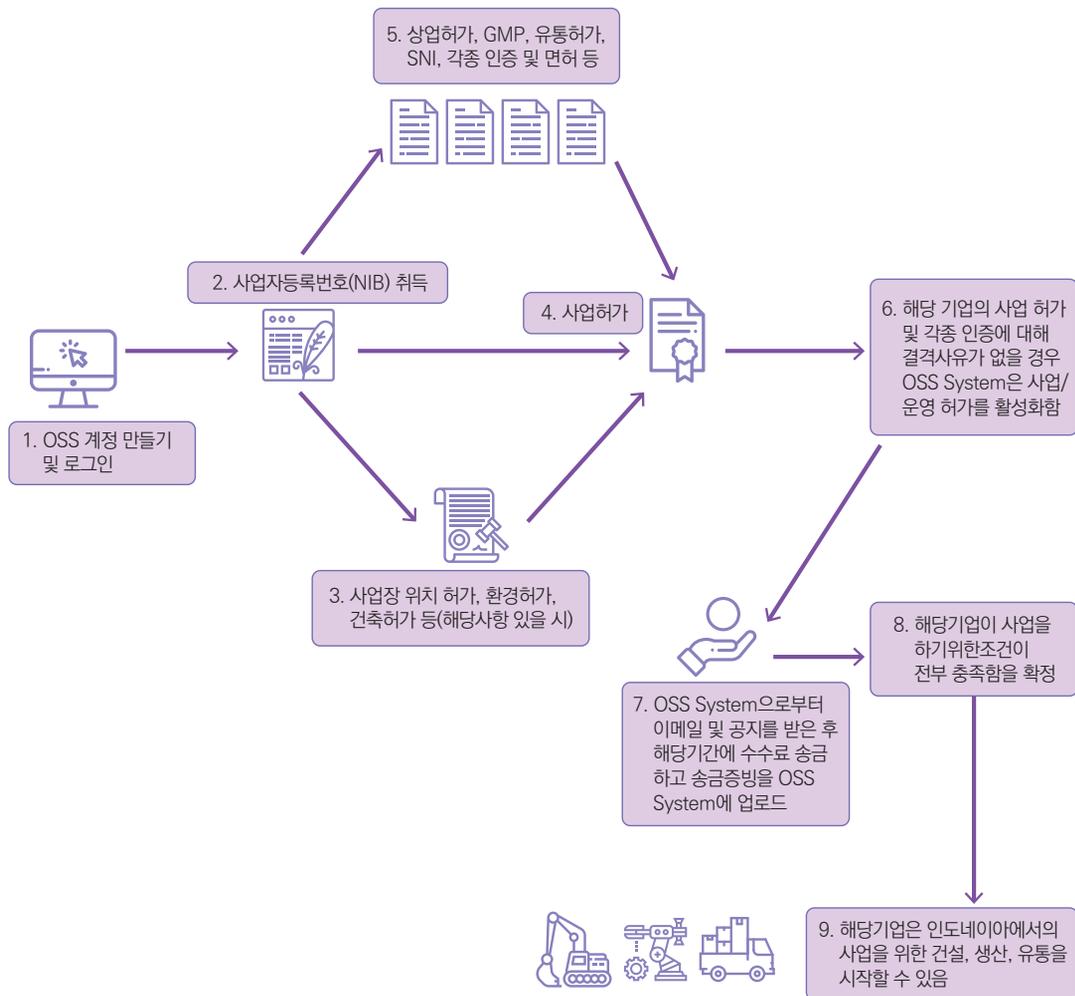
- 최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조코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시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⁴⁶⁾
 - 인도네시아에서 사물인터넷(IoT) 산업은 아직 잘 알려진 분야는 아니나, 정부에서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의 인구 문제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관련 업계는 빠르면 2년 이내에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시장은 아주 큰 시장이지만 아직 개발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음
 -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삼성 및 LG 제품 등으로 한국 스마트 관련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차지
 - 이로 추후 인도네시아 IoT 및 Smart 시장 확대 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게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⁴⁷⁾

- 조코위 정부는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규제 2018년 제24호'의 발표와 함께 OSS 시스템을 도입함
- OSS 시스템은 '온라인통합인허가(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약자로 투자자들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신규 전자통합시스템을 뜻함

- 종전의 사업허가는 발급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유관기관 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최소 1개월 이상 소요)
- OSS는 이러한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한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번호(NIB) 하나로 사업자 등록, 수입 면허, 관세시스템 접근 등이 모두 가능
- 아직은 도입되지 얼마 안 된 신규제도로 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나, 추후 시스템이 안정화를 이루면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및 사업유치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문제 관련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허가절차



자료: BKPM, KOTRA

■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심화⁴⁸⁾

- 조코위 정부는 2018년 루피아 가치 하락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등 지속적인 내수 경제의 불안정세가 이어지자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정책을 심화하고 있음
 - 수입산 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 22) 상향 조정 발표(2018. 9. 6)
 -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적용 강화 규정 발표(2018. 7. 13)
 - 전자상거래 제품의 소량수입액(De minimus)기준 하향 조정(2018. 9. 10)
 - 수입대체재로서의 바이오디젤(B20) 사용 독려(2018. 9. 1)
 - 철강 및 타이어 관련 법률 개정(2019. 1. 20 / 2019. 2. 1)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이슈 사항

■ 협상 시작 7년 만에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2019. 11월)⁴⁹⁾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이 2019년 11월, 협상 시작 7년만에 최종 타결됨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세안 시장의 중심이자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新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규모 2위에 해당하며, 금번 CEPA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루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크게 개선함
 -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을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과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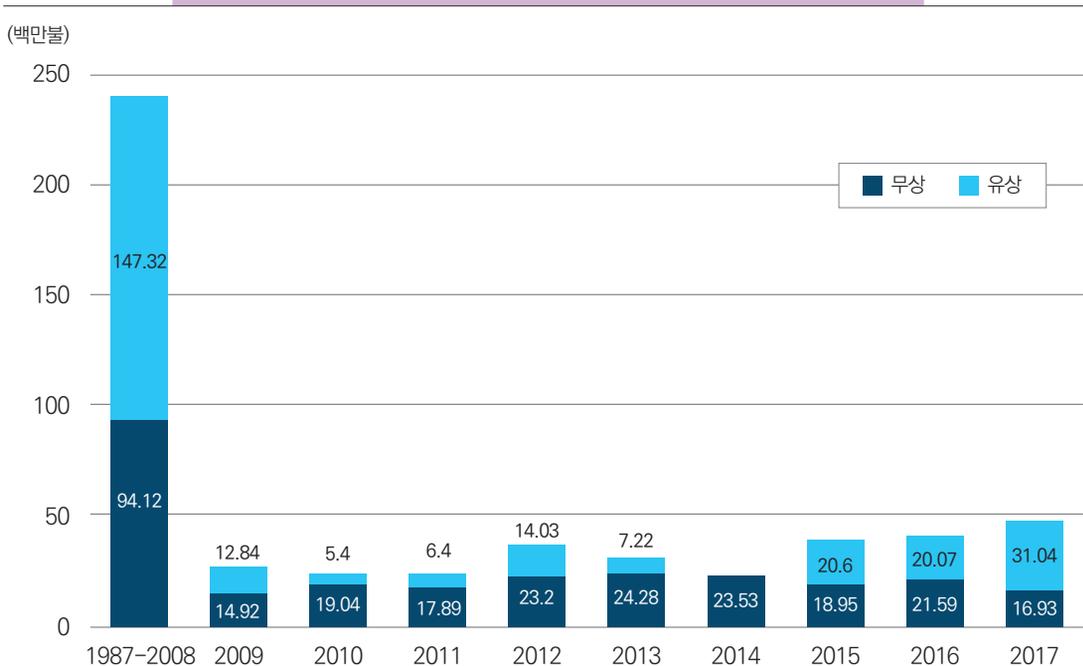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25)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左)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右)
 사진자료: 국제뉴스(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875#_enliple)

■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통합정책협의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ODA 분야 중점협력국(총 24개국) 중 하나로, 양국은 2019년 8월 제4차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유무상 개발협력사업을 논의 및 추진해옴
 - 1987년~2017년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ODA 규모는 총 614.2백만불이며 이는 전체 수원국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⁵⁰⁾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2016년 체결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기반으로 교통·공공행정·환경보호·물관리를 중점으로 지원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ODA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개발협력은 新남방 정책의 이행과 한-인도네시아 양국관계 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ODA 총지원실적



주: 총지출 기준(백만불)

자료: OECD Data, ODA KOREA

■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 ⁵¹⁾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 확산에 따라 한국 인지도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패션·게임·유통·음식 등 다양한 일상생활 분야에서 한국 관련 제품이 널리 사랑을 받고 있음
 - **(한류 확산배경)**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역사(신생국), 문화(가족 중심의 농업사회 전통) 경제 발전 단계 및 아세안 각국의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 등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K-POP과 드라마, 예능 등 문화 콘텐츠를 중심의 한류가 급속도로 전파됨
 - **(인도네시아 한류 현황)** 현재 인도네시아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함께 최고의 한류 중심지역으로 꼽히며, 한류의 성장도와 인지도도 세계 최고에 달함
 - **(한류의 전망)**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문화 우선주의나 반한감정에 따른 한류 쇠퇴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류의 지속 확산 및 심화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자료 : KOTRA 전문가 자료

2.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⁵²⁾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의 자급자족 보장 및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다양한 수출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관세를 포함한 비관세조치의 종류는 무려 1,000여 가지에 달함

비관세장벽 및 비관세조치(Non-Tariff Barriers or Measures)란?

(1) 용어 정의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 분명하게(sure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 : 잠재적으로(potential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
 - ☞ 이처럼 비관세장벽(NTB)과 비관세조치(NTM)는 이론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나, 실제로는 자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상호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따라서 동 책자에서는 두 용어를 동일하게 보며, 구분지어 사용하지 않음)

(2) 분류 체계

- 비관세조치 분류 체계에는 여러 기준이 존재하나, 동 보고서에서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MAST의 비관세조치(UNCTAD*, 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함
-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비관세조치를 A부터 P까지 총 16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1) 수입관련 조치와 (2) 수출관련 조치로 분류하며 (1) 수입관련 조치는 다시 (a) 기술적 조치와 (b) 비기술적 조치로 분류함

* UNCTAD TRAINS(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 DB : UNCTAD와 WTO, World Bank가 공동으로 구축한 비관세장벽 관련 가장 대표적인 NTB 종합 데이터베이스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및 코드(UNCTAD)

분류 및 코드		내용	
수입 관련 조치	기술적 조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B	무역기술장벽(TBT)
		C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절차
	비기술적 조치	D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E	수량제한 조치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 및 부가요금 포함)
		G	금융 조치
		H	경쟁 관련 조치
		I	무역 관련 투자 조치
		J	유통 제한
		K	판매 후 서비스 제한
		L	보조금(수출보조금 제외)
		M	정부조달 제한
		N	지적재산권
		O	원산지 규정
수출 관련 조치	P	수출 관련 조치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2018)

참고사항

동 자료는 UNCTAD NTM DB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UNCTAD는 참여 국가(현재 기준 한국 포함 총 91개국)의 제출자료 및 국내법령을 기반으로 일관된 방식의 데이터를 구축하므로, 통계상 비교는 용이하나 자료 구축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고, 법령내용을 정량화 하여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대해석 및 왜곡의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에 앞서 밝힘(검색일자: 2020. 02.07)

이에 따라 동 자료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 건수는 각 국가/산업 및 유형별로 식별되는 비관세조치 내용의 단순합계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건수가 높다고 하여 그것이 해당 국가와 산업에 강력한 규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 구축과정에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근거법률과 조항이 얼마나 많이, 또 복잡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므로, 비관세조치 건수는 조치의 존재여부 및 해당국가 내 비관세조치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짐

■ 국가별 비관세조치 적용 현황

국가별 비관세조치(NTM) 적용 현황

순위	국가명	비관세장벽 유형(코드)								
		총합	A	B	C	D	E	F	G~O	P
	전체	73,550	29,719	25,736	1,784	332	6,420	1,452	323	7,784
1	중국	7,256	1,642	4,054	113	0	312	51	58	1,026
2	미국	6,757	3,244	2,583	481	0	191	39	1	218
3	파나마	4,736	4,239	383	72	0	22	8	0	12
4	인도	4,598	2,311	1,483	47	0	212	43	23	479
5	페루	3,618	3,161	142	7	12	255	10		31
6	태국	3,276	1,257	1,098	178	4	116	170	1	452
7	뉴질랜드	3,090	1,569	1,382	29	0	41	5	3	61
8	한국	1,929	706	723	27	0	94	71	1	307
9	캐나다	1,735	234	1,153	20	0	158	32	2	136
10	호주	1,715	278	839	3	0	101	69	1	424
17	인도네시아	971	239	432	55	0	83	19	13	130

주 1: UNCTAD NTM DB, 순위는 총합 기준(검색일자: 2020. 02. 07)

주 2: 비관세장벽 유형 코드는 이전 장의【표 -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및 코드(UNCTAD)】를 참고

자료: UNCTAD TRAINS

- UNCTAD DB 기준, 국가별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적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 미국 > 파나마 > 인도 > ... > 한국 > ... >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A(동식물위생검역조치, SPS)와 B(무역기술장벽, TBT) 유형을 가장 높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A(SPS)와 B(TBT)가 높은 건수를 기록한 까닭은 해당 유형들이 모두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동시에 전 분야에 걸쳐 가장 폭 넓게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
 - 따라서 국가별 비관세조치 적용 현황 중 상위에 위치한 중국, 미국 등의 경우 국내법 상 비관세 조치 목적과 관련된, 그 중에서도 특히 SPS 및 TBT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시사됨
 -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관세조치는 총 971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17위를 차지하였으며, 유형은 A(SPS)와 B(TBT)가 전체의 약 69%로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인도네시아 주요 비관세조치 유형 및 현황

-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은 무역부, 산업부, 농업부, 식약청, 해양수산부, 재무부 등 총 13개의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보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 유형 및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순위	NTM 유형(코드)	조치 내용(상세)	주요 책임 및 관할기관	건수	비중
1	무역기술장벽(B)	라벨링 요건	무역부, 식약청(BPOM)	95	9.8%
2	무역기술장벽(B)	제품 품질 · 안정성 · 성능 요건	산업부, 무역부	85	8.8%
3	무역기술장벽(B)	인증 요건	식약청(BPOM)	74	7.6%
4	무역기술장벽(B)	검사(시험) 요건	해양수산부, 농업부	66	6.8%
5	수량제한조치(E)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산업부, 무역부	54	5.6%
6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인증 요건	산업부, 식약청(BPOM)	45	4.6%
7	선적 전 검사(C)	특정 통관항 통관 요건	농업부, 무역부	27	2.8%
8	무역기술장벽(B)	자국 추적 가능성 요건	산업부, 무역부	24	2.5%
9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라벨링 요건	무역부, 식약청(BPOM)	21	2.2%
10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검사(시험) 요건	농업부, 식약청(BPOM)	21	2.2%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				512	52.7%
기타(10대 순위 밖 비관세조치)				459	47.3%
총 계				971	100%

자료: UNCTAD TRAINS(검색일자: 2020. 02. 07),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2018)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가공

- UNCTAD NTM DB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라벨링 요건으로 나타남(95건, 1위)
- 다음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제품 품질 · 안정성 · 성능 요건(85건, 2위), 무역기술장벽(TBT) 인증 요건(74건, 3위), 무역기술장벽(TBT) 검사 요건(66건, 4위), 수량제한조치 관련 비자동 수입허가절차(54건, 5위) 등이 차지함
-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수입 시 적용되는 조치로서 일종의 수입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주요 비관세조치 유형별 적용 품목군(HS 2단위)

-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 유형에 해당하는 A(동식물위생검역조치), B(무역기술장벽), C(선적 전 검사), E(수량제한조치)를 중심으로 유형별 적용 품목군(HS 2단위 기준)을 살펴본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관세조치(NTM)		주요 품목	
코드	유형	HS 2단위	품명
A	SPS	제4류	조제식료품
		제1류	동물성 생산품
		제2류	식물성 생산품
		제6류	화학공업생산품
		제3류	동·식물성지방
B	TBT	제6류	화학공업생산품
		제16류	기계류·전기기기
		제15류	비(卑)금속과 그 제품
		제4류	조제식료품
		제7류	플라스틱과 고무
C	선적 전 검사	제6류	화학공업생산품
		제1류	동물성 생산품
		제4류	조제식료품
E	수량제한조치	제6류	화학공업생산품
		제4류	조제식료품
		제2류	식물성 생산품

주: UNCTAD TRAINS 자료를 HS 2단위로 분류·집계한 후 상위 3위 또는 5위까지 나타냄
 자료: UNCTAD TRAINS(검색일자: 2020. 02. 07)

- (유형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관련 비관세조치는 주로 조제식료품(제4류), 동물성 생산품(제1류), 식물성 생산품(제2류), 화학공업생산품(제6류), 동·식물성지방(제3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 B)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비관세조치의 경우 주로 화학공업생산품(제6류), 기계류·전기기기(제16류), 비금속과 그 제품(제15류), 조제식료품(제4류), 플라스틱과 고무(제7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유형 C) 이에는 선적 전 검사 및 A와 B에 분류되지 않는 기술적 비관세조치가 분류되는데, 예를 들자면 직접운송원칙, 세관지정, 감시 및 모니터링 등 각종 통관 절차 관련 사항을 말함. 유형 C는 주로 화학공업생산품(제6류), 동물성 생산품(제1류), 조제식료품(제4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됨

- (유형 E) 수량제한조치는 비기술적 조치로 비자동 수입허가, 할당, 수입금지, 수출규제협정 등의 비관세조치가 해당함. 이에는 화학공업생산물(제6류), 조제식료품(제4류), 식물성 생산물(제2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수량제한조치가 주로 제조업이나 가공식품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 하나임
- (종합) 인도네시아 10대 비관세조치 유형별 적용 품목군 검토 결과를 종합해보면, 화학공업생산물(제6류)과 조제식료품(제4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학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관세조치 적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품목군에 해당하며,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조제식료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SPS 조치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 비관세장벽 중 SPS와 TBT란? ⁵³⁾

-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 :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말하나 본래 목적과 달리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보통 WTO SPS 협정을 따르며 동 협정에서 조치가 적용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 식품(ex. 첨가제·오염물질·독성물질·식품이나 사료 등에 함유된 질병 유발 유기물 등)으로 인해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
 - (질병) 질병을 매개하는 동물, 식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품으로 인해 인간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
 - (해충) 해충의 침입·정착·확산 또는 질병(유발) 및 질병 매개 유기물로 인해 동식물에게 가해지는 위험
- **무역기술장벽(TBT)**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WTO TBT 협정 또는 FTA 협정문내 TBT 규정을 존중하며, 주요 TBT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라벨링)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주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
 -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 중복적인 검사요구,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의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
 - (기술규정) 본래 자국민의 보건·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규정이나,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통관시 정부의 강제검사제도에 활용될 경우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작용하는 기술장벽

- (표준) 일반적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부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이를 인용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 가능한 기술장벽

☞ SPS와 TBT는 'SPS와 TBT 조치의 중복 입력 불가 원칙'으로 협정 간 처리 범위에서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일한 규정이 SPS와 TBT를 모두 포함할 수는 있음

❖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SPS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1) 인도네시아 농업검역국(BARANTAN – Kepala Badan Karantina Pertanian) 홈페이지

☞ <https://karantina.pertanian.go.id/>

- 인도네시아 SPS 통보문 및 통보일자 · 해당품목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



NO.	NOTIFIKASI	JUDUL	FILE
1.	G/SPS/N/IDN/28 20 June 2006	Decree of Minister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concerning Amendment to Decree of Minister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No. Kep. 18/Men/2003 concerning Quarantine Action Towards Importation of Quarantine Pests and Diseases of Fish Carrier Media and Towards Movement from one Area to Another Within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Pdf
2.	G/SPS/N/IDN/29 17 August 2006	Draft Decree of Minister of Agriculture concern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Action on the Importation of Pathologic Substance and/or Veterinary Drug Materials.	Pdf
3.	G/SPS/N/IDN/30 28 August 2006	Draft Decree of Minister of Agriculture concerning the Importation and Monitoring for Distribution of Carcasses, Meat and Cital from Overseas (Available in Indonesia, 26 pages)	Pdf
4.	G/SPS/N/IDN/31 5 October 2006	Draft Decree of Minister of Agriculture concerning Additional Obligations for Plant Quarantine (available in Indonesia, 6 pages)	Pdf

(2) 우리나라(한국) SPS 정보관리시스템

☞ <https://www.koreasps.kr/>

-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별 SPS 및 TBT 통보문을 제목 · 국가 · 관련품목 · HS코드 등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정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확인 가능(단, SPS 통보문 한글 번역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효력 및 관련 내용 최종 확인 시에는 반드시 SPS 통보문 영어 원문의 확인이 필요함), SPS 통보문 관련 통계데이터 확인 가능

SPS 정보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SPS 통보문 | SPS STC | 관련 국제기준 | 알림마당

SPS 통보문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정하여 SPS 통보문 검색 및 확인 가능

전체 | 우리나라 발행 통보문 | 우리나라 관련 통보문

• 문서번호: [전체]
 • 문서종류: [전체]
 • 통보일자: 01/01/2018 ~ 06/02/2020
 • 통보국가: Indonesia
 • 해당품목:
 • HS코드(4단위):

• 통보키워드: [전체]
 • 관련국가: [전체]
 • 문서제목:
 • 문서목적 및 이유: [전체]
 • 관련국 의견제출일: ~
 • 통보문 요청발생일: ~

전체보기 | 주 하

번호	문서번호	문서종류	통보일자	통보국가	해당품목
9	G/SPS/N/IDN/125	Regular notification	13/12/2019	Indonesia	Live aquatic and fishery pr
8	G/SPS/N/IDN/130	Regular notification	12/12/2019	Indonesia	Aquatic Animal (including molluscs, etc.)
7	G/SPS/N/IDN/129	Regular notification	12/12/2019	Indonesia	Processed food.

자료: 각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TBT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1)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기관(BSN) 홈페이지

☞ <https://http://tbt.bsn.go.id/>

- 인도네시아 및 WTO 회원국 TBT 통보문, 규정 및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 관련 정보 확인 가능

(2) WTO 해외기술규제 통보문 정보 시스템(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https://www.knowtbt.kr/>

- WTO 회원국 TBT 통보문 및 TBT 관련 현황 확인 가능

(3) 우리나라(한국)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

☞ <https://www.knowtbt.kr/>

- WTO 회원국 TBT 통보문 검색 및 관련 내용(원문/한글) 확인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KNOWTBT website interface. The search results table is as follows:

Symbol	[대분류] 세부분류	통보일	
국가	계급	의견제시일	
		의견	
IDN122	[전기전자]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2019-06-27	
인도네시아	가정용 전기를 사용한 액체 가열용 주방 기기 및 가전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표준...	2019-08-26(마감)	0

자료: 각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종합)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1)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윈도우(INTR -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 <https://eservice.insw.go.id/>

- 인도네시아 무역 관련 종합 정보 One-Stop 확인 가능

(2) WTO 비관세장벽 포털(I-ITP)

☞ <https://i-itp.wto.org/>

- WTO 협정 및 통보문 기반 비관세조치(NTM)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연도별 추이 및 관련 세부정보 (제소 및 조치 상태, 양자간 비관세자료, 제소건 정보 등) 파악 가능



(3) UNCTAD 비관세장벽 포털(TRAINS)

☞ <https://trains.unctad.org>

- 자체 국내 법령 및 규제 조사 기반 비관세장벽(NTM)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국가별/산업별 비교 및 조치별 세부 내용 파악 가능

TRAINS
The global database on Non-Tariff Measures

Through
Developed by WTO
Adapted for TRAINS data by
UNCTAD

Logos: UNCTAD, ALADI, ERIA, International Trade Centre, GRIPS, The World Bank, WED OMC, UNECA, UNECE, UNESCAP

Navigation: Home | TABLES by PRODUCTS | TABLES by MEASURE | **TABLES by COUNTRIES** | DETAILED QUERY | ANALYSIS | About

Available search criteria

Selected search criteria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 Pre-shipment inspection [INSP] [C], Contingent trade protective measures [CTPM] [D], Quantity control measures [QC] [E], Price control measures [PCI] [F], Other measures [OTH] [G,H,I,J,K,L,M,N,O], Export related measures [EXP] [P] Reset to defaults

Countries imposing: Indonesia OR Malaysia OR Thailand OR Viet Nam

Partner(s) affected: Any [Include the category "All partners"]

Date(s): 06/02/2020 [in force] Modify

Product(s): Any

Search result

Numbers cannot be comp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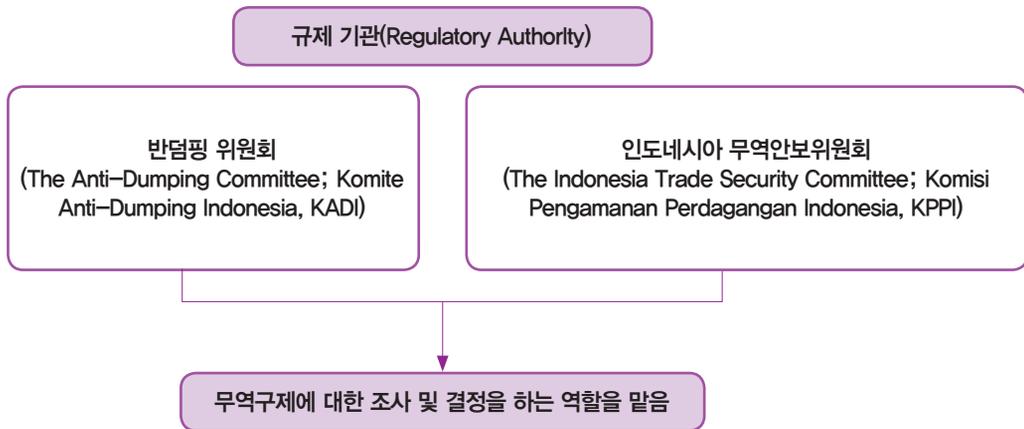
		CTPM	EXP	INSP	OTH	PC	QC	SPS	TBT
Asia	Indonesia		130	53	12	18	81	239	431
	Malaysia		140	6		29	49	324	372
	Thailand	4	452	178	1	170	116	1257	1098
	Viet Nam	1	221	7	17	18	78	114	318
Asia Total		5	943	244	30	236	322	1934	2219
Grand Total		5	943	244	30	236	322	1934	2219

자료: 각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제⁵⁴⁾

■ 개요

-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제장치인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련하여서는 Government Regulation No.34 of 20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WTO 회원국으로 WTO상의 무역구제를 적용
-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기관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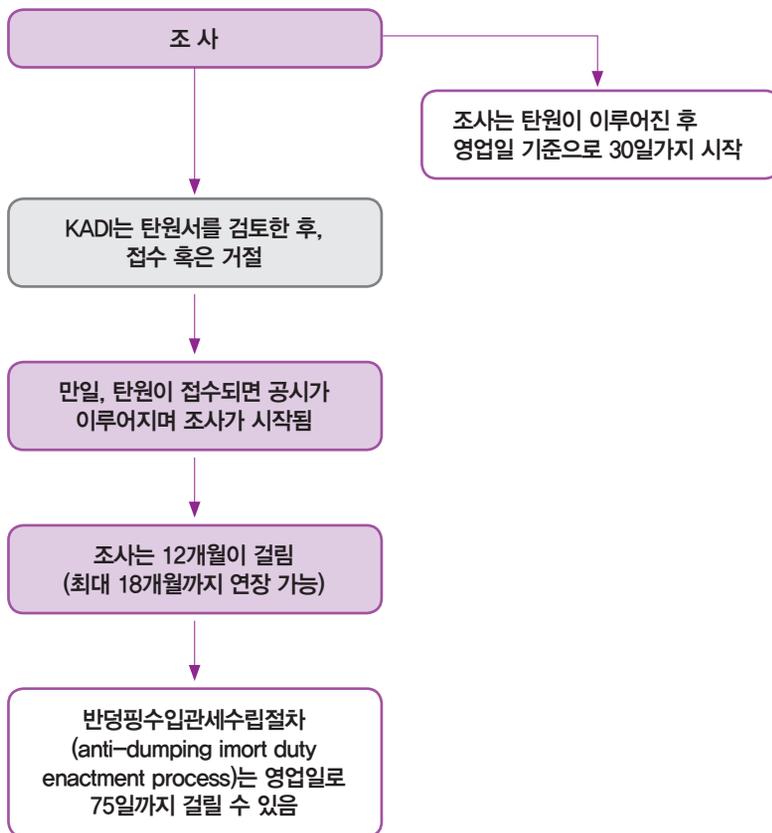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 반덤핑

- 반덤핑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물품의 수출자 및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 덤핑방지관세는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으로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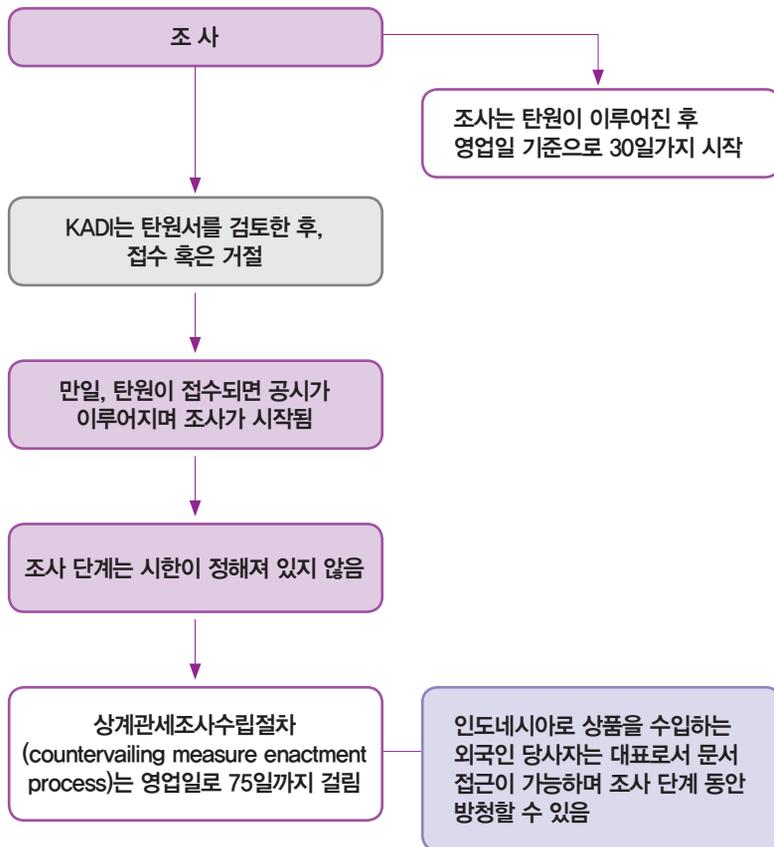
- (절차) 인도네시아 반덤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자료: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 상계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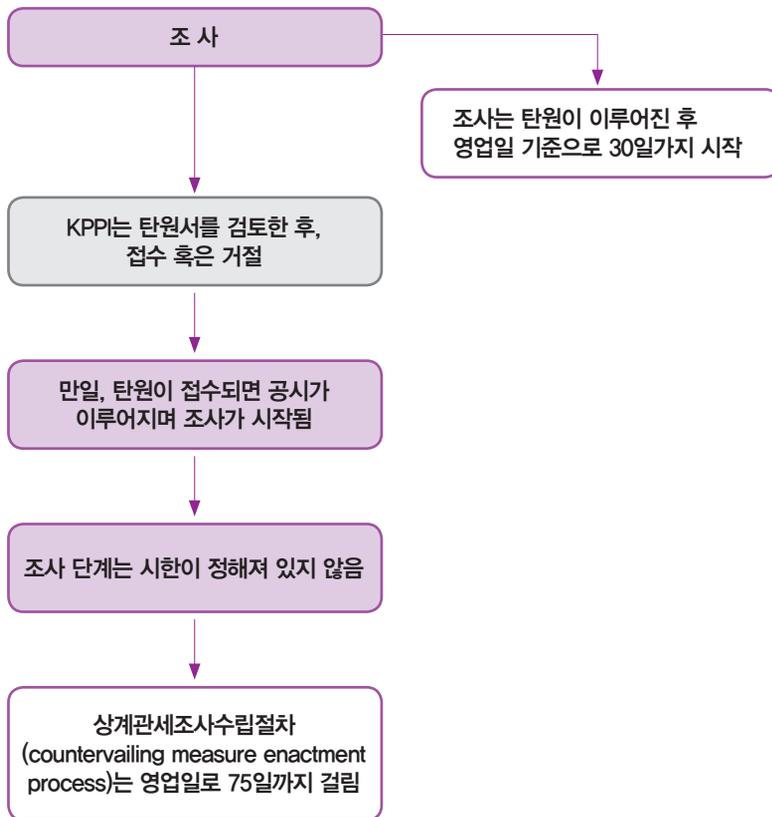
- 상계관세는 수출자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을 자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시킬 만한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과됨
- (절차) 인도네시아 상계관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자료: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 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함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관세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함
- (절차) 인도네시아 긴급수입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자료: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참고사항

• 항소(Appeal)

- 누구나 행정법원에 관련 기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짐
- 항소절차는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상 법률 No. 5 of 1986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한국 관련된 무역구제 현황

인도네시아의 한국 관련 무역구제 현황

규제국	HS	품명	규제 내용	조사개시일
인도네시아	8415.9	증발기	세이프가드 (조사중)	2019년 6월 12일
	7607.11 7607.19	알루미늄 호일	세이프가드 (조사중)	2018년 10월 9일
	6907.21 6907.22 6907.23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	세이프가드 (규제중)	2018년 3월 29일
	3907.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 (규제중)	2016년 8월 22일
	3102.3	질산암모늄	반덤핑 (규제중)	2015년 6월 1일
	7228.7	H형 합금강	세이프가드 (규제중)	2014년 2월 12일
	7210.61	비합금 평판 강판	세이프가드 (규제중)	2012년 12월 19일
	7210.12	석도강판	반덤핑 (규제중)	2012년 6월 25일
	7209.16 7209.17 7209.18 7209.19 7209.26 7209.27 7209.28 7209.9 7211.23 7211.29	냉연코일	반덤핑 (규제중)	2011년 6월 24일

자료: 무역협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수입허가 및 인증(SNI, BPOM, 할랄인증)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은 제품 규격뿐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기술, 디자인 그리고 시험 방법 등의 표준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준임

- SNI는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되었으나, 강제인증의 경우에는 ISO와는 별도로 신규 SNI를 취득해야 함에 유의
- 주로 기술 자재, 농업 및 식품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 다수의 SNI 인증 표준이 설정됨

• 관련기관 ⁵⁵⁾

- **기술위원회 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 사이트주소 : <https://bsn.go.id/>

- **국가 인가기관 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인증기관 LSPPro** :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KAN)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인증 기관마다 인증기관 시험 및 인증 가능한 품목이 다르므로 인증 신청 전에 인증기관에 문의 필요

* 인증기관 안내 사이트주소 : <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jns=6>

- **(임의·강제인증)**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은 원칙상으로는 임의 규정이지만 국민의 안전성과 위생,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강제인증 적용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로 이용할 수도 있어 기업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SNI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표준설정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SNI를 받을 수 없음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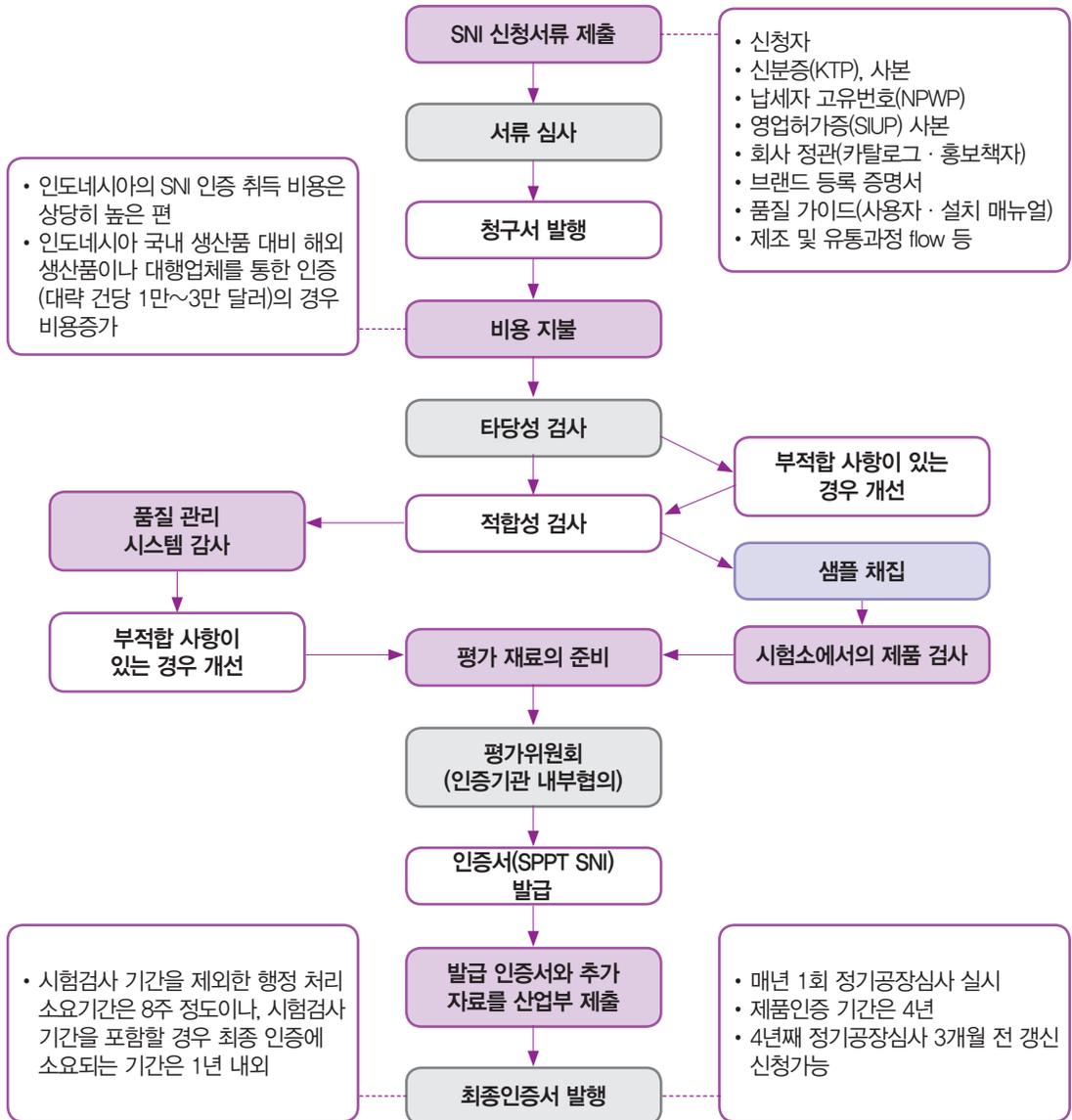
유의사항

- SNI 강제 적용 대상 품목은 사전에 SNI 인증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SNI 마크 사용제품인증(SPPT-SNI)이 있으며, 이러한 SPPT-SNI가 없는 경우 통관할 수 없음에 주의

〈강제인증품목 검색 사이트〉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SNI_Wajib

※근거 법령: 산업부 장관 규정 No.06/M-IND/PER/2/2017

- **(신청절차)** 강제인증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SNI 취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자료: JETRO, 인도네시아 국가規格(SNI)について, 2018, KOTRA 해외시장뉴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인증마크 및 표시방법) SNI 인증마크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제품에 표시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함



SNI 인증표시 관련 준수사항

- 마크 하단에 SNI 규격번호와 인증기관 번호 기재
- 제품의 보기 쉬운 장소에 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
- 파손되기 어렵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없어지지 않도록, 스티커와 엠보싱, 바느질,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
- 매우 작은 제품이거나 제품의 특성상 제품 자체에 SNI 인증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표시
- 안전화 등 SNI의 강제 적용을 받는 상품에 따라서는 관할 총국장이 발령하는 기술지침에 상세한 표시 장소와 표시방법, 크기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자료: JETRO, 2018.

■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⁵⁷⁾

- BPOM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특수 인증으로 유통허가, 수입 승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에 대한 수입규제 실시
 - 인도네시아 인구는 대부분 무슬림으로 이루어져있어 소비자들이 제품 성분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특성은 제품관련 인증에도 반영됨
 - 지난 5년간 유통 허가를 받은 등록된 제품의 수는, 화장품이 16만 9,992개, 식품 및 음료가 13만 2,601개, 의약품 · 전통의약품 · 식품보조제가 2만 8,138개임

• (인증마크)



자료: www.pom.go.id

•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시장에 공급되는 등록제품에 3개의 라벨을 부여함⁵⁸⁾

- 업체별과 수입품으로 제조한 제품에 따라 부여되는 등록제품 라벨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PIRT 코드	SP 코드 (Counseling Certificate)	MD 코드 (Domestically Produced Food)	ML 코드 (Imported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내공업제품, 소규모 식품산업 등에 부여 • 다만, 유제품 · 육류 · 생선 · 가공류 및 냉동 보관 절차가 필요한 기타, 통조림, 이유식, 알코올 음료에는 부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기관의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또는 자본이 제한된 소규모 기업)에게 부여 • 생산공정이 표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검사 및 감독이 수행됨 (제품성분이나 소비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규모의 현지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부여 (정부가 규정한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여김) • 생산시설을 통해 자체 생산품을 생산 • 단일 제품이라도 해당 코드는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규모의 수입제품에 부여 • 식음료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 ML코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코드는 제품포장에 표시 • 등록번호는 가공공장의 위치 또는 가공처리에 변화가 없는 이상 유효함

(1)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⁵⁹⁾

- 수입자는 BPOM에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을 등록하여 BPOM 장관의 「가공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가공식품유통허가번호(ML: Makan Luar)

- 외국 수입 가공식품유통허가번호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공식품유통허가증과 함께 유통번호가 주어짐. 이는 상품라벨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가공식품의 수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수입업자등록번호(API) 소지
- 상업부가 발급한 회사등록증
- 관세총국의 수입업자 등록번호 및 납세자번호
- 상업부대외무역총국장이 지정한 특정품목을 수입하기로 한 업자는 특별수입업자등록번호(NPIK)를 취득해야 함
 - NPIK 보유지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옥수수, 쌀, 밀 그리고 설탕으로 정해져 있음

※ 근거규정: 상업부대외무역총국규칙 No. 141/MPP/Kep/3/2002(Decree of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No. 141/MPP/Kep/3/2002), 대외무역총국장결정 No.05/DJPLN/KP/III/2002(Decision of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No.05/DJPLN/KP/III/2002)

- 상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가 가공식품을 BPOM에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신청 및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판매사업허가(SIUP) 또는 수입업자등록번호(API)
- ② 해당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해외 제조회사 · 수출회사로부터의 임명장
- ③ 위생증명(Health Certificate) 또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④ 판매시설감사결과 보고서
- ⑤ 수출입계약서
- ⑥ 재포장에 관한 계약서(필요한 경우)
- ⑦ 라이선스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필요한 경우)
- ⑧ 사용한 성분 또는 원료의 목록
- ⑨ GMP(적정제조규범)/HACCP(위해분석 · 중요관리점)/ISO-22000(식품안전) 인정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현지정부의 감사결과
- ⑩ 최종제품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 ⑪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
- ⑫ 제품코드에 관한 정보
- ⑬ 라벨 디자인

-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품목

–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제한 품목이나 수입 금지 품목이 있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식품관련 수입금지 품목 예시

- 「알코올 함유 음료관리에 관한 상업장관규정 43/M-DAG/PER/9/2009(Minister of Trade 43/M-DAG/PER/9/2009)」에서는 일부 알코올을 함유 음료에 대한 수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수입업자가 BPOM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도 유통된 마트 일체에서 해당 위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2) 화장품에 대한 인증

-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서(ASEAN Cosmetic Directive: ACD)를 국내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03년 9월 ASEAN 회원국은 화장품 관리·규제에 관한 통일 규칙에 관한 틀에 서명하여, 화장품등록인증의 상호인증협정체결과, 화장품관리에 관한 통일규칙, ASEAN화장품지침이 도입됨.

- **(수입 및 허가절차)**化妆품을 인도네시아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BPOM인증 및 수입허가(SK)를 받아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음

화장품의 통관, 수입, 유통허가신청 (보건장관규칙 No.1176/MENKES/PER/VIII/2010)

<직접 신청시>

- ① 수입업자등록번호(API)를 가진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화장품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지명되어 해당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용에 관련한 제품 정보 서류(Dokumen Informasi Produk: DIP)를 가지고 BPOM에 유통허가신청을 함⁶⁰⁾
- ② BPOM 장관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제품 수입 가능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 이러한 신고는 3년간 유효함

<온라인 신청시>

- ① 온라인으로 화장품의 국내 반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승인서, 생산허가(대량 수입의 경우), 분석증명서, 인보이스, BPOM에 지불한 수수료(PNBP)인 지불증명서를 첨부해서 BPOM에 신청함
- ② 수입 화장품의 유효기한은 최소 1/3 정도 남아 있어야 함

• 화장품 표시 의무

– 화장품 표시는 박스나 용기 등 읽기 쉬운 곳에 알기 쉽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표시항목은 다음과 같음

1. 화장품 이름
2. 효용/효능
3. 사용방법
4. 원료명(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이름, 함유도가 큰 순서대로 기재)
5. 제조자 이름 및 국적
6. 유통허가신고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7. 일괄번호
8. 사이즈 및 내용량
9. 사용유효기한(일 · 월 · 년 또는 월 · 년)
10. 유통허가신고번호
11. 경고 · 주의기재

• 라벨링

– 효용/효능, 사용방법, 경고 · 주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시해야 함(BPOM 장관규칙 2015년 제19호)

주의사항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하지만 현지사양(품목)으로 변경한 것(표시 포함)을 수출할 때는, 수용 화장품(제조 ·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화장품도 안전보장무역관리*의 포괄규제 대상 품목임
- 이슬람율법에 따라 화장품에도 할랄인증의무가 확대되고 있음

*승인된 용도로부터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 인도네시아의 할랄(Halal)인증⁶¹⁾

- 2014년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의 실시예 관한 정부령 2019년제31호가 실시됨
- **(적용범위)**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 반입,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
 - 물품 대상: 식품, 식재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변형제품 및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한 제품
 - 서비스 대상: 육처리, 가공, 보관, 포장, 배송, 판매
 - 할랄인증 의무로부터 예외적으로 제외된 제품은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 할랄 인증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중이고, 아직은 식품부터 개시한 상태임
- 할랄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취급은 이후부터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예정임
- ※ 이슬람교에 따라 돼지고기, 돼지 지방 등 돼지 유래성분, 젤라틴(돼지 유래와 이슬람법에 의거해 도축되지 않은 육류 동물 유래), 주류 및 주류를 이용한 보조료 등을 포함한 것, 할랄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을 식용할 수 없음에 주의

- **(요구조건)** 할랄인증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요건은 제품의 원료 및 제조 과정에서 할랄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혼입되지 않았다는 증명임
- **(관할기관)** 정부는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산하에 BPJPH(Halal Product Guarantee Agency)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할랄인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2017년 10월 11일 관할기관이 설립된 것은 사실이나, 할랄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 시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USDA, Indonesia, 2019.03.)

BPJPH의 기능

- 특정 제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할랄 인증서 발급을 감독
- BPJPH는 신청된 건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 할랄검사기관(LPH)*은 정부기관, 무슬림 NGO, 대학 연구소 등이 될 수 있음 (*BPJPH가 MUI의 역할을 이어받아 할랄인증서를 발급 하지만 신청받은 제품이 할랄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할랄검사기관이라고 하는 the Halal Inspection Institution(Lembaga Pemeriksa Halal, LPH)에서 수행. LPH는 원재료 및 제조과정이 할랄 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함. 이러한 활동들은 제조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될 수 있음)
- BPJPH는 MUI로부터 FATWA를 득하면 할랄 인증을 발급

MUI(Mejelis Ulama Indonesia)의 기능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인증제도가 시행되지만 정부는 제품별로 계도기간을 설정
- 이전에는 할랄 인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슬람 성직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에 의해 시행됨
- MUI는 2001년 MORA 법령 519에 따라 식품할랄인증을 위해 종교부 장관이 특별히 임명함
- MUI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Lembaga Pengawasan Pangan Obat dan Makanan Majelis Ulama Indonesia, LPPOM MUI 감독기관을 둠 - 식음료에 대한 계도기간: 5년, (2024년 10월 17일까지)
- 화장품에 대한 계도기간: 7년, (2026년까지)

자료: USDA, Indonesia, 2019.03./ KITA, 무역정보, 2019.07, <https://aksetlaw.com>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는 완제품에만 PPOM-MUI 할랄인증서와 마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국가에서의 할랄 마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LPPOM-MUI는 이슬람 율법학자위원회(MUI)가 설립한 산하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과 관련한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함

• (인증마크)



자료: <http://www.halalmu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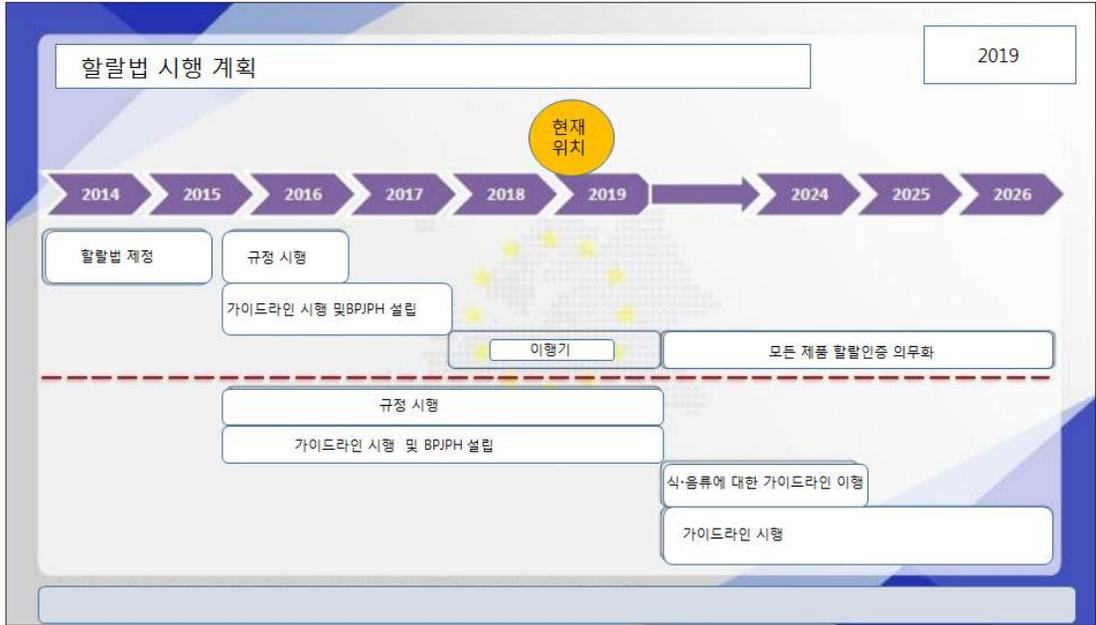
• (인증로고 표시법)⁶²⁾

-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할랄 로고는 제품 포장지, 상품의 특정 부분 또는 상품의 특정 장소에 부착해야 함
- 할랄 로고표시는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표기되어야 하며, 지워지거나 쉽게 떼어지지 않으며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어야함
- 현재 인도네시아는 임의 할랄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정부 기관인 Majelis Ulama Indonesiad가 입증하고 있음

• (신청절차) 할랄인증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지만 계도기간 등의 이유로 아직 신청절차가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음

- 할랄인증과 관련한 관할 기관은 설립되었으나, 절차나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음

• 할랄인증 연도별 시행흐름



자료: <https://www.agroberichtenbuitenland.nl/actueel/nieuws/2018/04/13/halal-update-indonesia-streamlining-halal-certification-through-new-government-agency-bpjph>.

Ministerie van Landbouw, Natuur en Voedselkwaliteit (2019.09.17. 접속)

인도네시아 기타 표시제도⁶³⁾

■ 라벨링

- 라벨링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10. 9월 시행한 제품라벨 강화 규정임
- (적용범위) 라벨링 표시는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됨

1	가전, 통신·정보관련 물품
2	건축 자재
3	원동기 부착 차량용 부품(차량 부품)
4	섬유 제품
5	기타

- 위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즈니스 주체는 인도네시아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을 시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 또는 수입을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소재의 사업자가 상업부에 인도네시아어 라벨기재증명서(KPLBI)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규정

상업부장관규정 No.73/M-DAG/PER/9/2015, 상업부장관규정 No.10/M-DAG/PER/1/2014

- 그러나 본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관련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수입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함

- **(표시요건 및 주의사항)** 라벨링에 표기되어야 하는 사항 및 표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라벨링 표시 요건	
1	해당 소비재의 내용
2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최소한 도시이름까지 기입)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최소한 도시이름까지 기입)
3	원산지
4	사용 방법
5	사용전력, 전력 및 전압
6	크기
7	내용 용량
8	제도 코드 및 일련 번호
9	제조일자(년도, 월, 일) 및 유통기한
10	자세한 설명서
11	위험징후 또는 경고 표시 등

라벨링 표기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어로 표시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 경우, 영어 등의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 있음
2	표시는 제품 포장지에 양각 인쇄 혹은 라벨이 완벽히 붙어있는 상태로 제시되어야 함 ※ 스티커는 불가함
3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라벨을 떼어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함

선적 전 검사

■ 동물류 수입검역제도

- 제16류의 육류, 생선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중 검역 및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선적전 검사가 실시됨
- 검사는 수입항구에 도착하기 2일 전까지 「제품수입계획」을 검역소에 제출한 후 항구에서 하역하기 전에 이루어짐
- **(필요서류)** 선적전 검사에 해당될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원산국 정부로부터의 안전성증명서
- ② 전염발생지역이 아닌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해당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인증)
- ③ 운반 중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명

- 인도네시아에 수입 및 유통시키는 상품에서 법적으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육류 및 축산 가공품뿐이며, 그 외는 임의임에 유의
 -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수출예정식품샘플을 송부할 때, 식품검사기관에 수출식품 분석검사를 의뢰해 사전에 식품 및 의약감독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고, '할랄'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

3. 인도네시아의 수출규제



수출규제

■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자재 가공 수출 전략⁶⁴⁾

- 인니 정부는 최근 니켈 광석 수출중단을 조기 시행하며 수출규제안을 발표함(2019. 9. 2)
 - 금번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니켈 함유량이 1.7% 이하인 광석 등 조건부로 인정되었던 순도 광석 수출이 2020년부터 모두 금지될 예정
 - 2018년에 개정된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령 No.25/2018에 의해 광업 회사는 제련소 건설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 미이행 시 수출 승인의 철회 가능성 및 누적 광물 판매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됨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6억9천800만 톤 수준으로, 세계 최대 니켈 광석 생산 국가이며 지난해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함
-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는 인니 정부의 원자재 가공 수출 전략에 기인함
 - 인니 정부는 2014년 광물 원광 금수 조치를 내린 이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자재 가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2014년 시행된 원광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자체 제련 시설이 없는 광산업체는 광물 수출을 할 수 없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제련업 등 관련 산업이 육성되지 않자 2017년 니켈, 보크 사이트 등의 원광 수출을 완화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는 14년 광물 원광 금수 조치의 연장선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제련 기업의 내재화와 자국 광물 자원의 가치 제고를 강조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

- 니켈은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원재료로 인니 정부는 원료 확보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전기차 생산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5일 전기차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승인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여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에는 총 자동차 생산량의 2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번에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화석 연료 차량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전기차 생산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4.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⁶⁵⁾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및 특성

-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경제 개발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발달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 역시 개선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1억 70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90%이상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음
- 참고로 Google TEMASEK(2018)은 인도네시아의 e-commerce시장 규모가 2015년 약 17억 달러, 2018년 약 122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약 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

-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결제수단은 1위가 계좌이체(30%)이며 다음으로 전자지갑(eWallet, 24%)*, 화폐지불(Cash on delivery, 17%)**, 신용카드(14%)의 순임

* Go-pay, OVO cash, Dana와 같은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

** 화폐지불은 COD라고도 하며 주문한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임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 장관령(210/PMK.010/2018)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2020년 1월 30일부터 탁송화물의 면세한도를 75달러에서 3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온라인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저하됨

재무부 장관령 210/PMK.010/2018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함. 단, NPWP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는 NPWP 대신 주민등록번호(NIK, Nomor Induk Kependudukan)를 입력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반드시 NPWP를 보유하고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서의 의무를 지님.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징수 · 납부 ·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 예치 및 전자상거래 이용 판매자는 신고하고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게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해당 법령은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규정함

* 해당 법령은 2019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있음을 명시

- 한편, Euromonitor는 인도네시아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이용자는 1981년~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전체 구매자의 약 88%를 차지한다고 언급
 - 전자상거래 구매자의 약 53%가 남성 이용자이며, 약 76%가 자바섬에 거주하는 것이 특이 사항이며,
 - 이들의 주요 구입품목은 모바일 · 가전제품과 생활소비재(식품 및 음료, 의류 및 신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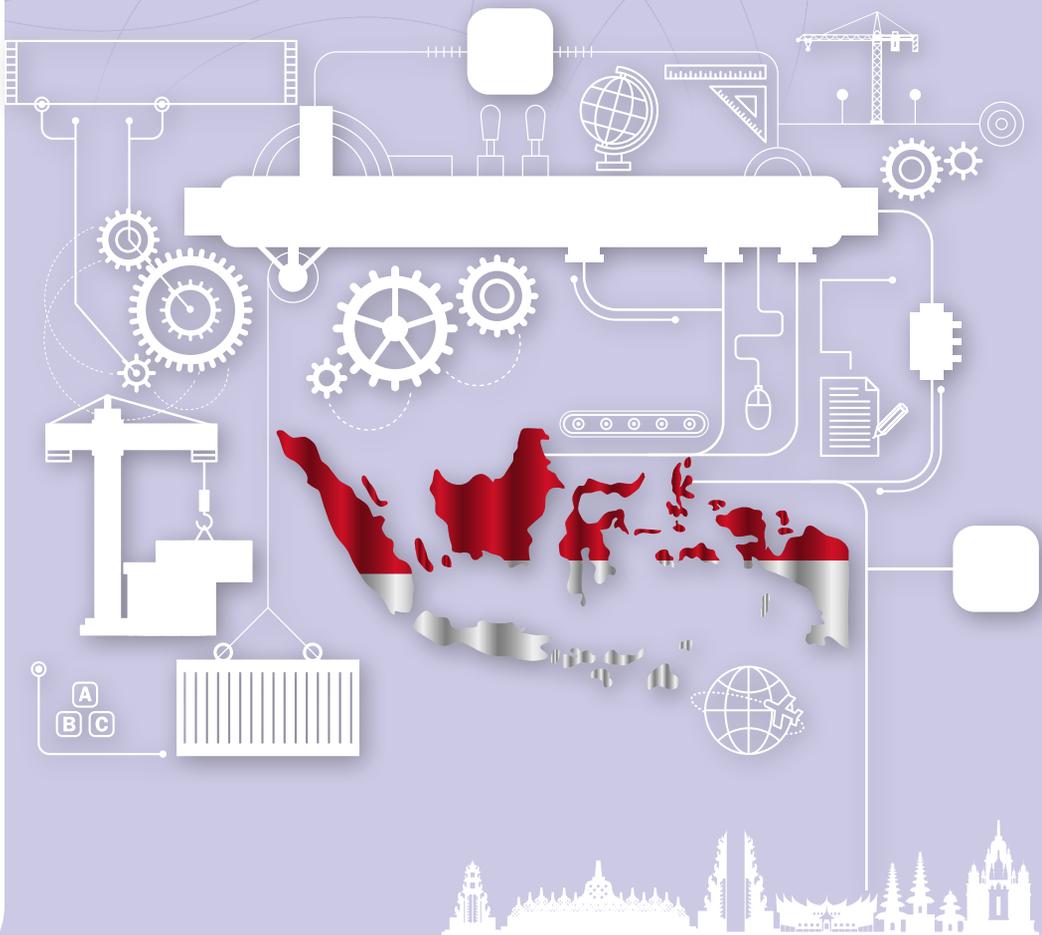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

명칭	소개
 Laz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시기 : 2012년 • 본사 : 싱가포르 • 평균 방문자수 : 약 2,800만명 • 특징 : 싱가포르 기업으로 브랜드 인식이 좋고 결제수단이 다양하여 소비자 편의 • URL : https://www.lazada.co.id/
 Shop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시기 : 2015년 • 본사 : 싱가포르 • 평균 방문자수 : 약 5,600만명 • 특징 : 싱가포르 기업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무료배송 서비스 실시. 다양한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에도 동일 플랫폼 보유 • URL : https://shopee.co.id/
 Tokop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시기 : 2009년 • 본사 : 인도네시아 • 평균 방문자수 : 약 6,600만명 • 특징 :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브랜드 인식이 좋고 제품이 다양함. 다수의 오프라인의 매장이 온라인 오피셜 스토어에 입점 • URL : https://www.tokopedia.com/
 Bukalap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시기 : 2010년 • 본사 : 인도네시아 • 평균 방문자수 : 약 4,290만명 • 특징 :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이 다양함. 미래에셋-네이버가 약 5000만 달러를 투자함 • URL : www.bukalapak.com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iPrice(2019.12) : 방문자수는 2019년 3분기 기준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구매층이 될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생활소비재(식품 및 음료, 의류 및 신발) 및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신남방 및 이슬람 시장 수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시장 진출을 권장
 - 다만, 본격적인 진출을 희망한다면 현지 소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제품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인증의 취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세금부과나 면세한도 축소 등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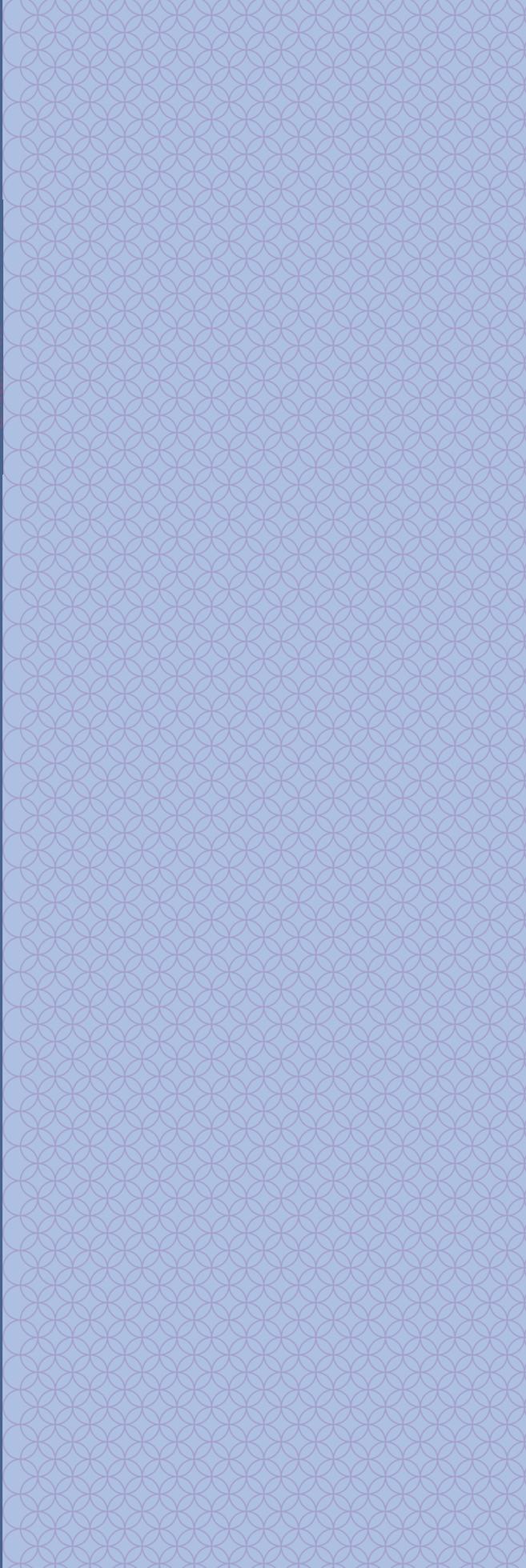




신남방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V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 주요 애로유형

1.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오류
2. 원산지증명서 인쇄오류 및 흑백인쇄
3.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표장 불일치
4. 수입국 HS코드가 아닌 수출국 HS코드 기재



주요 애로유형

애로유형	애로내용 사례	건수
원산지증명 (C/O 항목)	FOB가격(C/O 9번란) 미기재, AK증명서 가격란에 세부항목별 가격기재 없이 총액 기재를 이유로 특혜세율적용 배제, C/O번호 조회불가로 협정적용 불허 등	11
원산지증명 (기타)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출항전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특혜세율적용 배제,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을 이유로 특혜세율적용 배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특혜세율적용 배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의심하며 특혜세율적용 배제, 원산지증명서 전자서명 불인정 등	15
양허품목 및 품목분류	'17년 통관시 자국규정에 '16년 협정세율까지만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협정세율적용 거부 등	1
운송요건	직접운송요건 불인정	1
기타	일시반입물품에 대한 통관 거부, 기업신용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 차별 등	11

자료: '17-18년'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만족도조사 활용

1.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오류



■ 애로사항

- 인도네시아로 Pulley 및 Flywheel을 수출하는 A사는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함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Pulley 및 Flywheel의 HS 번호가 동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란에 원산지결정기준을 하나만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나,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됨

■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조 제4항
 -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13.9.5)

■ 문제해결

- 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2013.09.05)'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수출신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발급 신청하더라도 하나의 품목번호(HS)에 물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각 물품별로 품명, 규격, 품목번호, 원산지기준을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품목번호(HS)라도 서로 다른 물품인 경우 물품별로 품명, 규격, 품목번호, 원산지결정 기준을 각각 기재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

Original(Duplicate/Triplicate)

<p>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p> <p>KOREA NARA CO. LTD 71 MUNIRO, GANGNAM SU SEUL, S.KOREA TEL : 8220101709</p>		<p>Reference No. C-010-17-00005111</p> <p>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p> <p>(Commiss Declaration and certificate)</p> <p>FORM AK</p> <p>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p> <p>See Notes Overleaf</p>			
<p>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p> <p>PT. CATERPILLAR INDONESIA JL RAYANAROGONG,CILEUNGSI BOGOR JAWA</p>		<p>4. For Official Use</p> <p><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p> <p><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p> <p>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p>			
<p>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p> <p>Departure date: APR/25/2017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INDONESIA, JAKARTA</p>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KN 1-10	<p>오류 발급</p> <p>PULLEY 112PC FLYWHEEL 220PCS HS CODE: 8483.50</p>	CTH	265.20KG	KNC-20170425 APR/19/2017
<p>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p>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Trade Are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nd that they are authorized to import goods from the Trade Area.</p> <p>THE REPUBLIC OF KOREA APR 25 2017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p>		<p>11. Certification</p>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and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정상 발급</p> <p>HS번호가 동일해도 각 물품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여야 함</p> <p>PULLEY 112PC FLYWHEEL 220PCS HS CODE: 8483.50</p> <p>CTH CTH</p> <p>SEOUL MAIN CUSTOMS REPUBLIC OF KOREA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p>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p>					

자료: 관세청(2018),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

2. 원산지증명서 인쇄오류 및 흑백인쇄⁶⁶⁾



■ 애로사항

- 한국 수출자 A는 생산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
 -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사에서 '흑백인쇄'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거절
- 한국 수출자 B는 생산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
 - 이후 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앞장과 뒷장(Overleaf Note)을 별도의 종이(2장)에 각각 인쇄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를 거절

■ 문제 해결

- 아세안 일부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 AK form의 인쇄시 원칙 : 양면인쇄, 상방향 인쇄, 컬러인쇄
 -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인쇄 사례 주로 흑백으로 인쇄하거나, 뒷면(Overleaf Note)의 미인쇄, 뒷면(Overleaf Note)을 1장의 종이가 아니라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 등임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뒷면 미인쇄시 국가별 보완기준을 다음 <참고>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주의가 필요함

- ▶ 한-아세안 FTA 적용시 뒷면 미인쇄로 원산지증명서가 불인정된 경우,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 다만, 인도네시아는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수입신고 시 뒷면(overleaf note)이 인쇄된 C/O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적용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함

〈참고〉 뒷면(Overleaf Note) 미인쇄시 국가별 보완기준 ('17.8.22)

국가	국가별 보완기준
한국	뒷면이 인쇄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Accept CO Form AK without Overleaf Notes.
인도네시아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after the importers proceed the re-submission through objection and appeal procedures. ▶ 사실상 수입신고 시 overleaf note가 인쇄된 C/O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 적용이 어려움 (인도네시아는 사후적용 규정 없음)
라오스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Lao PDR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말레이시아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Malaysia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태국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뒷면 별지인쇄 가능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Thailand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verleaf Notes can be printed in a separate sheet.
베트남	뒷면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Viet Nam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오류 발급(혹백)

Original KOREA-ASEAN FTA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정상 발급(컬러)

Original KOREA-ASEAN FTA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OVERSEAS NOTES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OVERSEAS NOTES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OVERSEAS NOTES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OVERSEAS NOTES

1. (Export company)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Import company) Im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Goods description) Good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5. (Date of export) Date of export
 6. (Date of import) Date of import
 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8.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goods
 9. (Quantity) Quantity of goods
 10. (Value) Value of good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Declaration by the importer

자료: 관세청(2019), 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

3.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표장 불일치



■ 애로사항

- 수출자 A는 발전기를 2018년 3월 3일 선적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함
 - 수출 후 수출자는 인도네시아 수입자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6번란의 포장의 표장(화인)과 Packing list의 포장의 표장(화인)이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 확인결과 포장명세서에는 POCA-DISCO, P/L No1~2(02 LALLETS)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 6번란에는 2PLS로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 확인

■ 문제해결

• 한-아세안 FTA 부록3 부속서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1.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 라.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4.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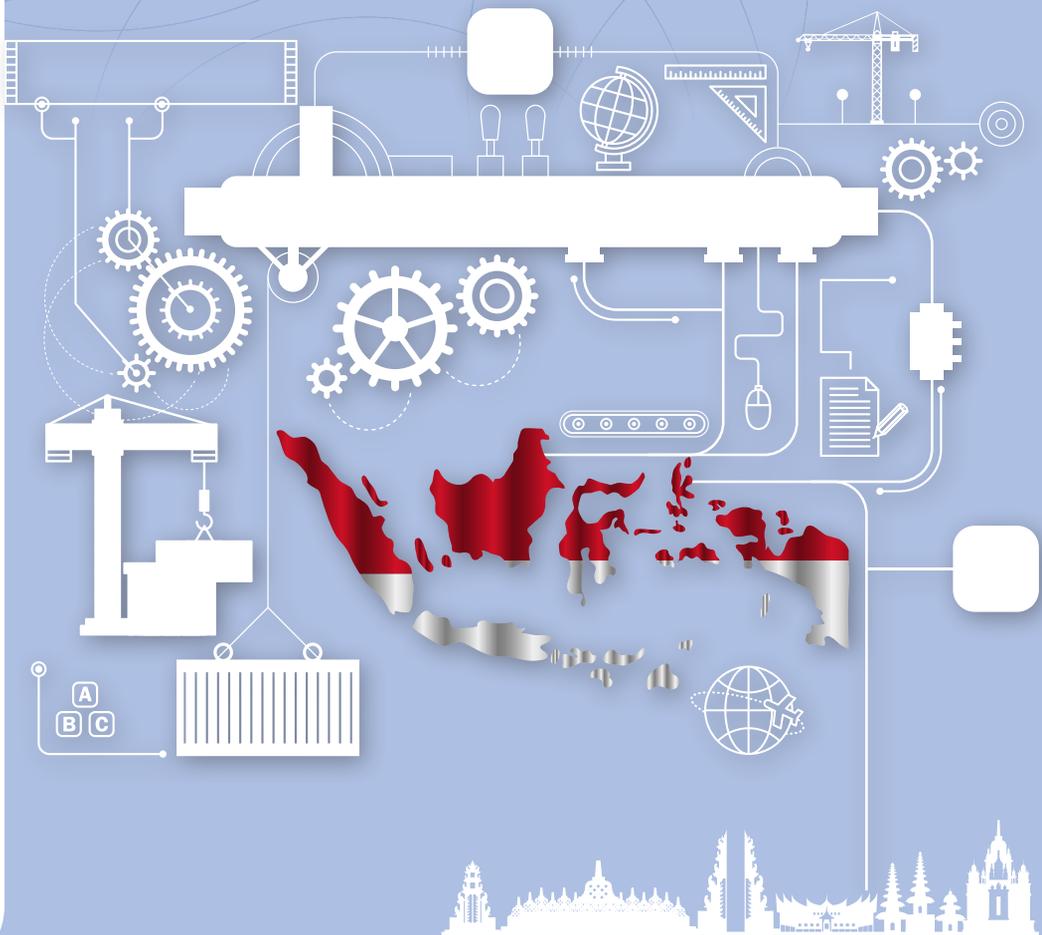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질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전생산된 물품	W0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제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제단 및 봉제공정)	CTC W0-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당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 표시를 합니다.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문헌

1), 5)	KOTRA 전문가 발표자료
2)	동남아시아 화교경제 현황, 자카르타 경제신문(2017.01.20.)
3)	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2019.09)
4), 6)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 03)
7)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8), 9), 10)	인도네시아 수입절차, 농림축산식품부·KFRI,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https://www.foodcerti.or.kr/halal/indonesia)
11)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12)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13)	KOTRA 해외시장뉴스, 한국무역협회(http://kita.net)
14)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시 부과되는 제반 세금의 종류와 추정·환급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2014)
15)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3.22.)
16)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id-ko)
17), 56), 58), 63), 65)	KOTRA 해외시장뉴스
18), 29), 30), 32), 45)	Freight Cargo Logistics 전문가 자료
19)	PT. Sarana Pubilc Logistics 전문가 자료
20)	NOMOR454/KMK.04/2002 재무부장관령 제23조
21)	インドネシアの通関問題, JETRO(2019)
22), 24), 27)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23)	インドネシア投資環境, MIZUHO(2017)
25)	インドネシアの保税物流センター (PLB) について, JETRO(2017)
26)	TradeNavi,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28)	JETRO(2019), Freight Cargo Logistics 전문가 자료
31)	가디언 관세사(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okcus29)
33)	무역부법령 NOMOR 81 TABUN 2017
34)	한국AEO진흥협회(http://www.aeo.or.kr/), 인도네시아 싱글윈도우(https://www.insw.go.id/)
35)	KOTRA 해외시장뉴스, Warta bea cukai, SIMPLEIFIKASI TATA NIAGA IMPOR MELAULI KEBIJAKAN POST BORDER(2018.04)
36)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37), 38)	HKTDC(2018)
39)	https://www.jetro.go.jp/world/asia/idn/trade_03.html#block4 (2019.09.07. 접속)
40)	2017년 제29호 정부령
41)	2009년 제55호 정부령
42)	インドネシア 関税制度 「関税以外の諸税」詳細(2019. 02),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법」,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43)	PT. PENASCOP LOGISTIK TRANSNIAGA 전문가 자료
44)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id-ko/index.do)
46), 47), 59), 64)	2019 국별 진출전략 인도네시아편, KOTRA(2019)

48)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49)	관세청,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50)	외교부 보도자료(2019. 8. 30)
51)	KOTRA 전문가 자료
52)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1.13.),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KSA(2018),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KIEF(2017), UACTAD TRAINS NTM DB 등
53)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SPS 정보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koreasps.kr/),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KSA(2018)
54)	JETRO, 国内外の日系企業が多く の非関税措置に懸念(2019.03)
55)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자료
57)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4.03.)
6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61), 62)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1.24.)
66)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 관세청(2018)
48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49	관세청,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50	외교부 보도자료(2019. 8. 30)
51	KOTRA 전문가 자료
52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1.13.),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KSA(2018),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KIEF(2017), UACTAD TRAINS NTM DB 등
53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SPS 정보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koreasps.kr/),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KSA(2018)
54	JETRO, 国内外の日系企業が多く の非関税措置に懸念(2019.03)
55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자료 참고
56	KOTRA 해외시장뉴스
57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4.03.)
58	KOTRA 해외시장뉴스
59	2019 국별 진출전략 인도네시아편, KOTRA(2019)
6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61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1.24.)
62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1.24.)
63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64	2019 국별 진출전략 인도네시아편, KOTRA(2019)
65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66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 관세청(2018)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네시아**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